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and analysis of change since
enforcem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12. 12

제 출 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의 최종연구개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25일

수탁 연구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권 헌 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 연구원 : 정 재 한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지도교수)

김 경 열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박 세 진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김 나 연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 동 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요 약 문

1.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의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관련 주요 변화 및 제도 이행 현황과 문제점 등 실태 파악
- 정기적인 주요 변화와 실태 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2) 연구의 중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진일보 하였다는 평가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연구 부재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이 곧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단절로 연결되는 극적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법령에 대한 보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 개별 특수분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법체계적인 적합성을 갖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
- 자율규제 방안, 구체적인 규제절차 등의 현실적인 제도보완을 위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음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개인정보 보호관련 현황과 환경 변화 등의 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정형화된 효율적인 조

사 방안 도출

- 조사기간의 정례화: 매년 3/4분기 9월~11월 중에 관련 내용을 발표를 목표로 제공자 및 처리자 대상 실제 설문조사는 약 1개월간 시행하고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는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 실태 조사가 연 1회 10월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내년 초 03월에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9월 조사를 실시하여 연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제도개선 및 정책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제공자의 경우 지역(광역시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연령(10대~60대이상)을 안배하여 표본을 설정하고 총 5,000名조사, 처리자의 경우 공공부문 : 민간부문(1.5 : 3.5)의 수준으로 총 5,000개 기관 및 사업체를 조사 실시함
 - 기타 통계조사와의 연계 및 객관화된 산업분류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르되,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소규모인 업종을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빈번한 산업 및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는 산업 등을 분류대상을 삼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영향 조사·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와 정책에 관한 일반 인식수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여부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여부에 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변화
 - 개인정보 유출피해 경험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처리절차의 변화
 - 개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변화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준수
 -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가입 수단 마련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약관의 동의 과정(약관의 내용 숙지여부)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인지 여부

-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관련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사회적 심각성
 - 개인정보보호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유출시 피해가 큰 개인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이후,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의 법제도 이행실태 및 문제점 등 조사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와 정책에 관한 일반 인식수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여부에 대한 인식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 및 향후 정책방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 변화 수준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
 -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 여부
 -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가입 수단 제공여부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 이행여부
 - 개인정보 파기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한 교육이수 경험 등
 - 개인정보 수집 처리 절차의 변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의 증가 정도

 -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관련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국내외 주요 법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 비교·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등 조사분석

- 빅데이터(Big data)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위협

- 기업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를 분석하고 싶어 하며, 새로운 상품을 어떤 고객층에게 팔아야 하는지, 현재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에 수요가 높음
- 인터넷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등을 수집 활용하는데에 까지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보호해야 할 개인 데이터를 어디까지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핵심
- 개인정보보호법 인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등의 괴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 필요

-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

-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지만 반면 부정확한 정보나 밝히기 싫은 정보까지 영속하고 제한 없이 전파되어 불안함을 조성
-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의 무한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염려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2012년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 발의)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 미국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과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개별 법률들을 통해 규율하고, 민간영역의 경우 시장의 자율에 의지하는 형태를 취함
- 유럽의 경우는 최근의 데이터보호지침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수준
 -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EU의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담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통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시키고, 처리자의 범위를 350만 규모로 포괄하였음
 - 고유식별체계 및 민감정보의 수집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율의 정도가 유럽에 비해서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7년 이상의 기나긴 입법과정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발생,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맞물려 입법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형태로 마련된 것

-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자 편의(국가의 책무) 조화 필요

4. 연구결과

○ 제공자 설문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대한 인식은 59.9%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93.7%가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음
 - 그 이유로 피싱,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43.9%),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23.7%), 이력 및 사생활 등 본인의 명예나 인격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21.7%) 등의 순(복수응답)으로 들었음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63.1%가 1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중 69.8%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55.6%가 피해구제 방법을 몰랐거나 번거롭고 귀찮아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법령상 의무 사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것을 80.2%가 알고 있었으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원칙적 처리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58.1%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주민번호 외의 대체가입수단 의무 제공에 대해서는 41.8%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통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58.3%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78.9%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우리사회 전반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50.4%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침해기술이 보호기술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29.5%),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 부족(27.5%) 등으로 응답하였음
 - 개인정보제공자들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 개인정보 유출자 및 기업에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3.4%로 나타났음

○ 처리자 설문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75.5% 수준으로 50명 이상 규모의 기관에서는 94%가 넘었고 5~49명은 84.3%로 꽤 높았으나,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57.5%로 낮게 나타났음
 - 그렇지만,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졌다고 느끼는 개인정보처리자(34.4%)의 90.6%가 까다롭지만 필요하다고 응답함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처리 시 28.6%가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7.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유출통지제에 대해서도 30.8%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
 - 법률 내용이 어려워(27.0%), 관리적·기술적 실행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17.7%), 개인정보 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16.6%), 개인정보 처리절차 등이 복잡해서(15.5%) 등의 순으로 꼽았으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 강화(46.7%),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12.3%),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9.9%), 신속·정확한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강화(3.1%) 등을 들었음

○ 개선방안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들(개인정보 취급 정도, 분야별 근거법 유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규추가분야 및 강조분야 등)을 반영
 - 1.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 2.전기, 가스, 수도업, 3.유통, 물류, 도소매 분야, 4.숙박 및 음식점업, 5.정보통신업, 6.금융·보험업, 7.부동산업 및 임대업, 8.중앙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공교육 포함), 9.사교육, 10.의료·보건, 11.예술,스포츠,여가
 - 설문문의 구조는 I 제도시행에 따른 일반 인식제고, II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의 준수현황 실태조사, III개인정보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구분하게 됨

○ 제도개선 내용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시켜 규율하되, 두 분야가 동시에 규율되어야 하는 점은 기본원칙과 기본내용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영역별, 차별적 내용을 구체화 하는 방안으로 개선
- 개인정보처리 수준을 감안한 처벌 및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집행영역을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통하여, 제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제를 통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배상을 통하여 구제받았다는 측면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피해구제를 통한 공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인정보보호에 정보보호에 취약한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조성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
-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가 사회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향상도모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권리자의 권리실현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확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같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 및 사생활 공개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익명 거래와 익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인 처리를 금지하는 방향 모색이 필요
- 공공, 학계, 업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업종별 유관협회, 교육자치기구 등 자율적인 규제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그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이나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과 개인정보보호 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활용가능
-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장에서의 적용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표준조사방안의 기틀 마련

목 차



제1장 개 요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내용	5
1. 연구목표	5
2. 연구의 주요내용	5
제3절 개인정보보호 인식변화 등 실태조사 개요	6
1. 개요	6
2. 개인정보제공자	7
3. 개인정보처리자	10
4. 설문지	12



제2장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조사결과 / 13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15
2. 개인정보유출 및 피해구제 경험	21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27
4.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42



제3장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결과 / 51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53
2.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66
3.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93



제4장 향후 정책방향 및 제언 / 99

제1절 중장기 실태조사 발전방안	101
1. 설문 항목의 개편 필요성	101
2. 개인정보 처리자 표본설계	105
3. 설문안의 보완	113
제2절 개인정보 관련 해외 동향 및 비교법적 검토	121
1. 빅 데이터(Big Data)활용 논의	121
2.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	123
3.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법적 검토	125
제3절 제도개선요소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28
1. 개인정보보호의 관점과 목표의 명확화	128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인식과 제도적 대응의 괴리	129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처리자의 부담경감방안 마련	131
4.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	137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 등 정책추진체계의 재정비	140



제5장 기대효과 / 143

부록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147
부록 2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개선(안)	163

[표 차례]

[표 1-1] 응답자 인구통계	8
[표 1-2] 응답자 인구통계	11
[표 2-1]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	40
[표 2-2]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	40

[그림 차례]

[그림 2-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	15
[그림 2-2] 개인정보보호법 인지경로	16
[그림 2-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17
[그림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식	18
[그림 2-5] 본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
[그림 2-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20
[그림 2-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	21
[그림 2-8]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22
[그림 2-9]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23
[그림 2-10]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24
[그림 2-11]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25
[그림 2-12] 향후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방법	26
[그림 2-13]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관련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27
[그림 2-1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처리절차의 변화인식	28
[그림 2-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분야별 변화	29
[그림 2-1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제도 인식여부	30
[그림 2-1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선호하는 대체가입수단	31
[그림 2-18]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취급약관 확인정도	32
[그림 2-19]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취급약관 확인정도	33
[그림 2-20]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경험여부	34

[그림 2-21] 개인정보 처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공자의 인식정도	36
[그림 2-2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경험	37
[그림 2-2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	38
[그림 2-24] 향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39
[그림 2-25] 현 이용기업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쟁기업이 있다면 이용기업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41
[그림 2-26]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현재 우리사회의 피해정도	42
[그림 2-27]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향후 우리사회의 피해정도 전망	43
[그림 2-28] 개인정보유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44
[그림 2-29] 개인정보유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45
[그림 2-30] 개인정보보호 제도·정책 개선방향	46
[그림 2-31] 유출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정보	47
[그림 2-3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48
[그림 2-33]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49
[그림 3-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지여부	54
[그림 3-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지 경로	55
[그림 3-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여부를 인지 못한 이유	56
[그림 3-4] 보유 및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	57
[그림 3-5]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규모	58
[그림 3-6] 처리하는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인식	59
[그림 3-7] 개인정보처리 향후 정책 변동 여부	60
[그림 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지 여부	61
[그림 3-9]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변화에 대한 체감	62
[그림 3-10]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이유	63
[그림 3-11]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변화에 대한 체감여부	65
[그림 3-12]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이유	66
[그림 3-13]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이유	67
[그림 3-14]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보완 사항	68
[그림 3-15]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시 수집 목적·항목·이용기간·거부권에 대한 고지필요와 동의확보 필요여부에 대한 인지	69
[그림 3-16]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시 별도 동의 확보 여부	70

[그림 3-1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시 별도 동의 확보 여부	71
[그림 3-18] 개인정보 처리시 동의 미확보 사유	72
[그림 3-19]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확보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지 위한 고지여부	73
[그림 3-20] 근무처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업무 제3자 제공여부	74
[그림 3-21] 개인정보 위탁처리시 위탁업무의 목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는지 여부	75
[그림 3-22]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여부	76
[그림 3-23]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시에 제공하는 대체가입수단	77
[그림 3-24] 대체수단 제공시 수반되는 부담사항	78
[그림 3-25] 근무처의 대체수단 미제공 사유	79
[그림 3-26]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무에 대한 인지여부	80
[그림 3-27] 근무처의 구체적 조치의무 이행사항	81
[그림 3-28] 개인정보 파기요건 충족시 파기여부	82
[그림 3-29] 정보주체 권리보장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공개 여부	83
[그림 3-30] 개인정보유출 인지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인지 여부	84
[그림 3-31]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담사항 비율(1순위)	85
[그림 3-32]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담사항 비율(1+2순위)	85
[그림 3-33]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위한 교육 수료 경험 여부	86
[그림 3-34] 당해 교육의 실시 기관 또는 업체	87
[그림 3-35] 당해 교육의 실시 기관 또는 업체	88
[그림 3-36] 근무처의 내부직원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실시 여부	89
[그림 3-37] 근무처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90
[그림 3-38]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한 인식	91
[그림 3-39]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변화 추이	92
[그림 3-40]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비용증가에 따른 견해	93
[그림 3-41] 개인정보보호법 유예기간(6개월)에 대하여 충분하다 여기는지 여부	94
[그림 3-42]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순위)	95
[그림 3-43]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2순위)	95
[그림 3-44]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2+3순위)	96
[그림 3-45] 효율적 개인정보보호 실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97
[그림 3-46]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향후 중요 고려요소	98



제1장 개요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연구목표
2. 연구의 주요내용

제3절 개인정보보호 인식변화 등 실태조사 개요

1. 개요
2. 개인정보제공자
3. 개인정보처리자
4. 설문지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한 단계 진일보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 개별법의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끌었던 종래의 법제도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대상도 제한을 두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서 다양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혁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인식도 담보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 등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 있는 것으로 드러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한 달이 넘었으나... 글썄’, 2012. 4. 26.자 노컷뉴스)
 -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한 달 됐는데...그게 뭐예요, 2012. 5. 2.자 미디어 오늘’)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여전히 빈번한 상황. 특히 2012. 5. 17.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메인사이트가 해킹당하여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에 발맞추어 제도정착에 대한 점검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적 시행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개인사업자 등 사업체의 규모(정보보호 업무의 전담조직 및 전문성)의 차이나, 산업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식과 부담 등이 상이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보호효과에 대한 인식도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별 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이나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과 개인정보보호 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차제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개선의 구체적·객관적 근거자료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법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부담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됨

■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장기적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행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하는 것으로 함
 - 또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장기적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토대를 마련함
-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각종 보호조치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변화가 상당한 분야를 중점대상으로 인식 현황 및 병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됨

- 개인정보제공자(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개별 사업체 및 기관 방문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급하게 요청되는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함
- 금번 조사를 향후 정기·수시 인식조사 등 실태조사로 발전시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2절 | 연구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연구목표

- 정기적인 주요 변화와 실태 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 방안 마련
 -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변화 추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식조사 및 수준진단의 기초를 마련함
 -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 의무이행자들의 고충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수행함
 -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의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현황과 환경 변화 등의 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정형화된 효율적인 조사 방안 도출
 - 향후, 정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결과(통계 등)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 항목 및 방법 등 제시함
 - ※ 이번 과제 내에서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규모와 범위 등은 연구비 내에서 최대로 설정하고, 조사결과 통계 자료 등은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 9. 30.)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영향 조사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인식 현황, 사회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 9. 30.) 이후,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의 법제도 이행실태 및 문제점 등 조사분석
 - 법령상 주요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행 실태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함
 -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국내외 주요 법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 비교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조사분석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과제 및 적용 방안 제안
 - 사회적 인식 및 법령 이행현황 등 조사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신규 도입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함
 -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도입·적용 방안(법령 개정 등) 제시함

제3절 | 개인정보보호 인식변화 등 실태조사 개요

1. 개요

■ 조사배경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례가 점차 다양화·지능화·대규모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1주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법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재점검할 당위성이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책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개인정보제공

- 자, 처리자의 일반적·구체적 제도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증대함
- 현 시점에서의 현상을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양한 인식 추이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향후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수립·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제도정립 및 개선방향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의 목적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영향정도를 파악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인식 현황, 사회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함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의 법제도 이행실태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 문제점 등을 파악함
 - 법령상 주요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행 실태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함
 -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국내 여건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개선 및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2. 개인정보 제공자

■ 조사개요

- 2012년 9월초부터 2012년 10월말 까지 2달간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6개 직종¹⁾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 학력별 구분

1) 학생, 전업주부, 자영업, 회사원, 기타, 무직

■ 주요 조사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 관련 인식
-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 유출경험 및 피해구제, 대응경험
-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제도의 이행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 개인정보유출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개선분야 등

■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NICE알앤씨 실사실을 통한 공공기관과 사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고 각 근무처의 개인정보 담당자(책임자)를 직접 대상으로 이메일, FAX와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접수
- 오프라인 설문지 배포
- 조사기간: 2012. 9. 7 ~ 2012. 10. 7 (31일)

■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표 1-1] 응답자 인구통계

구분		사례수	퍼센트
성별	남자	335명	53.9
	여자	283명	45.6
	합계	618명	99.5
	무응답	3명	0.5
연령	20대	292명	47.0
	30대	130명	20.9
	40대	108명	17.4
	50대 이상	91명	14.7
학력	중졸 이하	7명	1.1
	고졸	98명	15.8
	대학 재학	244명	39.3

	구분	사례수	퍼센트
	대졸	184명	29.6
	대학원(석사) 재학	24명	3.9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	40명	6.4
	합계	597명	96.1
	무응답	24명	3.9
소득	100만 미만	29명	4.7
	100-200만	71명	11.4
	200-300만	150명	24.2
	300-400만	149명	24.0
	400-500만	89명	14.3
	500-600만	45 명	7.2
	600만 이상	70 명	11.3
	무응답	18 명	2.9
거주지	서울	312 명	50.2
	경기	192 명	30.9
	기타 광역시	46 명	7.4
	기타 시도	68 명	11.0
	합계	618 명	99.5
	무응답	3 명	.5
직업	무직	16 명	2.6
	학생	251 명	40.4
	전업주부	46 명	7.4
	자영업	67 명	10.8
	회사원	192 명	30.9
	기타	42 명	6.8
	합계	614 명	98.9
	무응답	7 명	1.1
합계		621 명	100.0

■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처리과정(Editing, Cording / Punching, Cleaning)을 거쳐 PASW Statistics 18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 자료분석 방법

- 각 문항마다 대상별 응답수와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문항별 변인으로 분석하여 통계표를 작성

3. 개인정보처리자

■ 조사개요

- 2012년 9월초부터 2012년 10월초 까지 1달간 20세 이상 성인 555명을 대상으로 10개 업종²⁾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이후 업무와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
- 기관형태, 업종, 회사 규모, 소재지, 매출규모로 구분

■ 조사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 관련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처리방법 및 절차 등 변화
-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제도의 이행실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예산, 조직, 인력 등 부담정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 개인정보유출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개선분야 등

■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NICE알앤씨 실시실을 통한 공공기관과 사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고 각 근무처의 개인정보 담당자(책임자)를 직접 대상으로 이메일, FAX와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접수
- 오프라인 설문지 배포
- 조사기간: 2012. 9. 7 ~ 2012. 10. 7 (31일)

2) 공공기관, 정보통신, 금융·보험, 의료·보건, 유통·물류·도소매, 사교육, 자영업, 숙박업, 관광업, 비영리기관.

■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표 1-2] 응답자 인구통계

	구 분	사례수	퍼센트
기관형태	개인사업체	234 명	42.2
	회사 등 법인	169 명	30.5
	정부·지자체·공공기관	127 명	22.9
	기타	25 명	4.5
업종	공공기관	127 명	22.9
	정보통신	40 명	7.2
	금융·보험	37 명	6.7
	의료·보건	30 명	5.4
	유통·물류·도소매	98 명	17.7
	사교육	50 명	9.0
	자영업	91 명	16.4
	숙박업	36 명	6.5
	관광업	14 명	2.5
	비영리기관	32 명	5.8
규모	5명 미만	226 명	40.7
	5-49명	210 명	37.8
	50-299명	71 명	12.8
	300명 이상	48 명	8.6
소재지	서울	135 명	24.3
	경기	96 명	17.3
	기타 광역시	97 명	17.5
	기타 시도	225 명	40.5
	무응답	2 명	.4
매출규모	1억 미만	52 명	9.4
	1-10억 미만	44 명	7.9
	10억 이상	68 명	12.3
	거절 / 무응답	391 명	70.5
전	체	555 명	100.0

■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처리과정(Editing, Cording / Punching, Cleaning)을 거쳐 PASW

Statistics 18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 자료 분석 방법

- 각 문항마다 대상별 응답수와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문항별 변인으로 분석하여 통계 표를 작성

4. 설문지

- 본 실태조사 설문지의 실제내용은 부록에 제시



제2장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조사결과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2. 개인정보유출 및 피해구제 경험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4.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제2장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조사결과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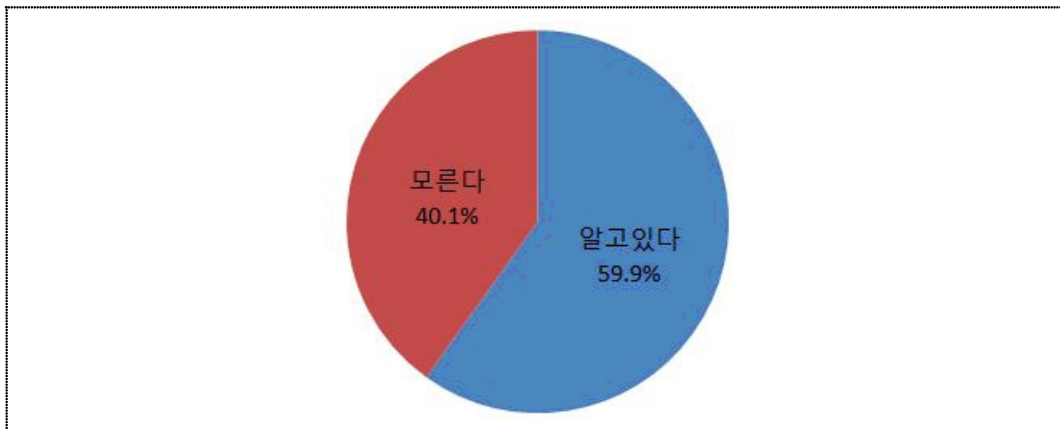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여부에 대한 인식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제공자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는 응답(59.9%, 372명)하여 모른다는 응답(40.1%, 249명)에 비해 19.8% 앞서고 있음(그림 2-1)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1주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30-40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 활동 및 구체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심연령층에서 법 시행에 따른 각종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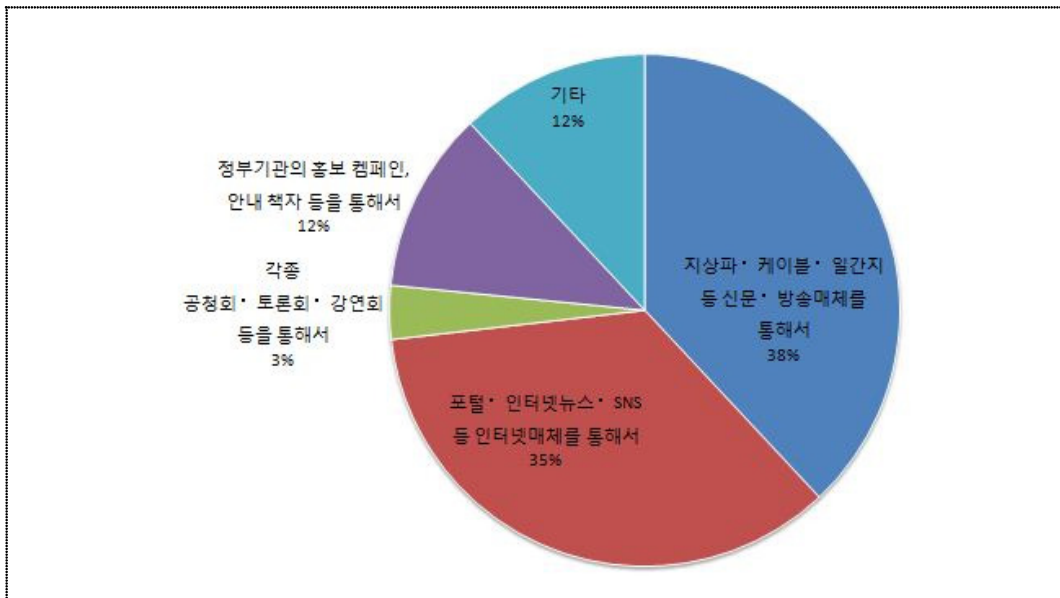
[그림 2-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의 인지경로 등

-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방송매체를 통해서(38.0%)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포털·인터넷뉴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서(35.2%)가 뒤를 잇고 있음(그림2-2)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관하여 기존 언론매체와 인터넷매체가 각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는 위와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 2-2] 개인정보보호법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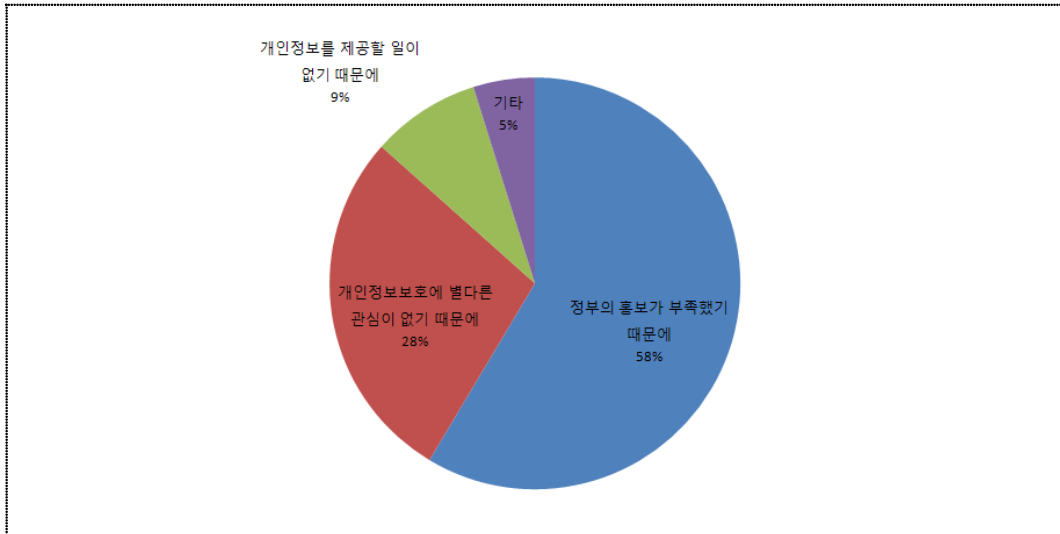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368명 가운데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21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특징적임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사실을 알게 된 경로의 경우에는 20대에서는 55.8%가 ‘포털·인터넷뉴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30대부터 50대 이상은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방송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각각 40.5%,

45.3%, 56.1%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젊은층은 인터넷매체를, 노년계층은 기존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58.6%)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가 (28.0%)로 나타남(그림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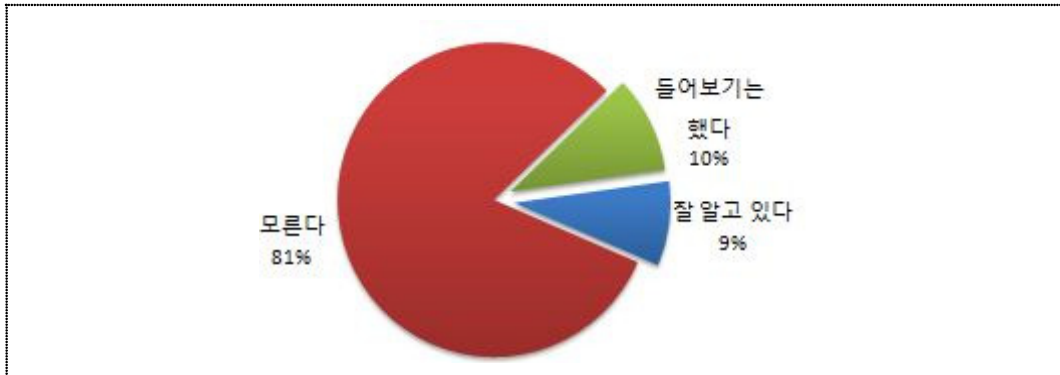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만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관련 예산, 인력의 확보도 향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여부에 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출범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대다수인 81.3%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그림 4-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알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265명(7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은 각계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대국민홍보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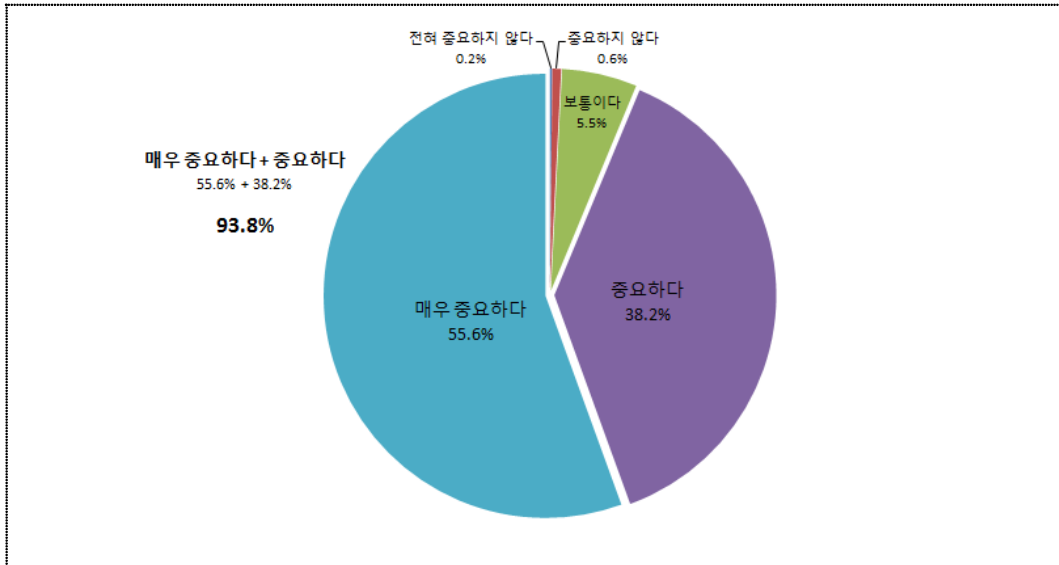
[그림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식



■ 본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

- 본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모든 응답자(93.7%)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매우 중요하다 55.6%, 중요하다 38.2%(그림 2-5)
 - 전체적으로 직업, 나이, 학력,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두 개인정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5] 본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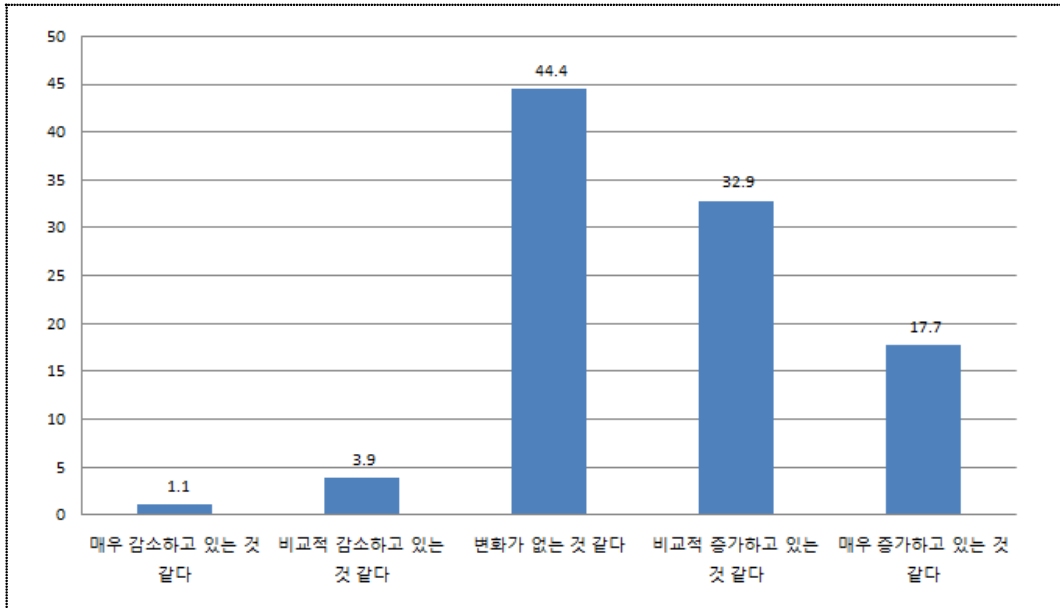


-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4.0%로,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3.7%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개인정보를 재산권적 가치로 바라보기 보다는 명예·법익 등 인격권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제도·정책개선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인격권적 가치를 보다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망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제공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변화로는 ‘비교적 증가’와 ‘매우 증가’ 항목의 합계가 50.6%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단일 답변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4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으로서 제도시행 이후 현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그림 2-6)

[그림 2-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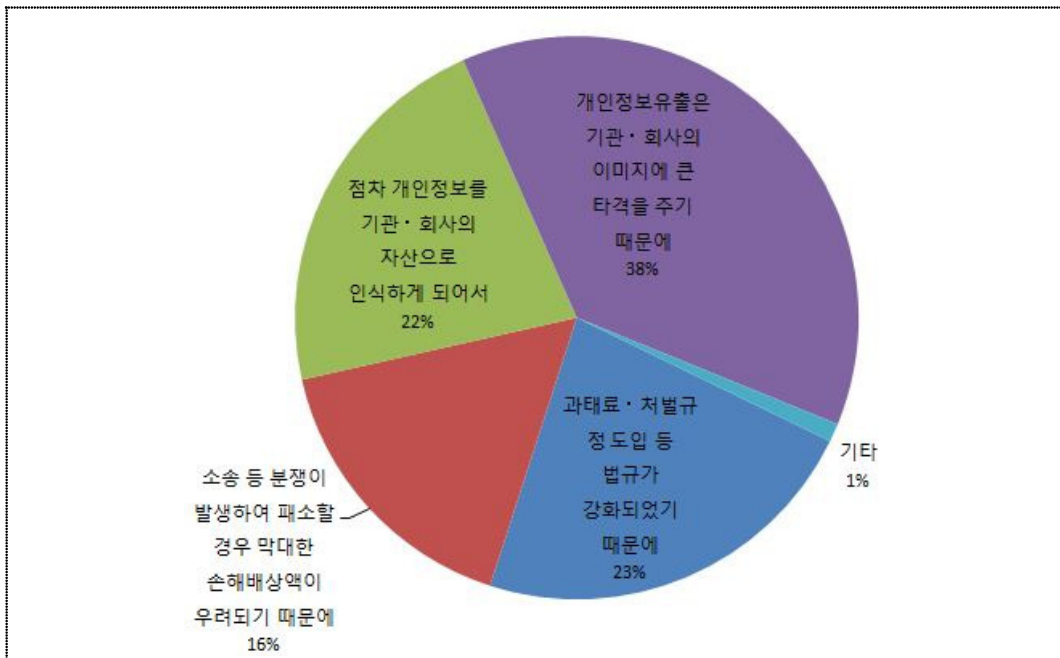
- 인식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으로 나타났고(47.5%), 두 번째로는 ‘나의 이력 및 사생활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8%로 나타남
 - 특히 30대에서 ‘나의 이력 및 사생활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4.7%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층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회사 등)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설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정보의 관리 중요성이 ‘비교적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이 37.2%로 조사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도·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적극적 대응은 제공자에게 체감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기관·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7.8%, ‘과태료·처벌규정 도입 등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2.8%로 나타남
 - 이를 유추해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반감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시행으로 인하여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다수의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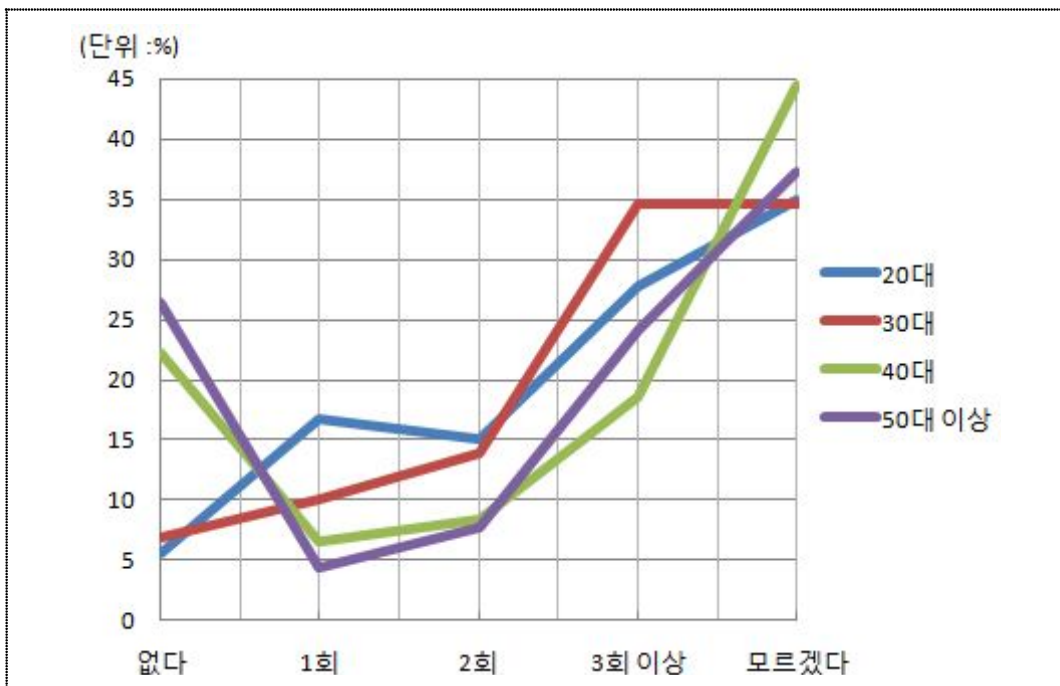
2. 개인정보유출 및 피해구제 경험

■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 1회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51.4%로 나타나 응답자의 반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가 유출된 횟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고,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함(그림 2-8)
 - 30대에서 가장 많이 ‘3회 이상’ 유출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40대에서 ‘모르겠다’로 가장 많이 응답함
 - 젊은층일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인지율도 그만큼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8]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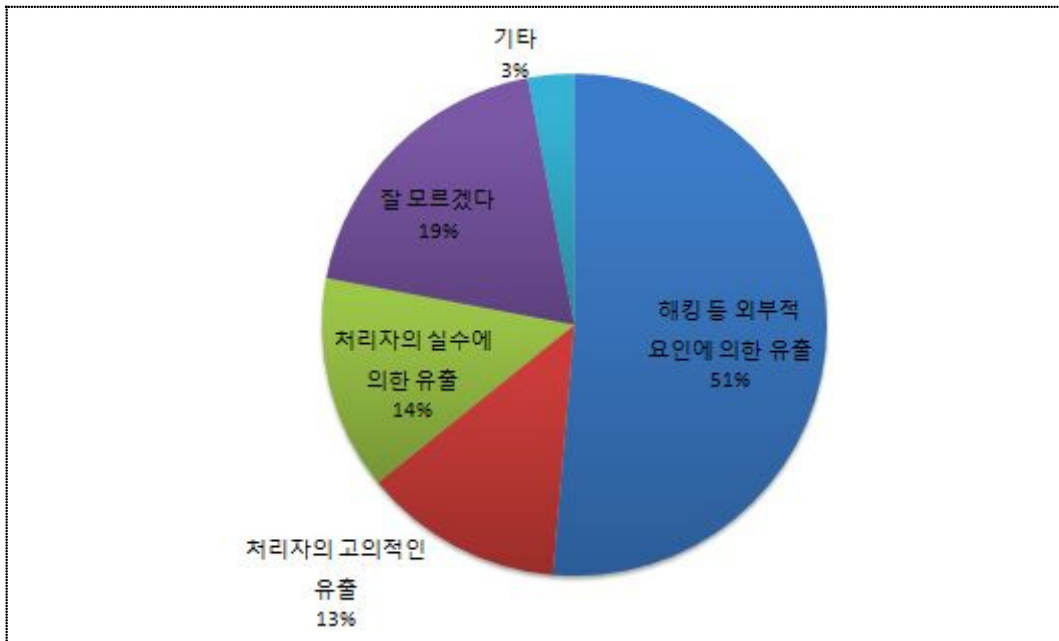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유출유형

- 개인정보가 유출피해사례에 있어서는 처리자의 고의적 유출이나 실수 보다는 ‘해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출’이 51.4%로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남(그림 2-9)
- 30대 이하에서는 ‘해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출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체감하고 있었고(20대 이하 67.4%, 30대 79.5%), 40대 이상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가 가장 많음(40대 40.9%, 50대 이상 31.4%)

-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로에 관해 ‘잘 모르겠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남(학생 : 21.6%, 회사원 : 26.2%, 전업주부 : 33.3%)

[그림 2-9]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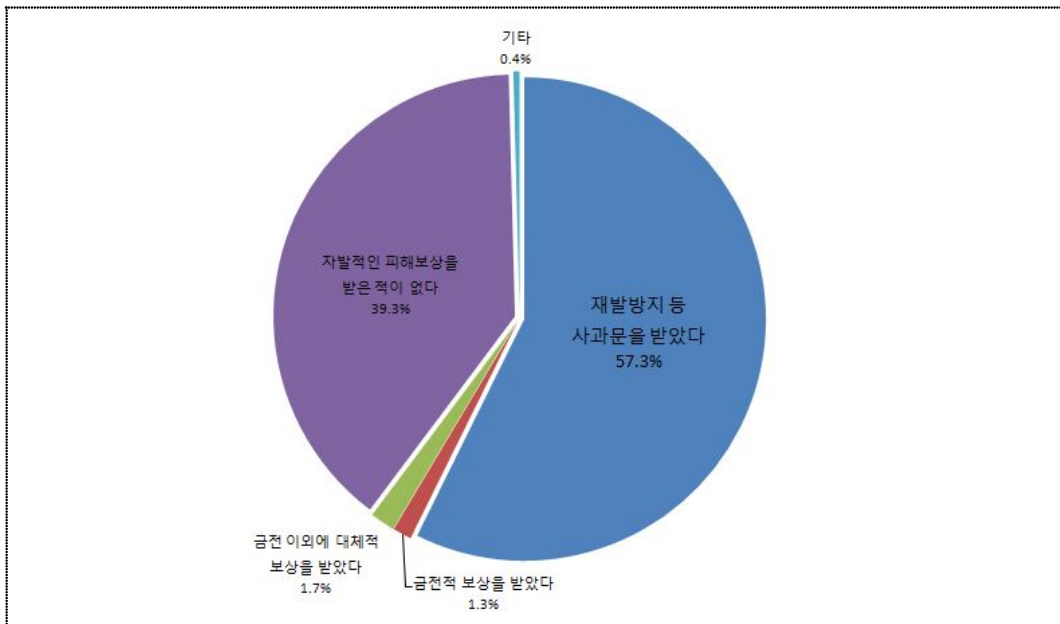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제

-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후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응답은 33.8%로 나타났고, 유출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 보상을 받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39.3%로 나타나, 정보주체의 체감 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피해 보상의 내용으로 ‘재발방지 등 사과문을 받았다’가 57.3%로 가장 많아 처리자의 대응이 단순히 피해 고지와 사과의 형태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출피해발생 이후 재발방지 등의 사과(57.3%) 이외에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적 보상을 받은 경우는 2.9%에 그쳤으며, 39.3%이상의 응답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유출 피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만족스러운 피해보상을 경험한 사람이 극히 드물고,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에서 단순 신고 혹은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의 자발적 대응(피해보상)에만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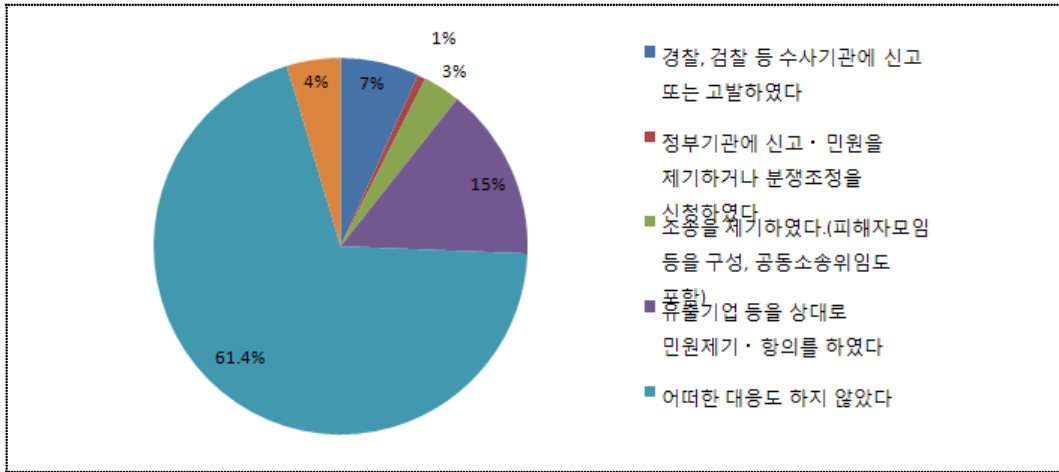
[그림 2-10]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경험

-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경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이후 대응도 미온적임(개인정보 유출경험이 있는 319명 중 196명, 61.4%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음)
- 그 주된 이유는 피해 구제방법을 몰랐거나, 번거롭게 귀찮았다는 응답(196명 중 128명(65.8%)이 상당한 만큼, 229명의 모르겠다는 응답 가운데 유출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됨)

[그림 2-11] 본인 개인정보의 유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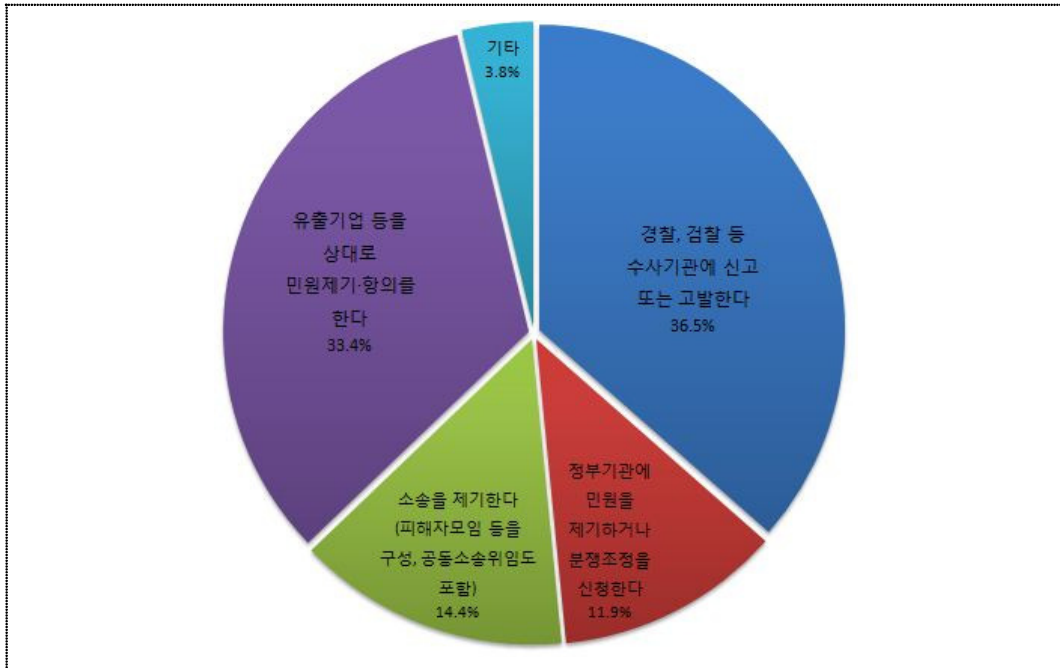


- 유출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수사기관 신고, 정부기관에 민원제기, 소송, 기업을 상대로 항의 등)는 극히 드물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4%에 이릅니다
 - 유출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이용한 이유로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등에 관하여 고른 답변이 나왔으며,
 - 정부기관을 이용한 이유로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음

■ 향후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방법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다’가 36.5%, ‘유출기업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항의를 한다’가 33.4%, 소송(14.4%), 정부기관에 민원제기 및 분쟁조정 신청(11.9%) 순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하였음(그림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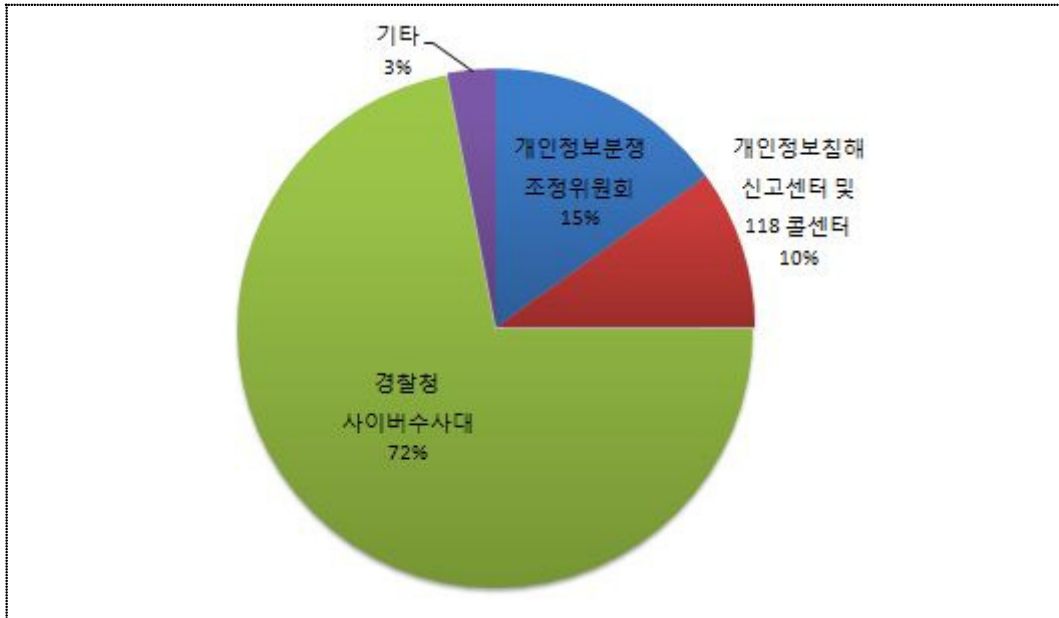
[그림 2-12] 향후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방법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대응관련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72.0%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3)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7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5.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118콜센터(10.0%) 순의 인지도를 보임
-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구제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인지도가 편중된 것은 형사처벌 등에 대한 일반인식에 따라 보다 강력한 구제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물론 다른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저조에 따른 것으로도 파악가능

[그림 2-13]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관련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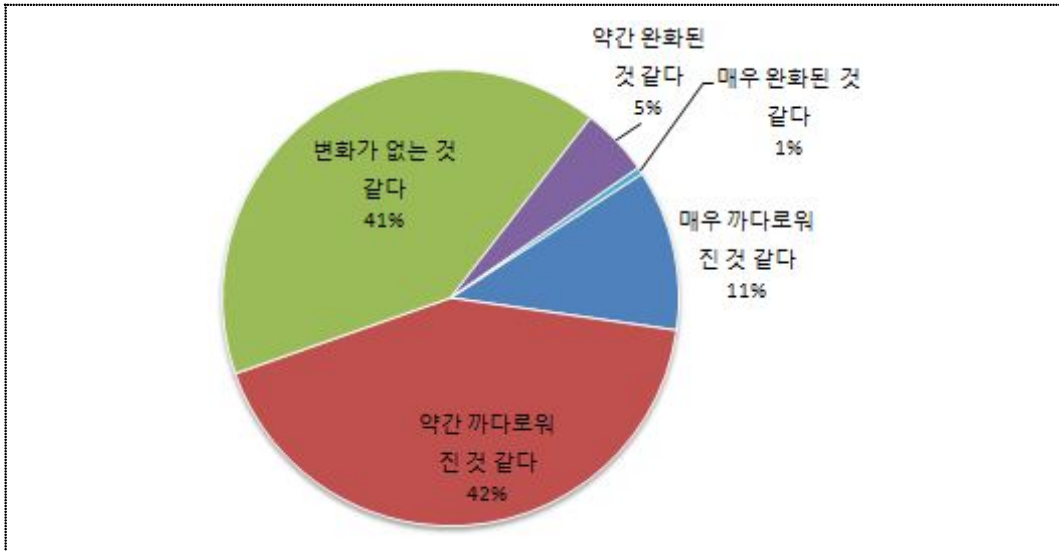
- 현 사이버수사대의 한정된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다양화와 질적 강화가 요구됨
 -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구제절차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중장기적 관점에서 피해 접수부터 구제, 분쟁해결까지 편의성을 극대화한 한 단계 높은 서비스의 제공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처리절차의 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 까다로워진 것 같다'는 응답이 42.4%로 나타났고,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은 40.9%로 나타나 체감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그림 2-14)

[그림 2-1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처리절차의 변화인식



-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보호를 위해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고,
 -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도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27%(99명)로 나타남
 - 따라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처리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수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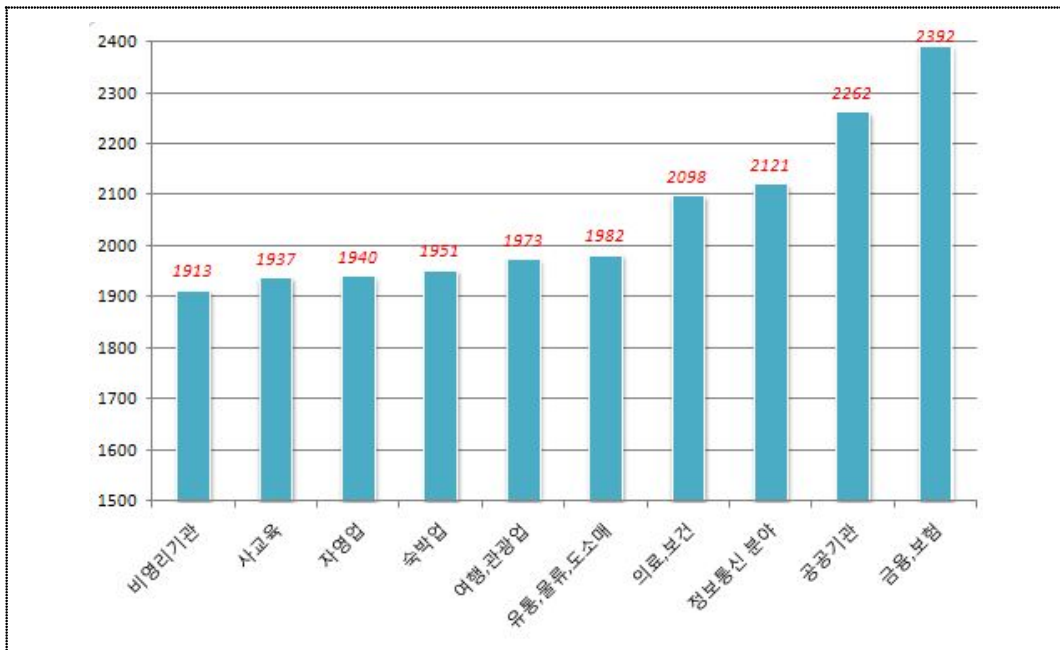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기업·개인 등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 공공기관은 ‘조금 높아진 것 같다’(48.3%)는 응답 외에 타 분야 대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5)
- 특히 상대적으로 비영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및 금융, 보험기관 등 공공·영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처리절차 강화를 가장 밀접한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금융분야에서의 변화를 제공자들이 용이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동의 및 서명이라는 절차의 수행을 통해서 보호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예측됨

○ 대부분의 업무분야에서 ‘변화가 없다’고 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개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분야별 변화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제한제도 인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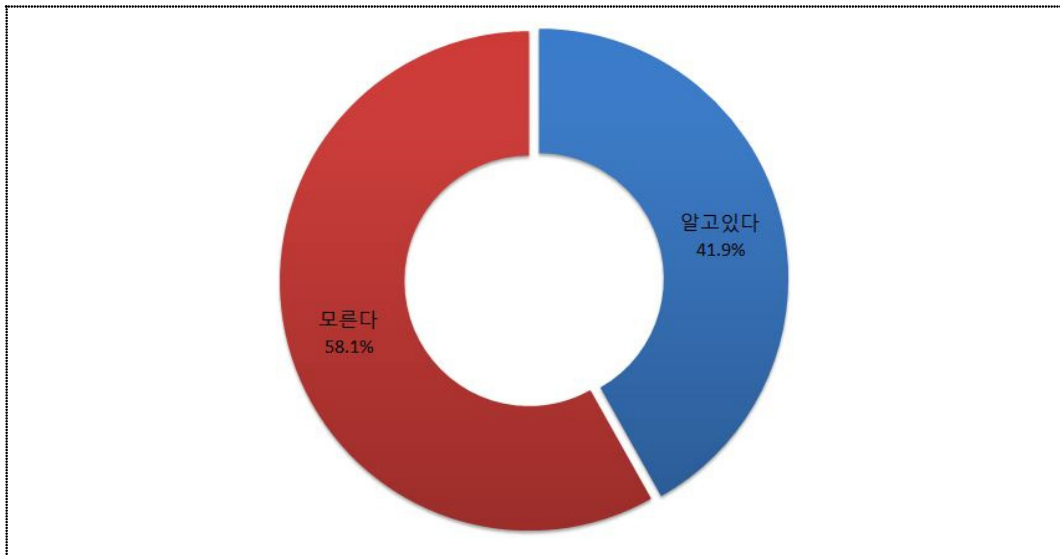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등) 및 민감정보(사상, 신념, 건강 정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³⁾, 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가 58.1%, ‘알고 있다’가 41.9%로 나타나 16.2%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6)

3)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59.2%, 30대 49.2%, 40대 59.3%, 50대 이상 65.9%로 나타나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접근성이 비교적 가장 떨어지는 직업군인 전업주부(71.7%)가 가장 많이 '모른다'로 응답함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38.4%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5%에 달하여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아직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운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제도 인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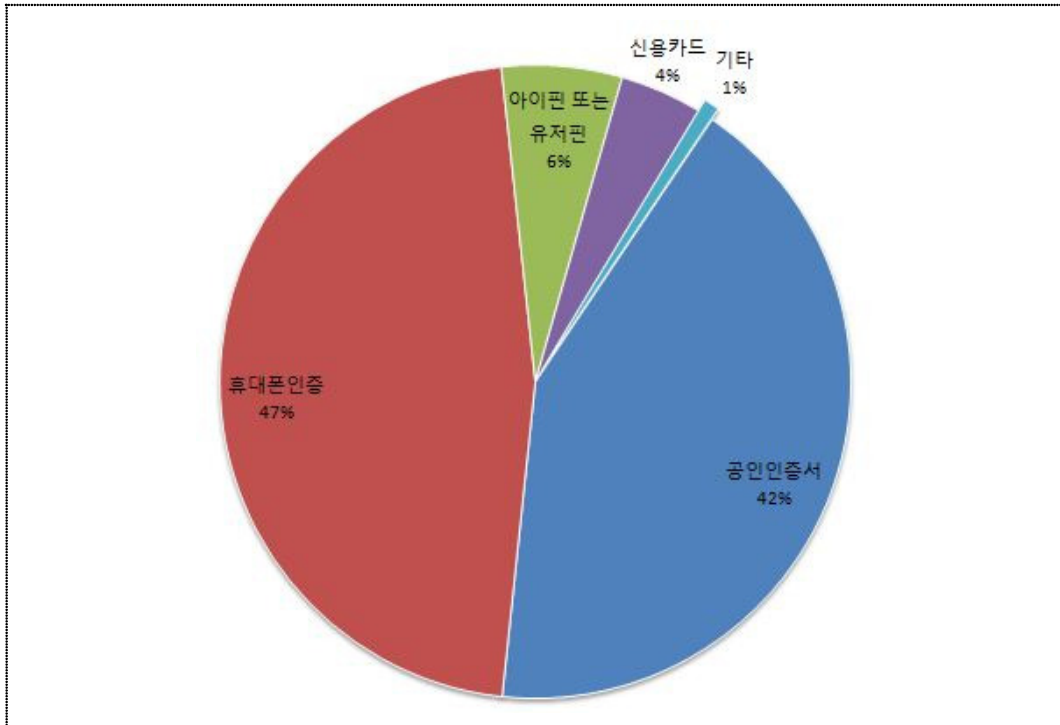
■ 선호하는 본인인증(대체가입수단)방법

- 가장 선호하는 본인인증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46.4%), '공인인증서'(42%), '아이핀 또는 유저핀'(6.1%), '신용카드'(4.2%)순으로 나타남(그림 2-17)
- 공인인증서(42%)와 휴대폰인증을 합치면(47%) 89%의 응답률을 보이는데, 이는 이

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느끼는 보편적 본인확인수단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이라는 것을 보여줌

- 휴대폰 인증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는 54.1%, 30대는 41.5%, 40대는 37.9%, 50대 이상은 39.7%로 주로 20대에서 휴대폰 인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인인증서는 연령대 별로 20대 이하(38.7%), 30대(42.3%), 40대(49%), 50대 이상(45.4%)로 나타나 20대 이하에서 보다는 30대 이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선호하는 대체가입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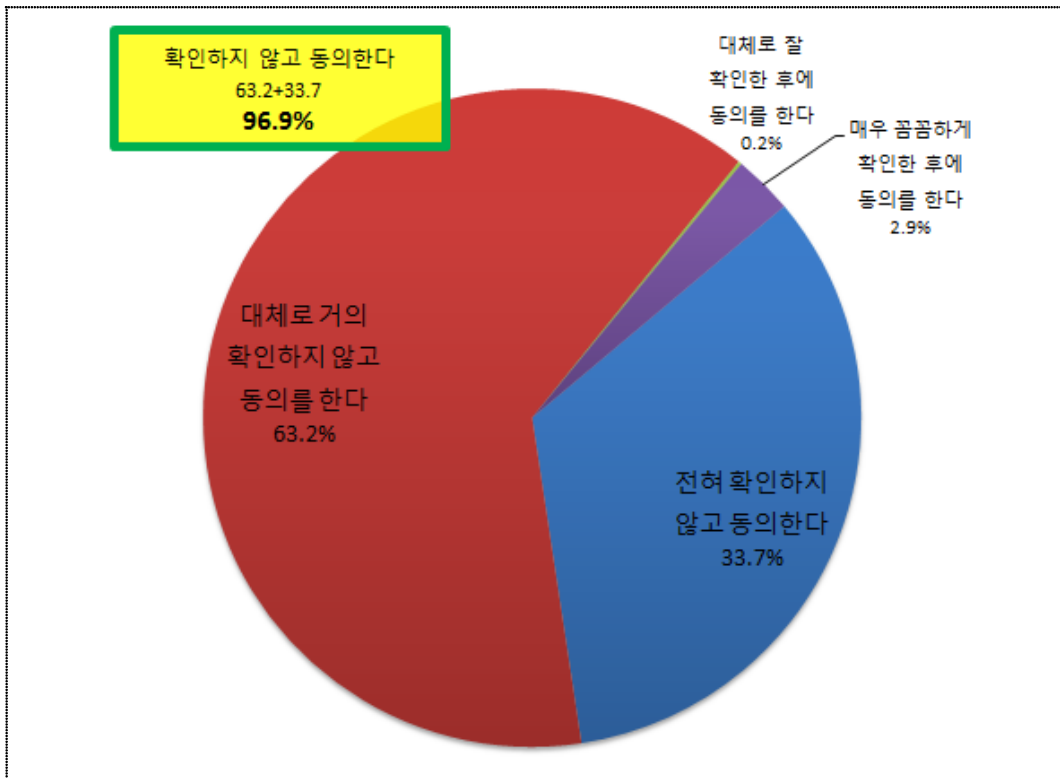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조건에 대한 확인정도

- 평소 ‘인터넷’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후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 ‘전혀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33.5%), ‘대체로 거의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62.8%)로 나타나 총 96.3%의 응답자들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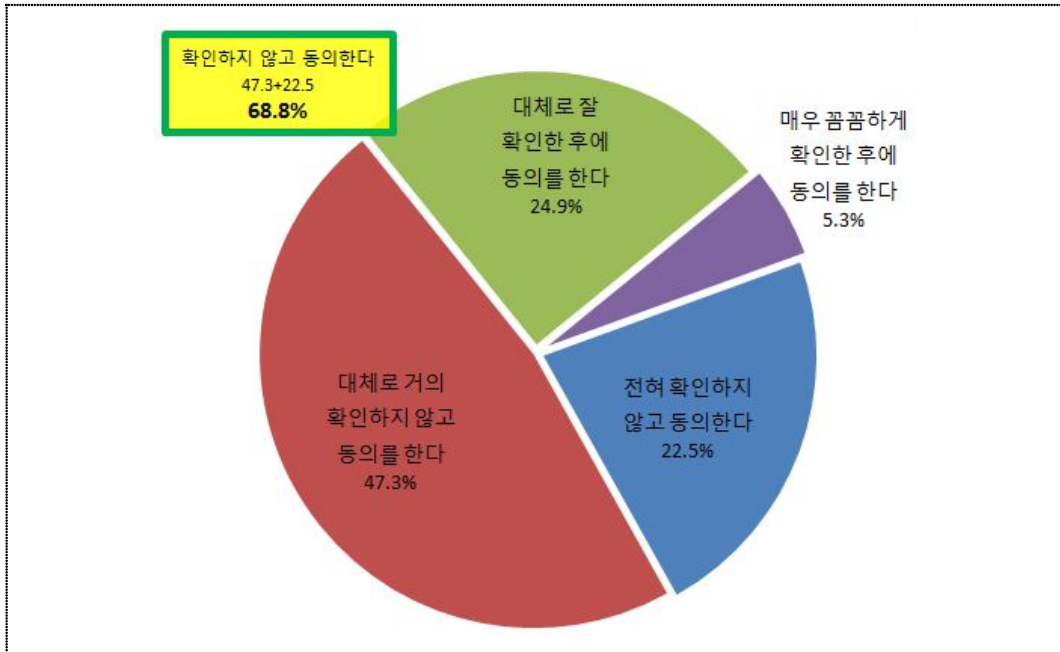
- 약관 등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방법, 조건에 관해서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의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직업별, 소득별, 지역별, 학력별에 관계없이 대체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8]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취급약관 확인정도



- 한편, ‘오프라인’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거의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가 47.2%로 나타났고, ‘대체로 잘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한다’가 24.8%, 전혀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가 22.4%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69.6%, 확인을 하는 경우가 30.1%로 나타나 온라인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거나 대체적으로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9)
 - 이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학력별로 별다른 편차가 없음

[그림 2-19]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취급약관 확인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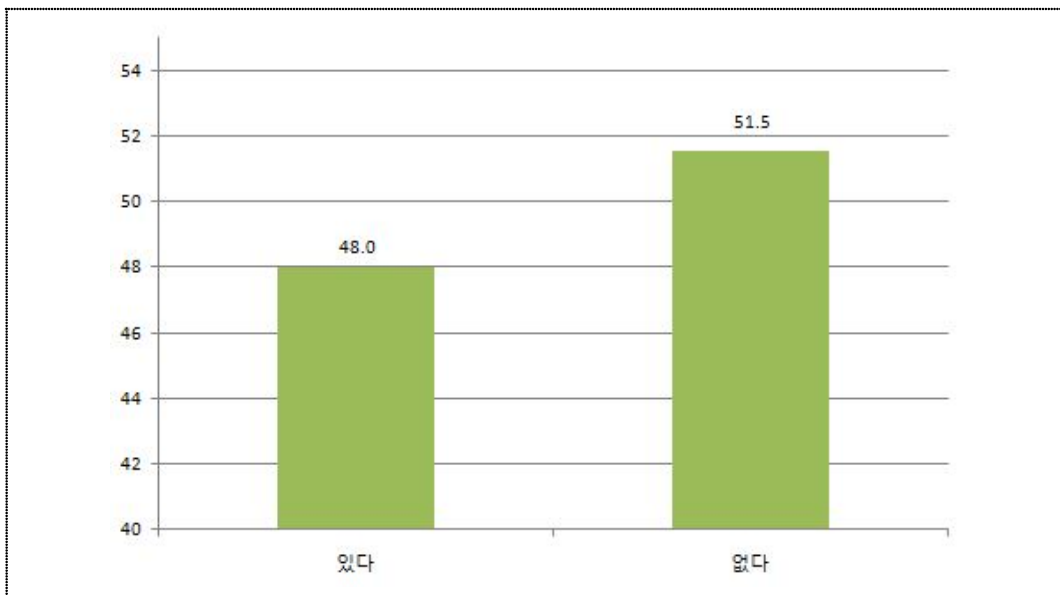


-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약관 등에 대한 확인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 온라인의 클릭랩(click-wrap)방식은 동의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용이하나, 약관의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처리 동의여부에 따른 불이익 경험

-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1.5%의 응답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나타남(그림 2-20)
 -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0]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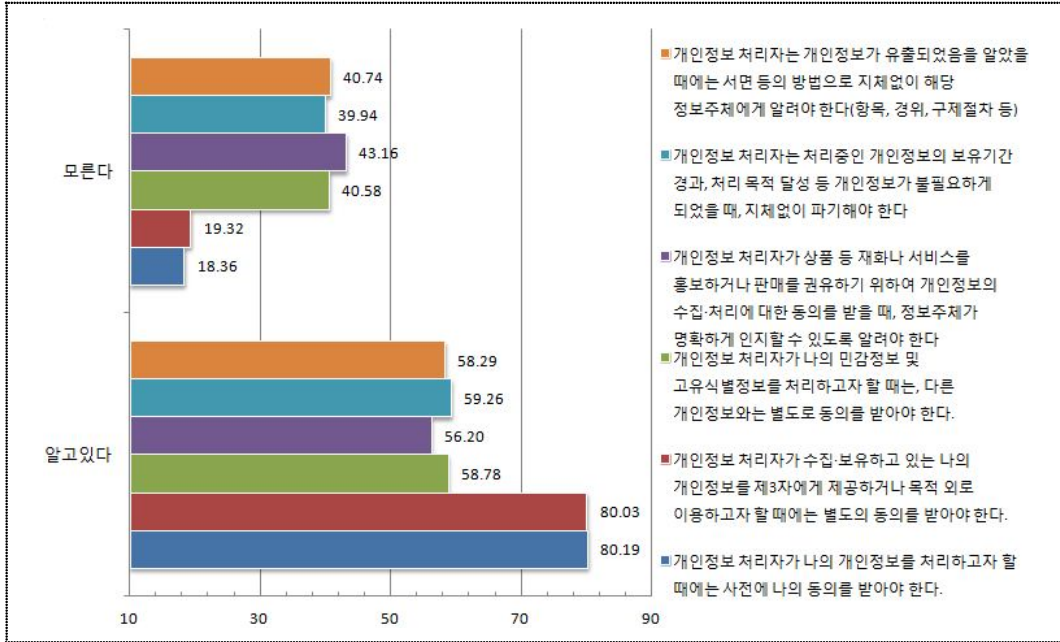
- 이는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함을 보여줌

■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자의 인식정도

-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와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는 반면, 민감정보·교육식별정보 별도 동의, 판매 홍보 등에 사용할 시 설명, 개인정보파기의무, 개인정보유출시 통지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9)

-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80.2%로 나타남
-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0%가 ‘알고 있다’로 응답함
-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답변이 58.8%로 나타남
- 개인정보 처리자가 상품 등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56.2%가 알고 있다고 답변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59.3%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58.3%가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로서 안내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사실에 관하여 451명(73%)이 확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제공자들의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세밀한 확인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 개인정보 처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공자의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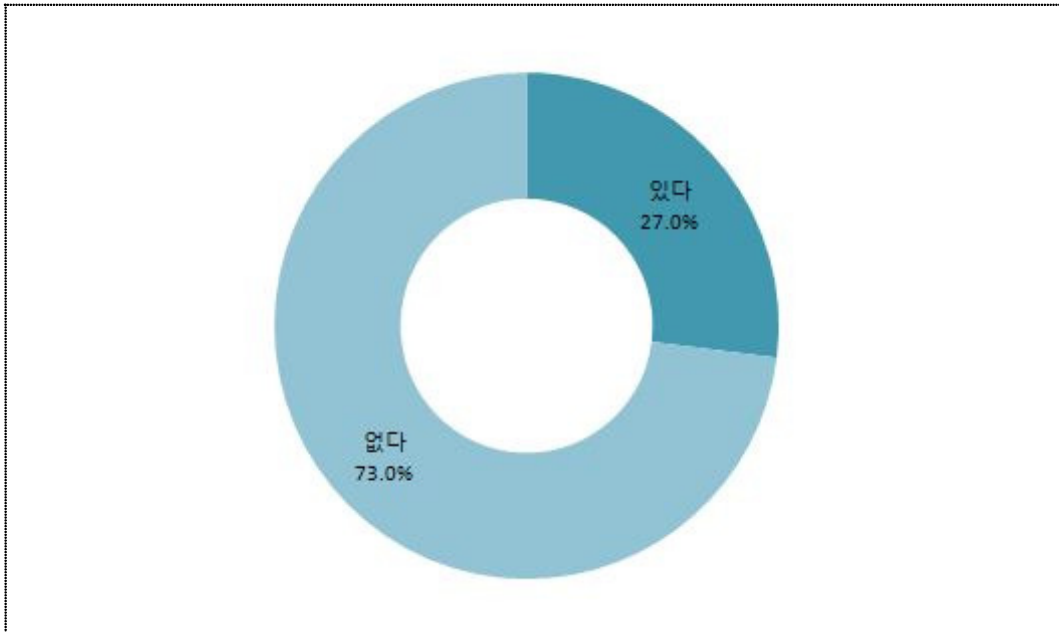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경험

-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안내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72.6%가 응답함
 -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안내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이용자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은 직업군으로는 ‘전업주부’가 8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회사원과 자영업자의 경우도 각각 73.1%와 69.5%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확인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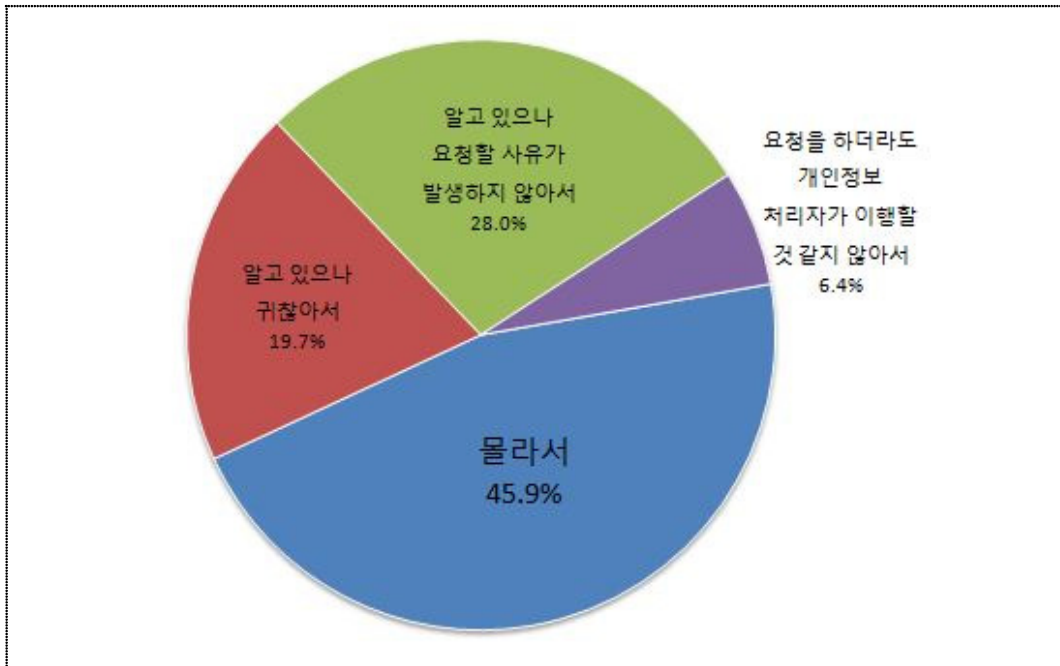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주장 경험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제한 등을 요청했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5.4%가 ‘없다’고 대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각 서울은 70.1%, 경기도는 79.1%, 기타 광역시는 93.5%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청을 했던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남
 - 서울·경기지역도 상당수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주장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중 45.5%는 ‘몰라서’였고,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27.8%로 나타남(그림 2-23)
 - 해당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16명(46%)에 달하는 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정법을 통해 강력하게 구체화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성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아쉬운 점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보장받는 열람·정정·삭제청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들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수단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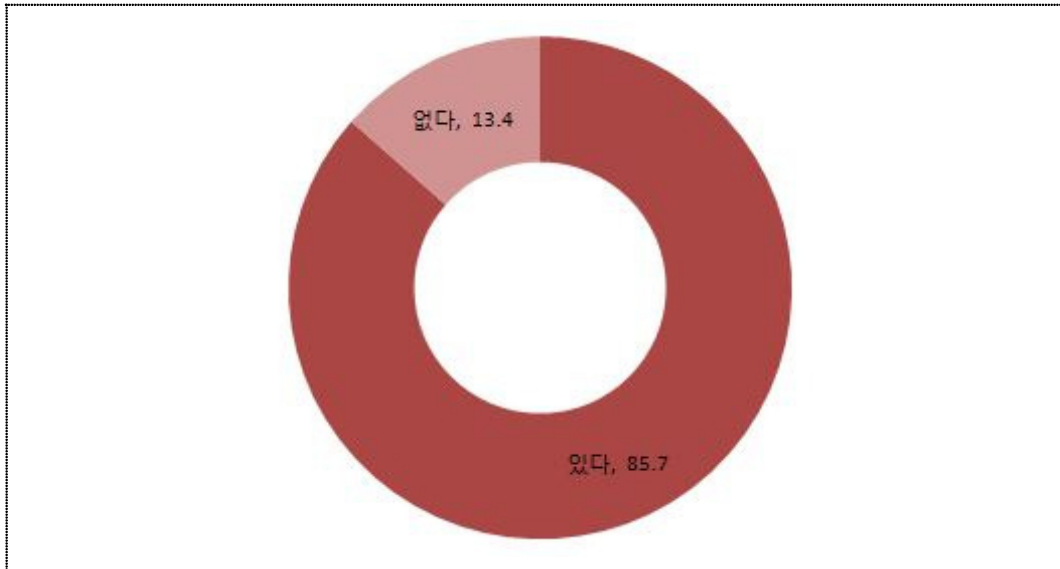
[그림 2-2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



■ 향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주장 계획

- 향후 요청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제한 등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고 대답한 사례가 85.7%로 나타나 제공자의 권리행사 의향을 알 수 있음(그림 2-24)

[그림 2-24] 향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 87.4%, 여성 85.3%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 이하는 89%, 30대는 85%, 40대는 85.2%, 50대 이상은 82.4%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공자의 권리행사로 처리자의 준수 의무가 구체화, 강화 될 수 있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우수한 분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는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30.2%)로 나타났고, 그 뒤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29.7%의 응답률을 보임 (표 2-1)

[표 2-1]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

분야	사례수	퍼센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510	29.67 %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분야	312	18.15 %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519	30.19 %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190	11.05 %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55	3.20 %
학원 등 사교육 분야	25	1.45 %
요식업, 부동산 등 자영업 분야	18	1.05 %
호텔 등 숙박업 분야	28	1.63 %
여행 등 관광업 분야	33	1.92 %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29	1.69 %
합계	1,719	100.00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분야

[표 2-2]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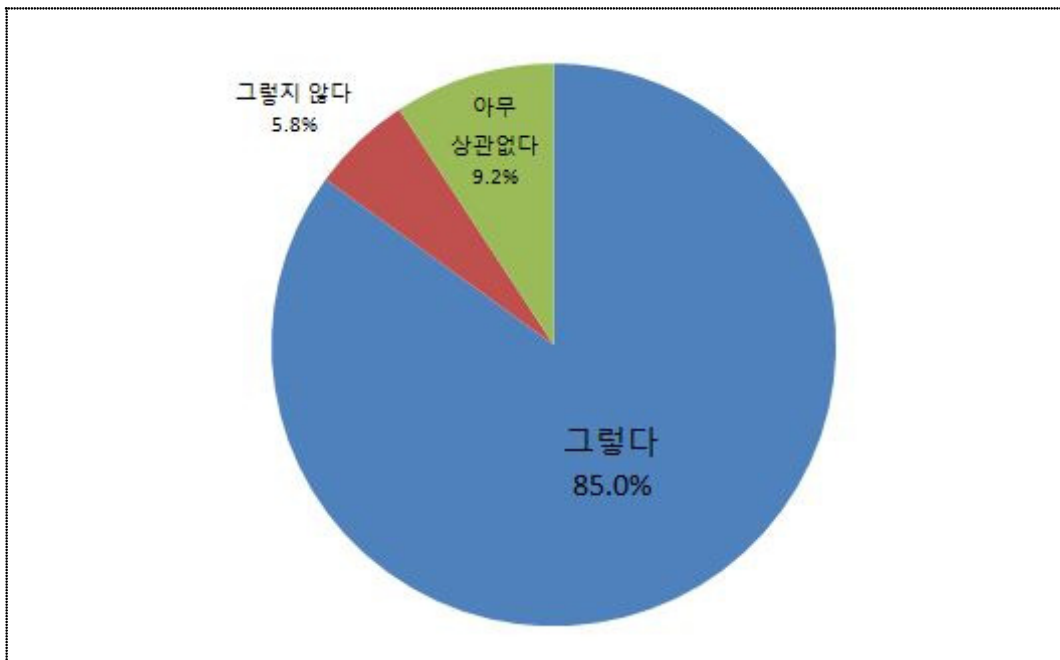
분야	사례수	퍼센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63	3.60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분야	239	13.66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59	3.37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72	4.11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264	15.09
학원 등 사교육 분야	276	15.77
요식업, 부동산 등 자영업 분야	204	11.66
호텔 등 숙박업 분야	129	7.37
여행 등 관광업 분야	168	9.60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276	15.77
합계	1,750	100.00 %

○ 반대로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는 ‘학원 등 사교육 분야’와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이 15.77%로 나타났고,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분야는 15.09%로 나타남. 이어서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분야(13.66%), 요식업, 부동산 등 자영업 분야(11.66%)로 분석됨 (표2-2)

■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한 기업에 대한 선호도

-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이 82.9%로 나타남 (그림 2-27)

[그림 2-27] 현 이용기업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쟁기업이 있다면 이용기업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느끼기에는 그 사유로 기관 및 회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181명이나 (37.8%) 답하였으며,
-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보다 선호하겠다는 질문에 83%(515명)나 그렇다고 답한 것과 연결하여 판단하였을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업경쟁력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음
- 개인정보의 관리 취급 등이 더 이상 사업자의 이용자 확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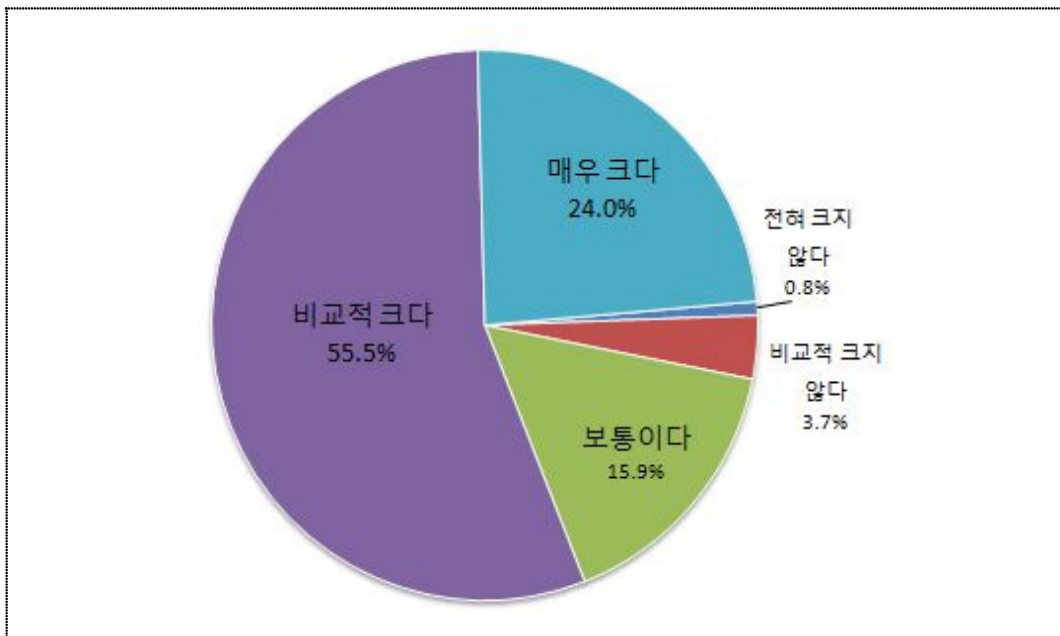
하나의 업무 분야로 확장되어 이용자들을 만족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음

4.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 심각성 인식정도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전반에 걸쳐 그 심각성이 크다고 느끼는 응답률은 ‘비교적 크다’(55.5%)와 ‘매우 크다’(24.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79.5%의 응답자들이 피해가 크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당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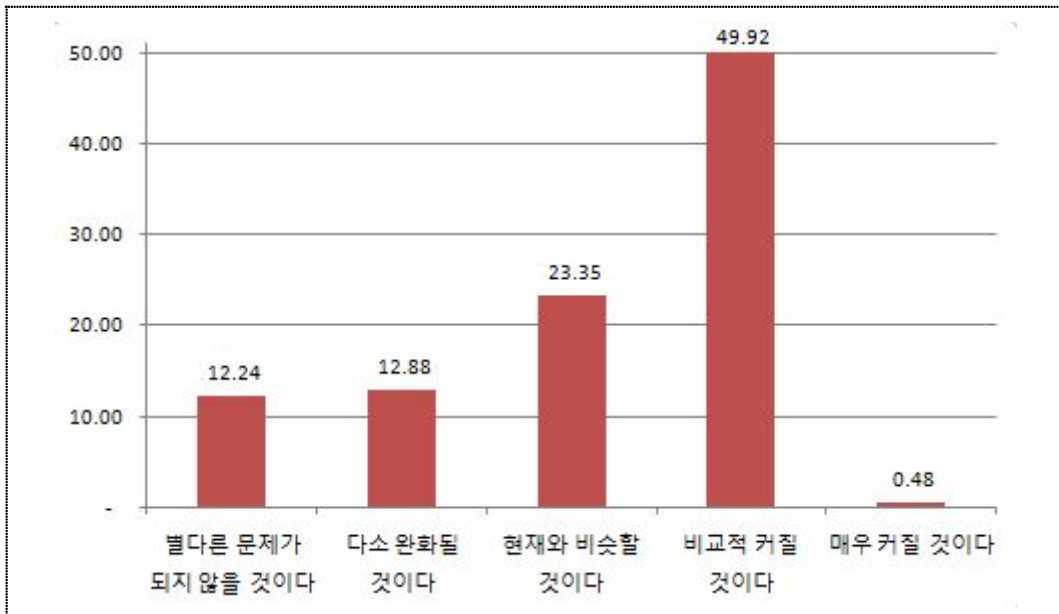
[그림 2-28]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현재 우리사회의 피해정도



■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전망

-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우리사회 전반의 피해를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커질 것이다’로 응답한 사람이 49.9%로 나타남(그림 2-29)
- 개인정보의 활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 예측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됨
 - 이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남자는 51.2%, 여자는 49.5%로 피해가 ‘비교적 커질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성별에 크게 차이가 없이 사회전반에 있어 개인정보의 피해를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직업군별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우리사회의 피해 예측도를 나누어 본다면 학생의 경우 49.1%, 전업주부의 경우 64.4%, 자영업자의 경우 41.8%, 회사원의 경우 50.2%의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전업주부의 경우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예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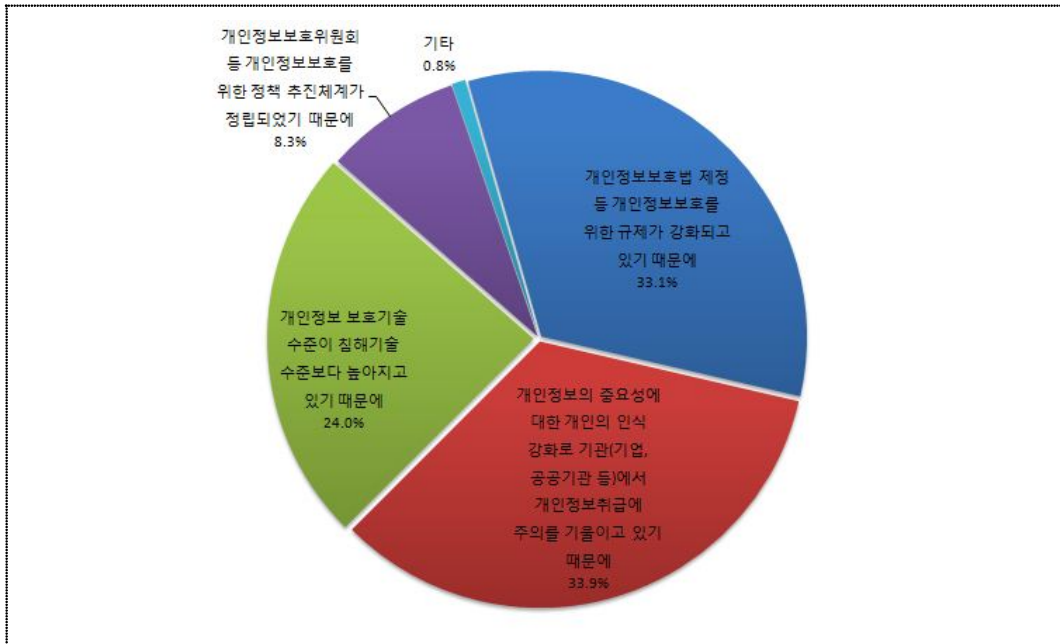
[그림 2-29]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향후 우리사회의 피해정도 전망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

-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사회전반에 피해규모가 감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성별, 학력, 학력, 직업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2-30)
 -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강화로 기관에서 개인정보취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가 33.1%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기술 수준이 침해기술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2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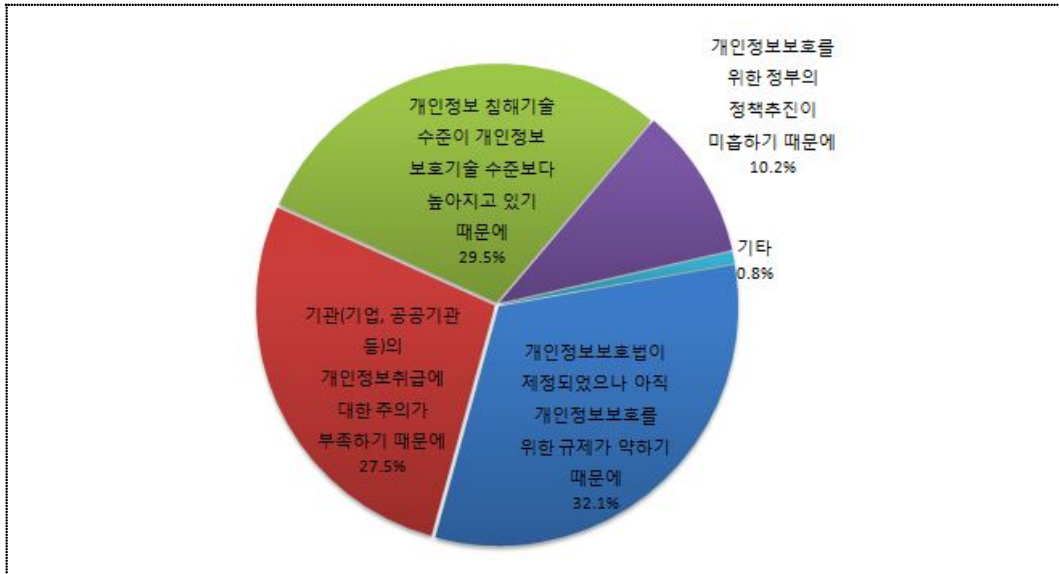
[그림 2-30] 개인정보유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32.1%)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1] 개인정보유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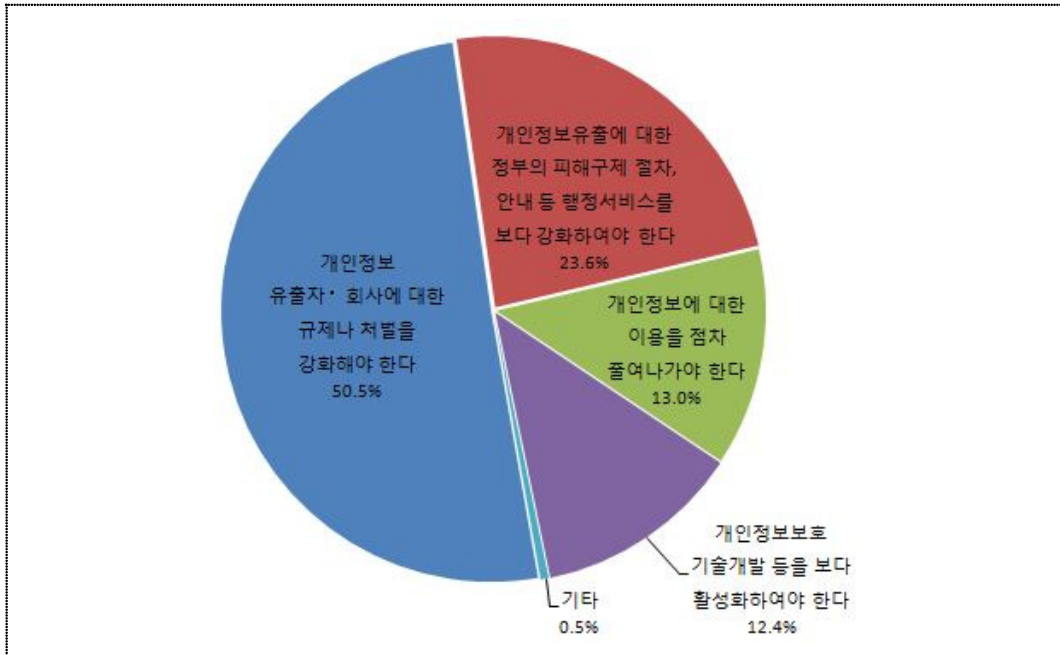
- 위와 같이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이유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0명(32.1%)로 가장 많았고, 침해기술이 보호기술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147명(29.5%),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가 부족하게 때문이라는 답 137명(27.5%)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1)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32.1%)이 가장 높은 것은 법의 제정되었음에도 피해보상이나 사법판단에 의한 피해자 구제가 미미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방식은 매우 강한편이지만, 개인정보 제공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정책의 개선방향

- 향후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 관한 질문에 ‘개인정보 유

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9.9%로 나타났고,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로 이어짐 (그림 2-32)

[그림 2-32] 개인정보보호 제도·정책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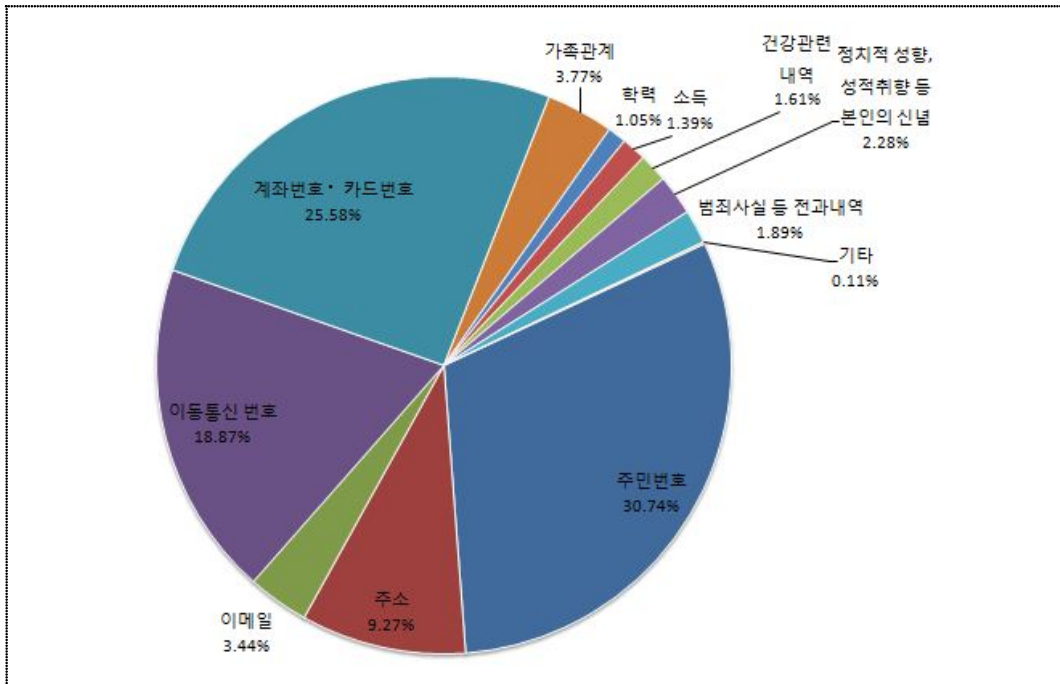


- 응답자중 절반이 ‘개인정보 유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로 응답한 것을 보면 현재 사회전반에서 기대하는 처벌 및 규제 강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1.2%가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결과가 49.5%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 결국 제공자 입장에서는 제도적 규제강화와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감독기관 혹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로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강화, 역할 증대 측면에서 깊이 고려해야할 사항일 것임

■ 개인정보의 종류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 대표적인 개인정보 중 어떤 항목이 유출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1위가 ‘주민번호’(30.7%), 2위가 ‘계좌번호·카드번호’(25.6%), 3위가 ‘이동통신 번호’(18.9%)로 나타남 (그림 2-33)
- 중복 응답률을 적용하면, 성별·지역·학력·소득·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89% 이상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로 ‘주민번호’를 뽑음

[그림 2-33] 유출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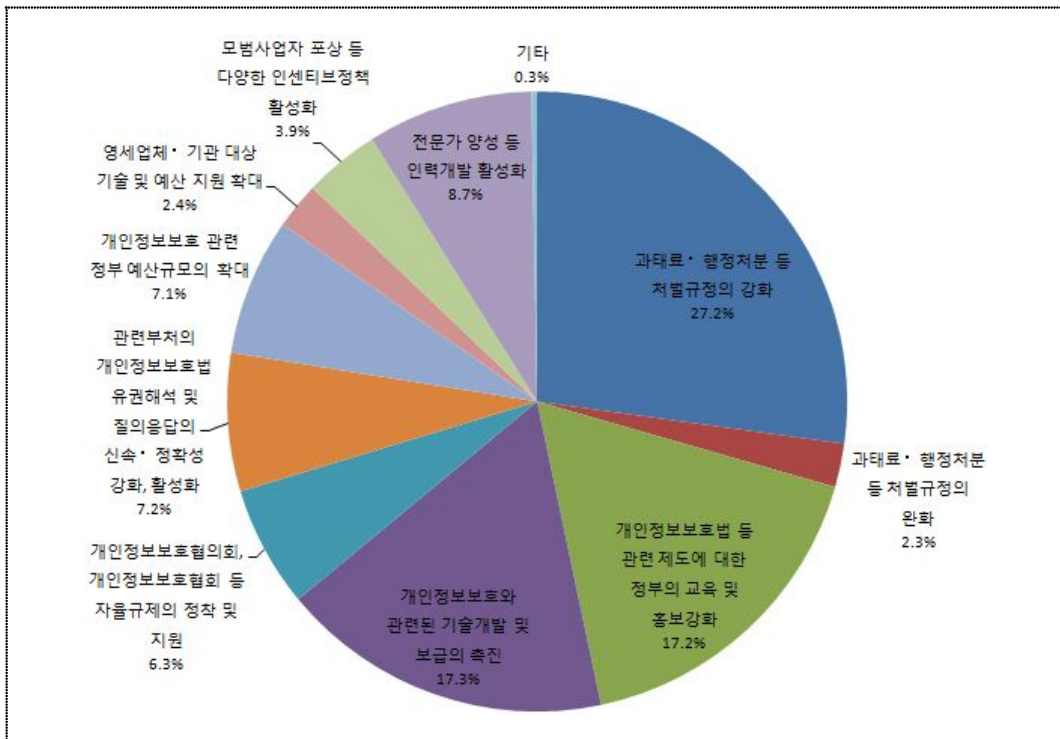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으로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27.2%)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17.3%),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17.3%)로 나타남 (그림 2-34)

- 개인정보 제공자의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 (109명, 22.8%)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산이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음(105명,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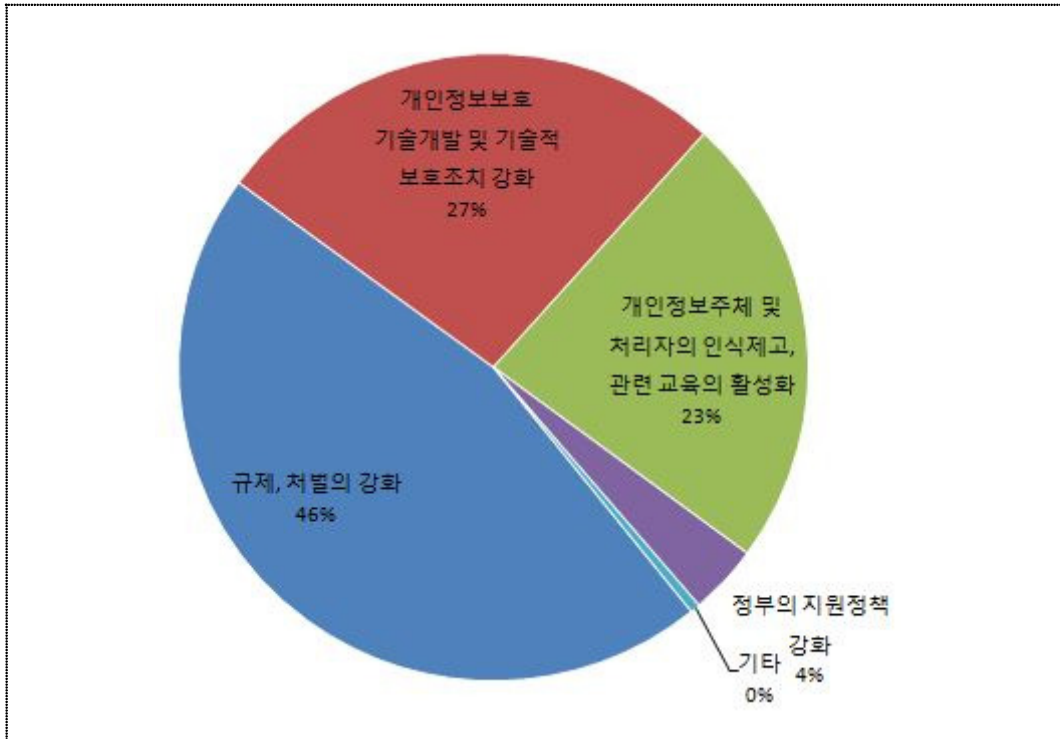
[그림 2-3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 개인정보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분야

-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최소화를 위해서 향후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제, 처벌의 강화’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26.3%), ‘개인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인식제고, 관련 교육의 활성화’(23%)로 나타남 (그림 2-35)

[그림 2-35]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3장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결과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2.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3.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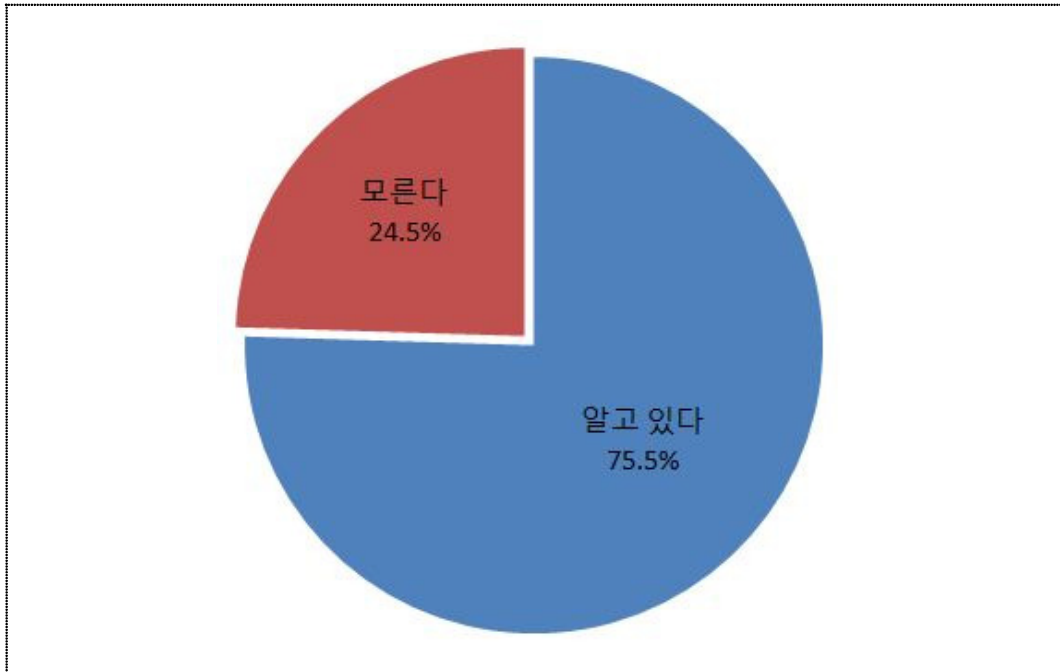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결과

1.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여부에 대한 인지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의 75.5%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 있다’로 응답함 (그림 3-1)
- 회사의 규모별로 나누어보면 5명 미만회사에서는 57.5%가, 5~49명 회사에서는 84.3%, 50~299명 회사에서는 94.4%가, 3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에서는 93.8%로 ‘알고 있다’로 응답함
 - 이는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관 형태로 나누어보면 개인사업체(60.3%)보다 회사 등 법인(82.2%)가,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96.1%)가 더 많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함
 - 이는 법률이 시행되고 각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개인사업체에서는 다른 기관형태에 비교해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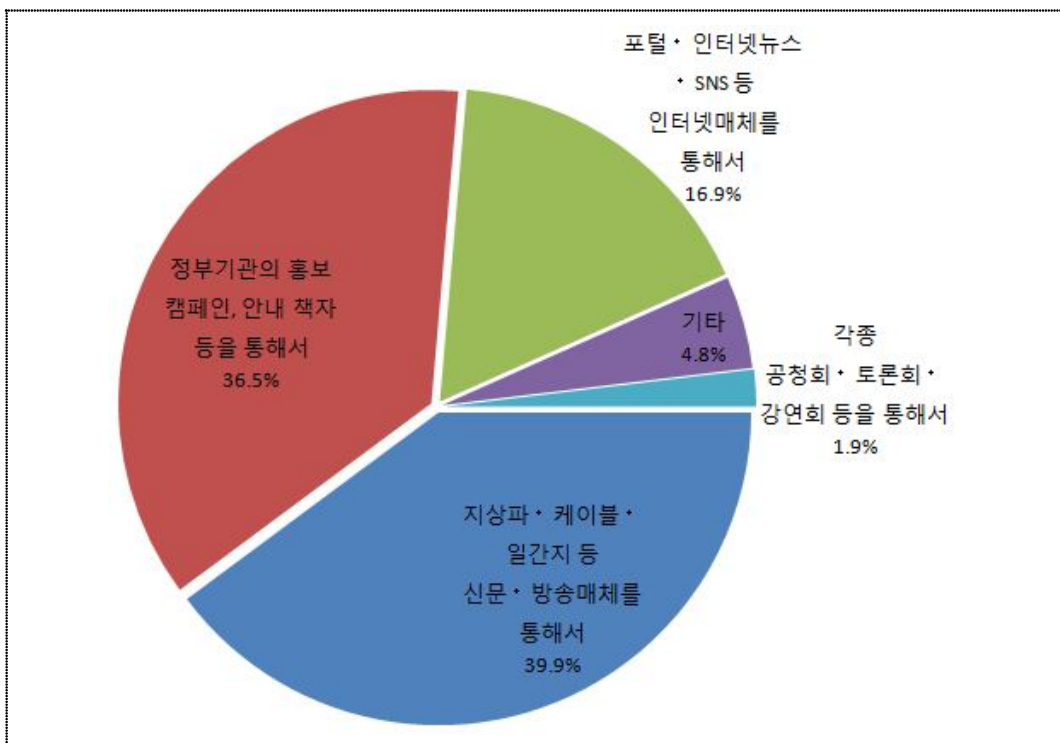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지 경로

-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가 39.9%, 정부기관의 홍보 및 캠페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가 36.5%, 포털·인터넷뉴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서가 16.9% 순으로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2)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관하여 기존 언론매체와 인터넷매체가 각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는 위와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기관형태로 나누어 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정부기관의 홍보 캠페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가 72.1%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체와 회사 등 법인에서는 각각 55.3%와 43.9%로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업종으로 나누어 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업종에서는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72.1%가 ‘정부기관의 홍보 캠페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나타남
- 회사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5명 미만의 규모에서는 65.4%로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5~49명의 규모와 50~200명의 규모 그리고 300명 이상의 규모에서는 각각 41.2%, 49.3%, 68.9%로 ‘정부기관의 홍보 캠페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이는 회사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기관의 홍보 캠페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정책 등 법률 시행 정보를 더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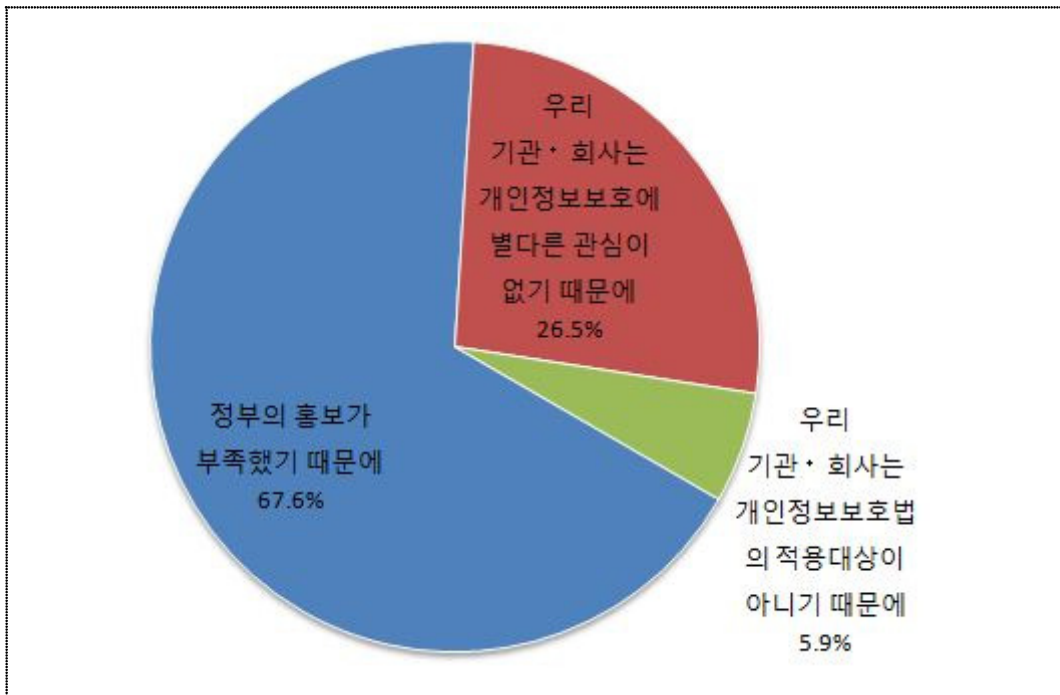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여부를 인지 못한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가 6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26.5%)로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만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 이에 대한 관련 예산, 인력의 확보도 향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기관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개인사업체’, ‘회사 등 법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모두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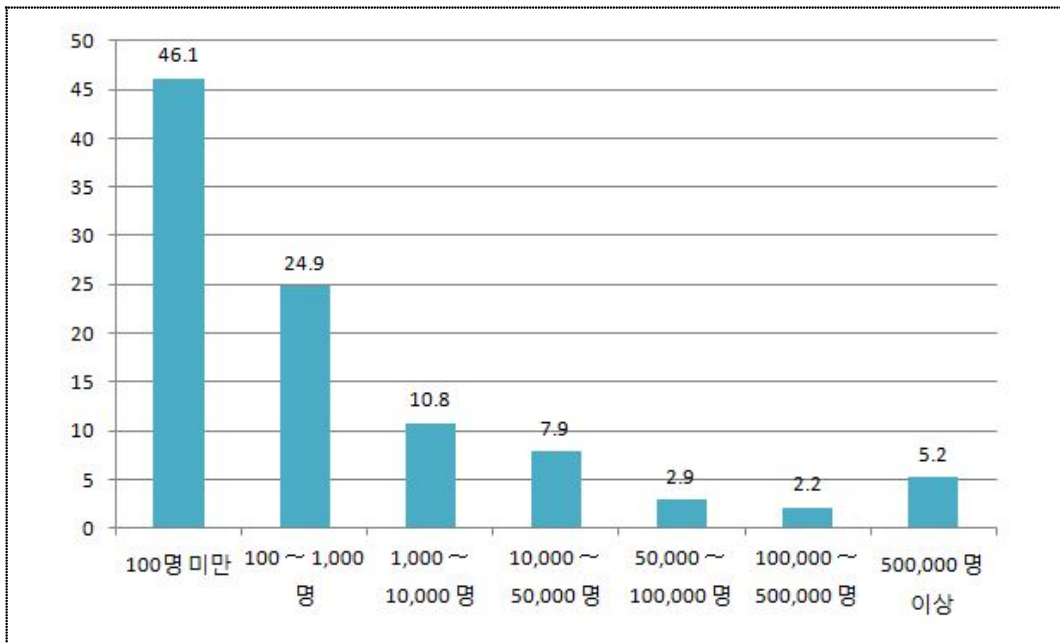
[그림 3-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여부를 인지 못한 이유



■ 보유 및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

- 회사내에서 보유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를 살펴보면 ‘100명 미만’이 46.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가지고 있고, ‘100~1,000명’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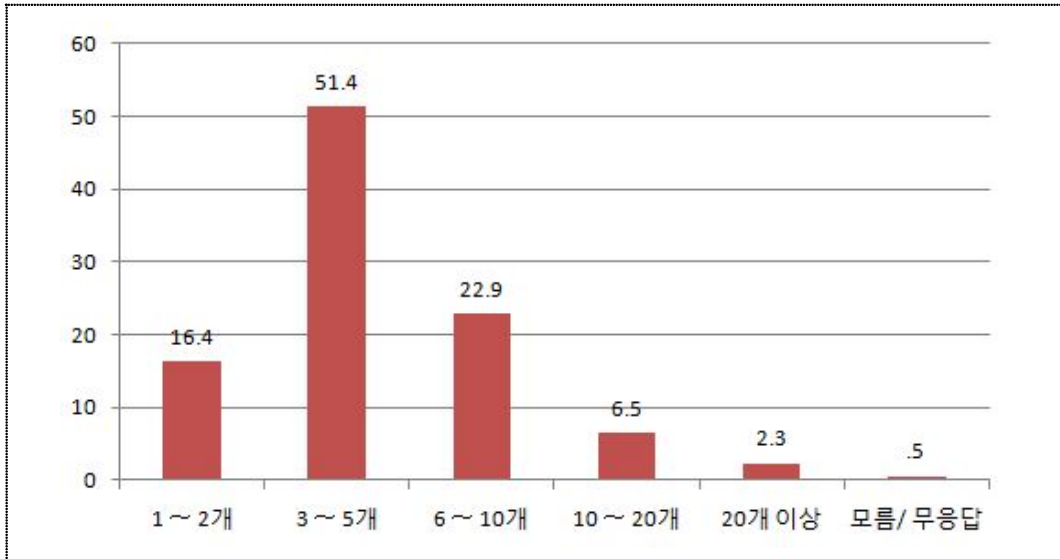
[그림 3-4] 보유 및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



■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규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계좌, 전화번호, 직장, 소득,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의 항목 중 취급하고 있는 항목 중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의 개수는 3~5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3-5)

[그림 3-5]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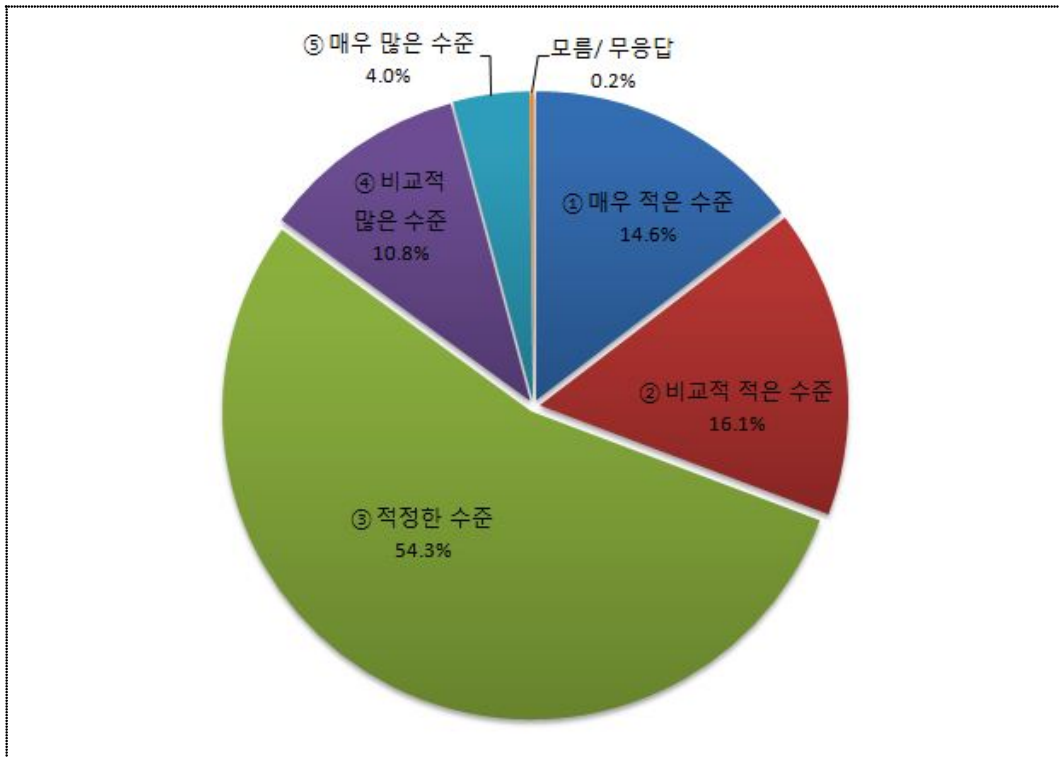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업체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양)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양)에 대하여 54.3%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모를 소지하고 있다고 인식함 (그림 6)
 - 조사한 개인정보처리 업체의 84.3%(그림 3-5기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3~10개에 해당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절반이상이 처리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하는 업체가 절반이 넘는 것은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비교적 적지 않게 수집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 더 자세히는 유통·물류·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35%의 응답이 '매우 적은 수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 금융·보험과 공공기관의 경우 각각 35%와 43%로 '많은 수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긍정함

- 의료·보건 분야와 정보통신분야는 각각 76.7%, 72.5%로 ‘보통 수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나타남

[그림 3-6] 처리하는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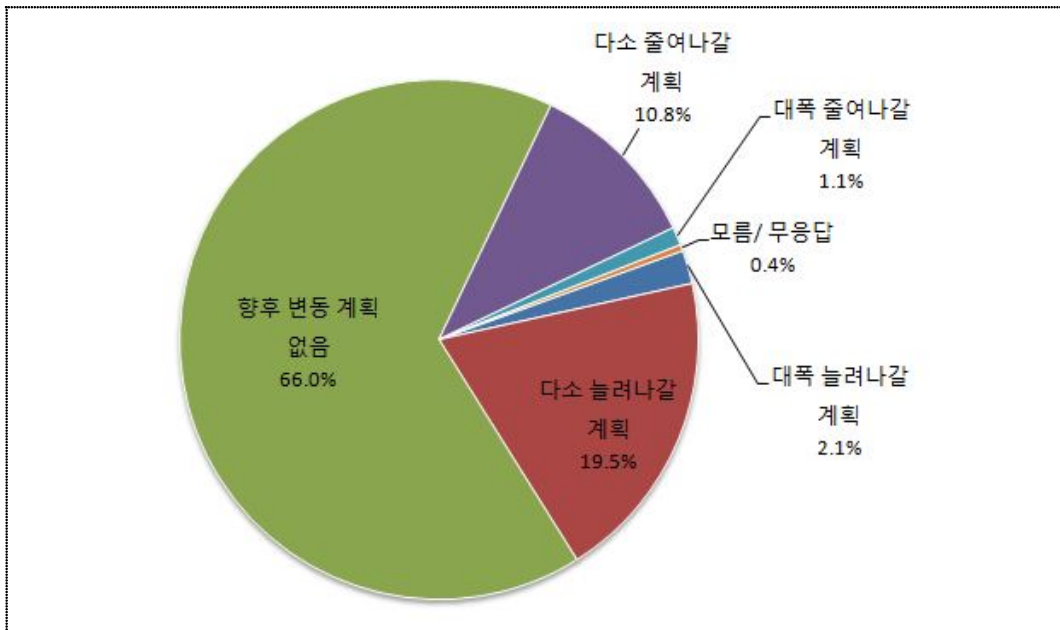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규모에 대한 향후 정책 변동 여부

-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대한 향후 정책에 관한 응답에서는 66%로 ‘향후 변동 계획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늘어나갈 계획’이 19.5%, ‘다소 줄어나갈 계획’이 10.8%로 각각 나타남(그림 3-7)
 - 특히 비영리기관에서 78%의 응답자들이 ‘향후 변동 계획 없음’으로 응답함
 - 5명 미만의 업체에서도 78%의 응답자들이 ‘향후 변동 계획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3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업체에서는 19%의 응답자들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대해 ‘대폭 늘어나갈 계획’으로 응답함

- 그림3-6에서 살핀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조직의 개인정보처리 규모가 비교적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개인정보처리규모와 관련한 정책의 변동이 필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7] 개인정보처리 향후 정책 변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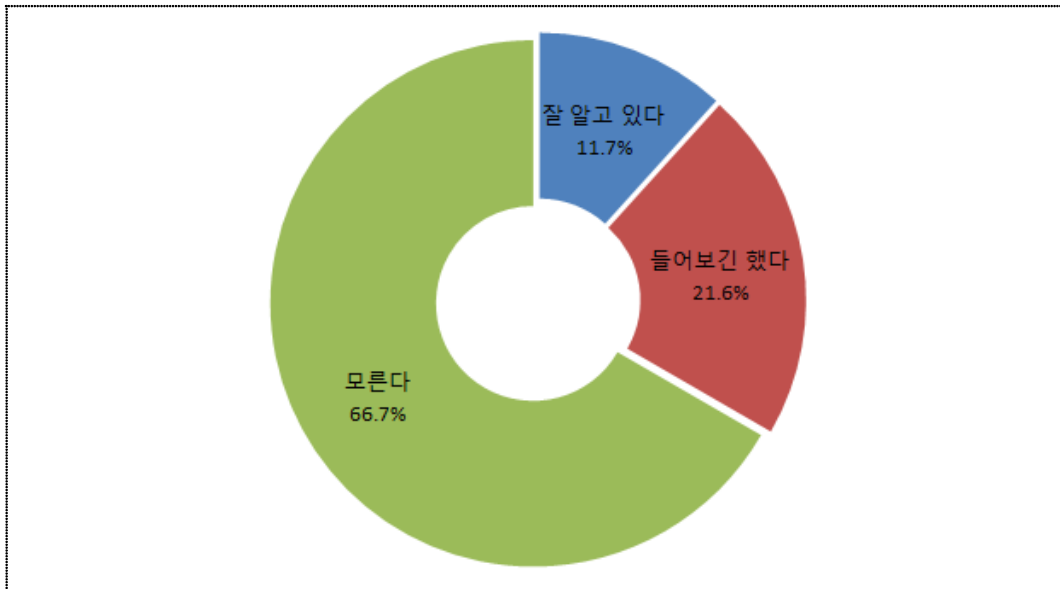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들어보긴 했다’는 21.6%, ‘잘 알고 있다’는 11.7%로 각각 나타났으며, ‘모른다’가 66.7%의 응답률로 나타남(그림 3-8)
-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은 각계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인지도가 낮고 있지 못함

- 이러한 기관의 역할과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대국민홍보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인지 여부



■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변화에 대한 체감

- 근무하는 기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는지의 질문에서 대부분 '변화가 없는 것 같다'(46.7%)로 나타났으며, 40.7%는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로 응답함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비교적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0% 이상인 점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법의 수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변화에 대하여 응답자의 46%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의 요청에 의하여 제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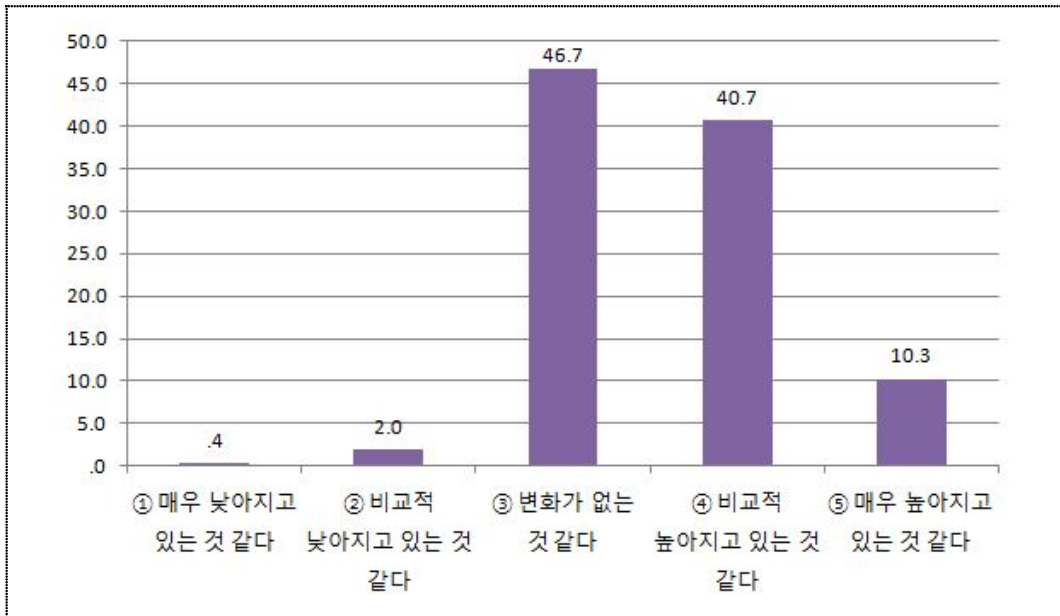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는 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종 관리 조치와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72.4%로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로 응답했으며, 숙박업의 경우 75%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52.5%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미만에서는 74.8%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50~300명 이상에서는 60%의 응답자들이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로 나타남

- 제도 시행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 공공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응답자의 72%가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도시행이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9]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변화에 대한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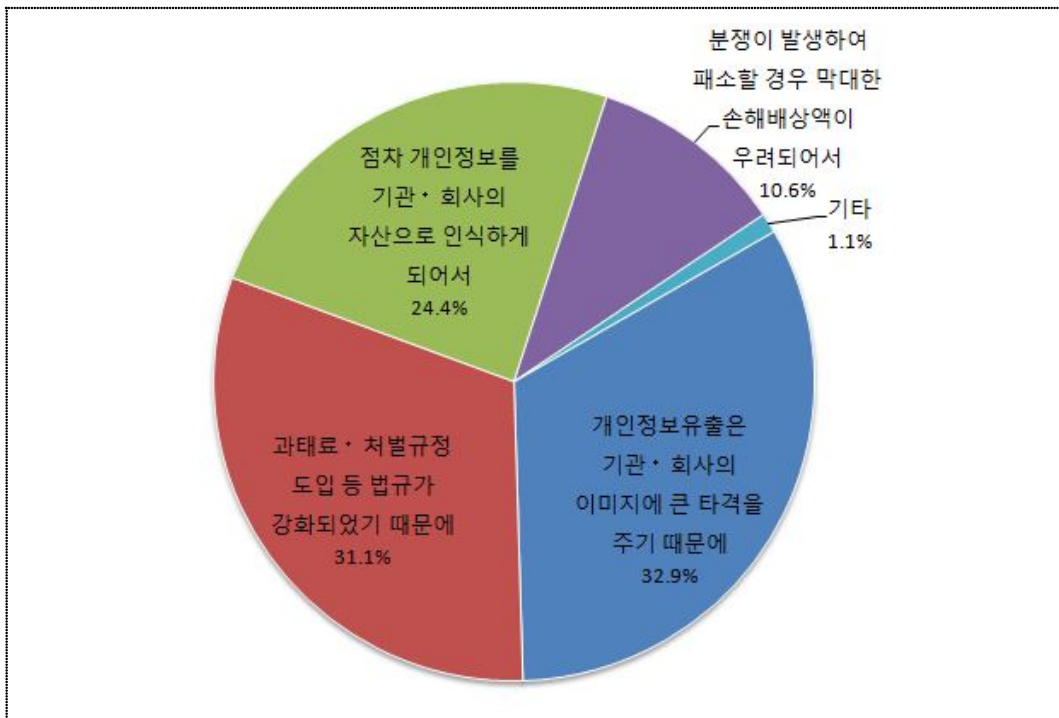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정보유출은 기관·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가 32.9%, ‘과태료·처벌규정 도입 등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 31.1%, ‘점차 개인정보를 기관·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서’가 24.4%, ‘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우려되어서’가 10.6%로 각각 나타남 (그림 3-10)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관 및 회사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반감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그림 3-10]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이유



■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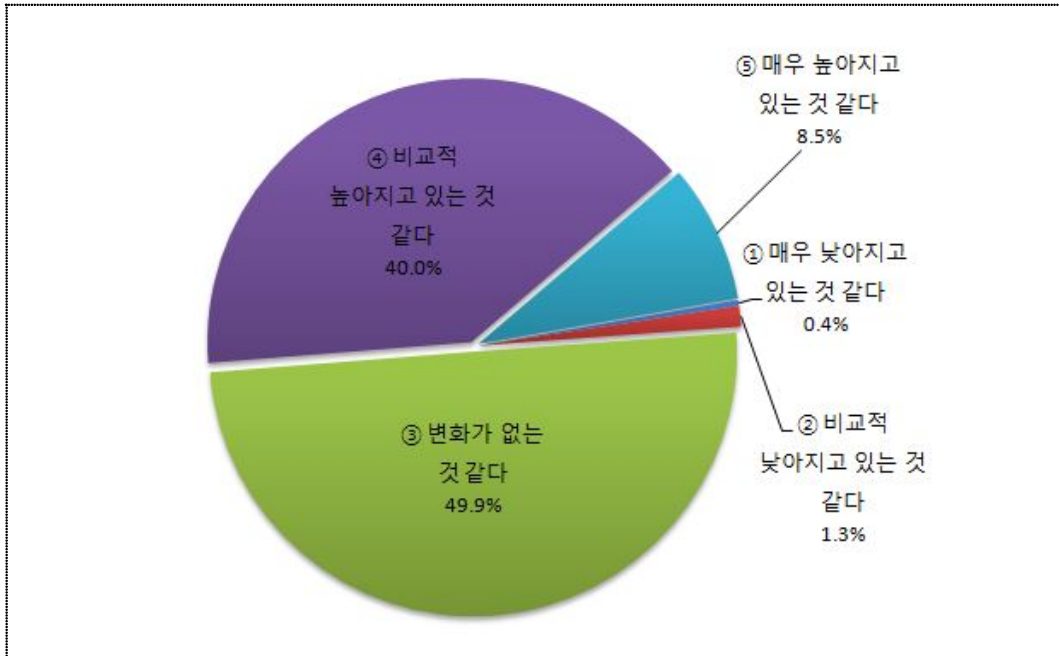
- 개인정보 제공자(정보주체)가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49.9%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로 응답했으며,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40%의 응답률로 나타남 (그림 3-1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자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고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인식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 개인정보제공자가 적극적으로 권한행사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기한 대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기관형태로 보면 특히 개인사업체의 경우 72.6%가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의 응답률이 73.2%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자영업, 숙박업의 경우 각각 71.4%, 86.1%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74.8%로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로 응답함

- 매출 규모로 보면 1억 미만의 경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80.8%로 나타났으며,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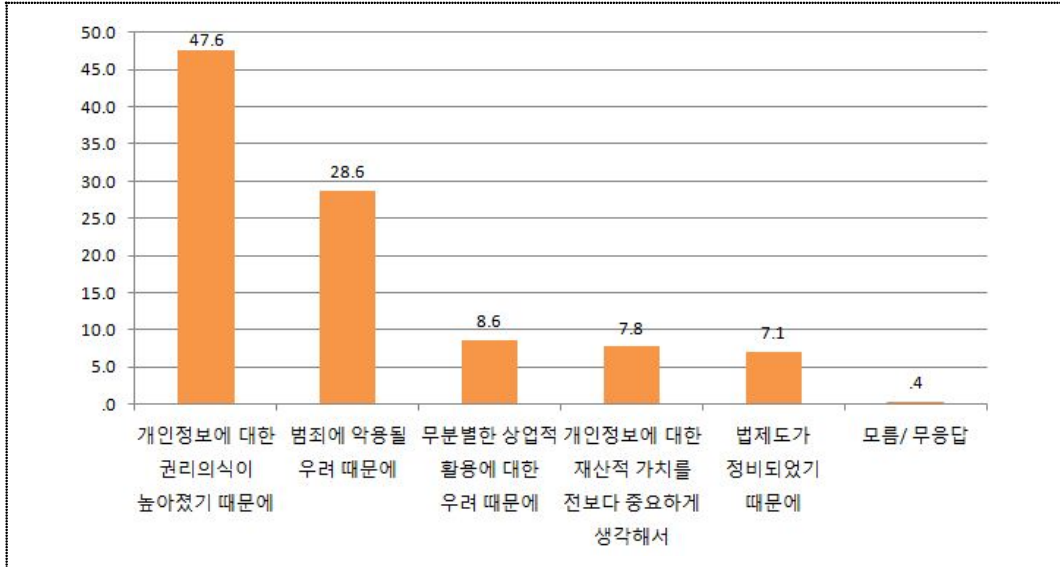
[그림 3-11]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변화에 대한 체감여부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이유

- 개인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47.6%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가 28.6%,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가 8.6%,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7.8%, ‘법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가 7.1%로 각각 나타남 (그림 3-12)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이유가 법제도 정비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에 대하여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12]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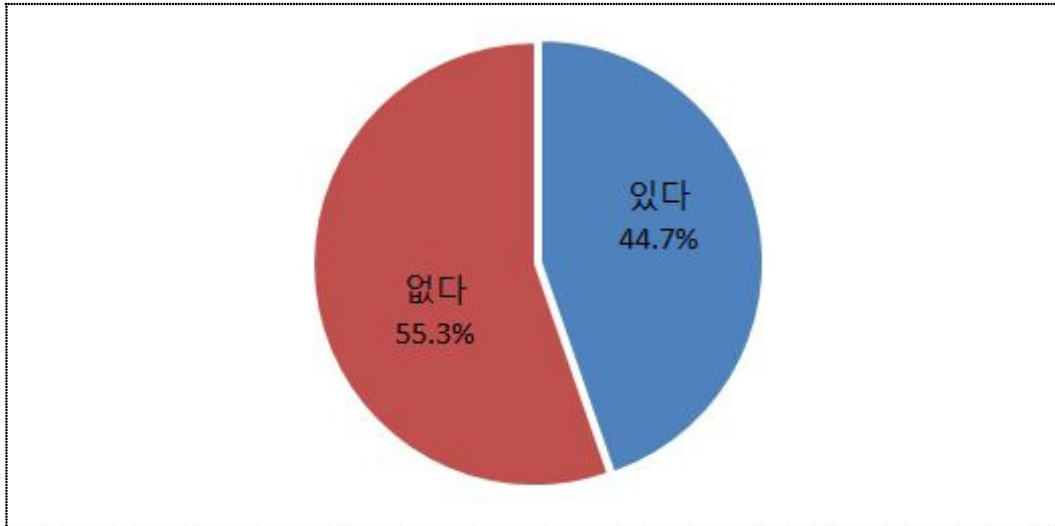
2.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업무의 변화 여부

- 근무하는 기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없다’가 55.3%, ‘있다’가 44.7%로 각각 나타남(그림 3-13)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기관 또는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업무의 변화가 없다고 55.3%가 응답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절반은 아직 정책 및 제도 실시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운영은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관형태로 나누어 보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없다’가 82.9%, 회사 등 법인의 경우는 없다고 48.5%,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는 9.4%로 나타났으며,
 - 이는 기관형태별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해 업무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각각 89.8%, 83.9%로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업무가 크게 변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

는 ‘변화가 없다’가 더 많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3-13]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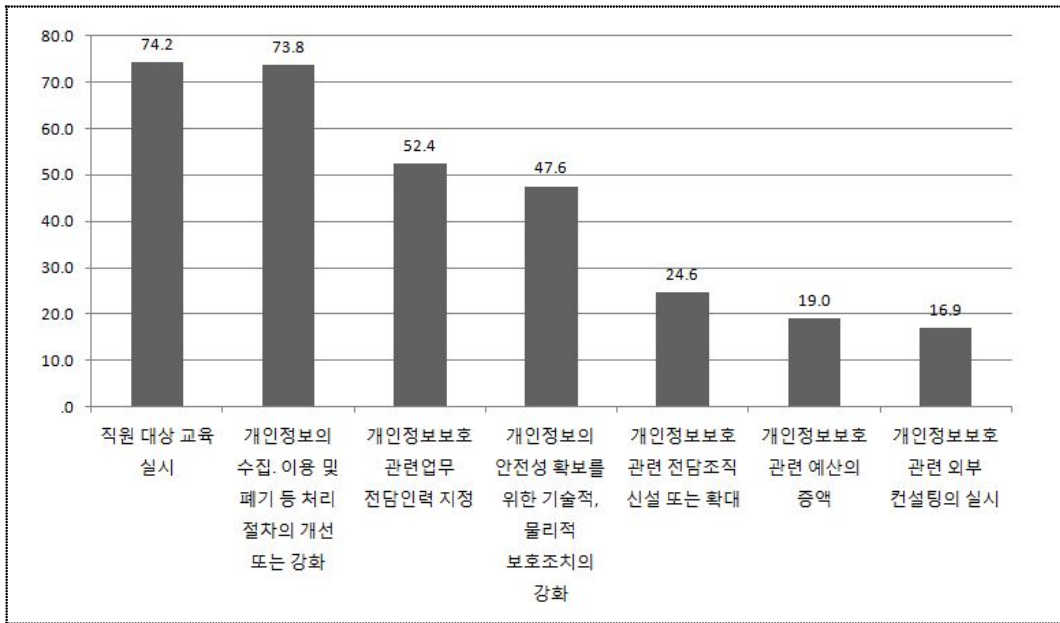


■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보완 사항

- 근무하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선/보완한 사례를 집계해보면 ‘직원 대상 교육 실시’가 7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폐기 등 처리절차의 개선 또는 강화’가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전담인력 지정’(52.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의 강화’(47.6%),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담조직 신설 또는 확대’(24.6%),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의 증액’(19%), ‘개인정보보호 관련 외부 컨설팅의 실시’(16.9%)로 각각 나타남 (그림 3-14)
- 기관형태로 나누어 보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73.8%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폐기 등 처리 절차의 개선 또는 강화’를 선택했으며, 회사 등 법인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원들 대상 교육 실시’를 각각 70%와 87.8%로 응답함
-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5명 미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폐기 등 처리

절차의 개선 또는 강화'를 76%로 나타났으며,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 대상 교육 실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보완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시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항목·이용기간·거부권에 대한 고지필요와 동의확보 필요여부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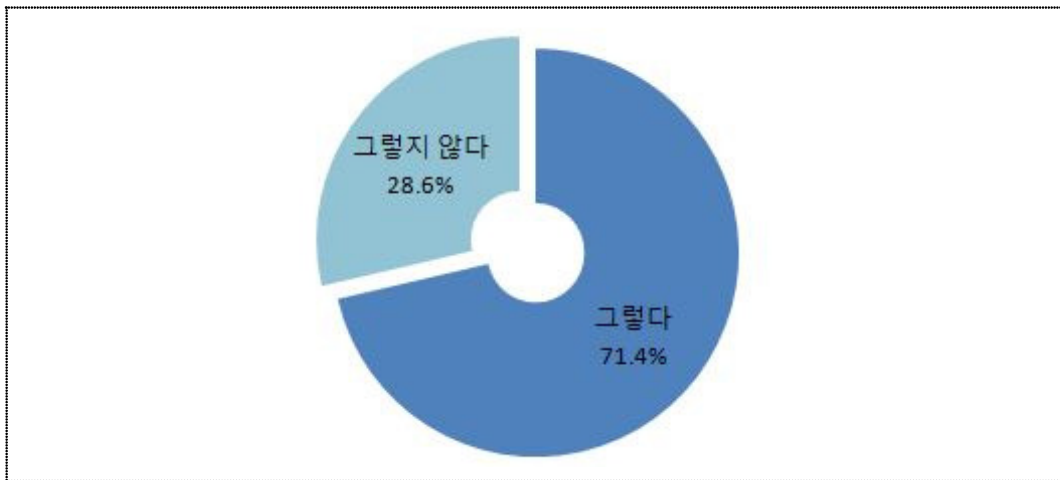
○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시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가에 대한 응답에는 71%가 '그렇다'로 응답함 (그림 3-15)

-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고지의무를 준수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관형태로 나누어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95%가 동의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사업체와 회사 등 법인의 경우 각각 51.7%, 79%가 동의를 받고 있다고 나타남

-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의료·보건분야가 56.7%, 숙박업이 55.6%, 자영업이 45%로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데 낮은 응답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시 수집 목적·항목·이용기간·거부권에 대한 고지필요와 동의확보 필요여부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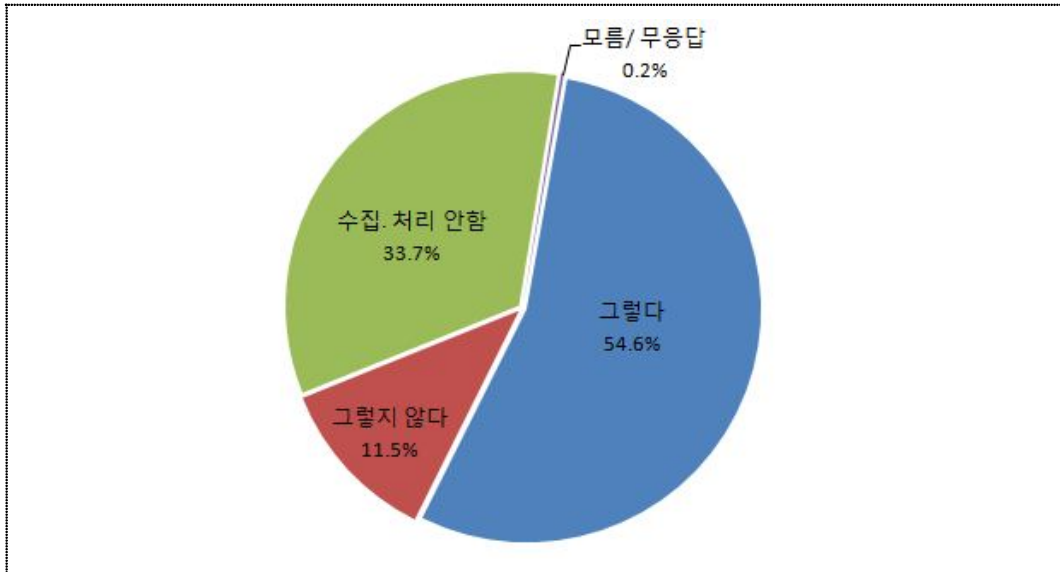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시 별도 동의 확보 여부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일반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외에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54.6%, ‘수집·처리 안함’이 33.7%, ‘그렇지 않다’로 11.5% 각각 나타남 (그림 3-16)
 - ‘수집·처리 안함’이 33.7%이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1.5%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별 동의 의무 이행 여부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업종별로 보면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보험 분야가 각각 84.3%, 86.5%로 고유식별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관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법률상 의무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규모별로 보면 5명 미만의 회사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 하지 않는다’가 58.8%로 나타났으며,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는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시 별도 동의 확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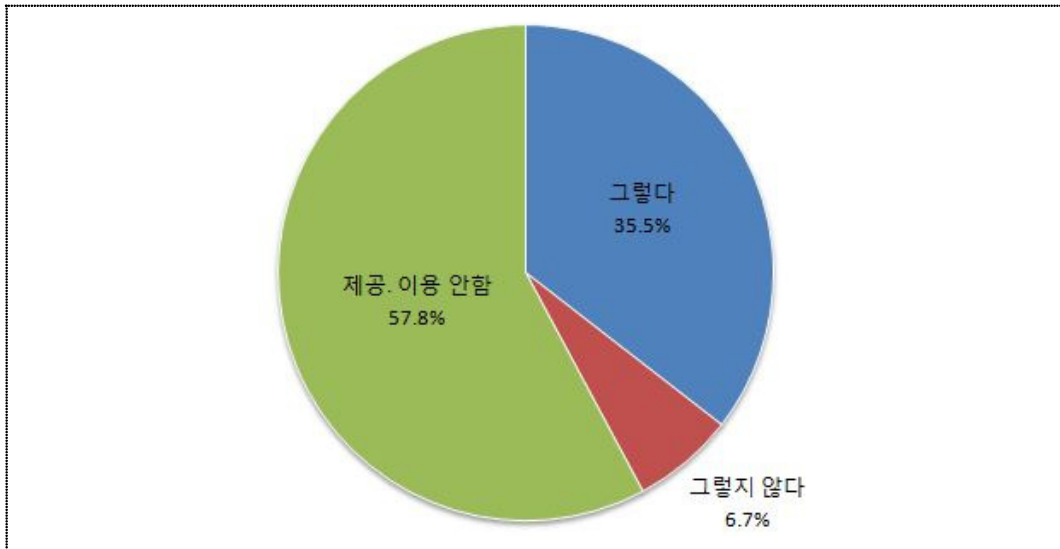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시 별도 동의 확보 여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목적 외 용도로 이용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57.8%의 응답자들이 ‘제공·이용 안함’을 선택했으며, 35.5%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이외에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따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따로 동의를 받는 업체가 35%에 그치는 점은 개인정보 활용 절차에 관한 규율내용이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기관형태로 나누어 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70.9%가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 분야와 공공기관에서 각각 81%와 70%의 응답자들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미만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정보 절차의 규율에 대한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1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시 별도 동의 확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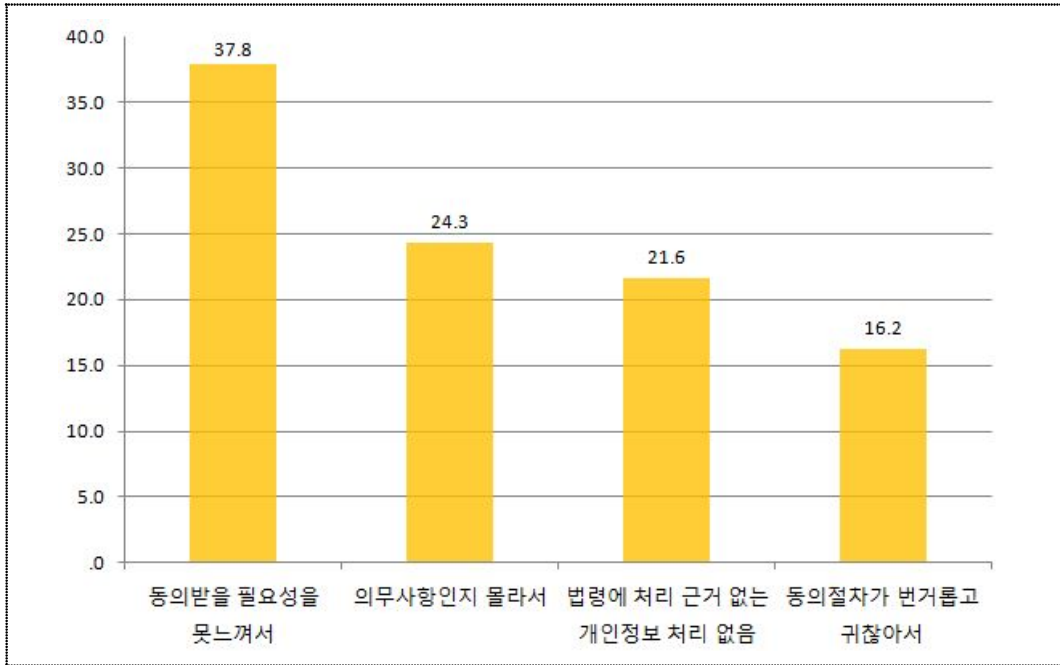


■ 개인정보 처리시 동의 미확보 사유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동의 받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3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의무사항인지 몰라서’가 24%, ‘법령에 처리 근거 없는 개인정보 처리 없음’이 21.6%, ‘동의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가 16%로 각각 나타남 (그림 3-18)
 - 개인정보 처리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37.8%, 응답자의 16%가 번거롭고 귀찮음을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시에 동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의무사항인지 몰랐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대한 숙지가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3-18]개인정보 처리시 동의 미확보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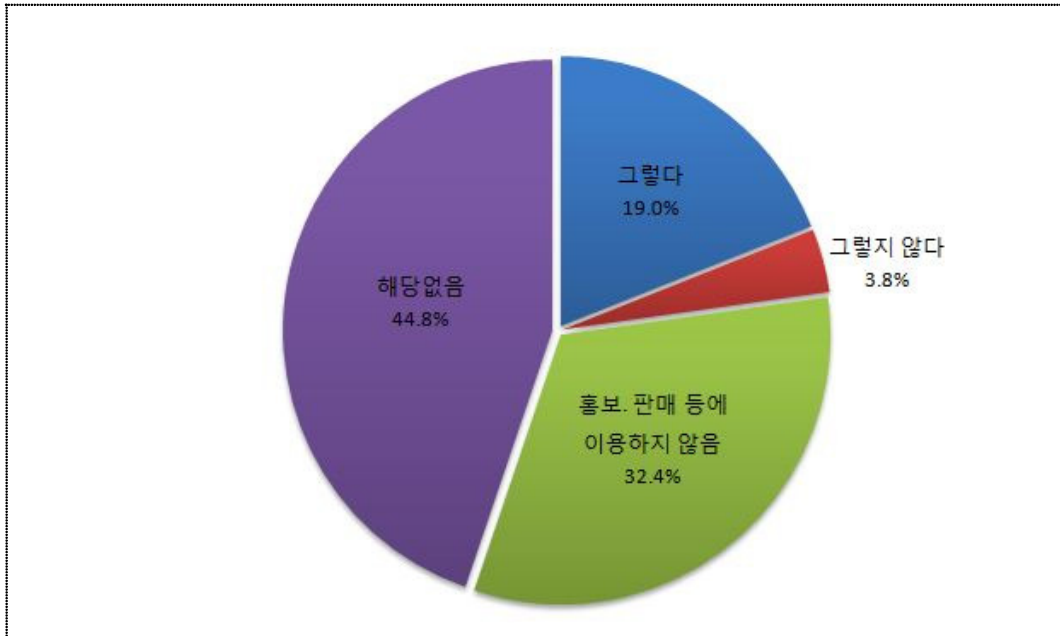


■ 서비스 등의 홍보나 판매권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확보에 있어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지를 위하여 고지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19%의 응답자들은 정보주체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고 있다고 나타남 (그림 3-19)

- 44.8%가 '해당 없음'으로, 32.4%가 홍보·판매 등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의 동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부분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확보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지 위한 고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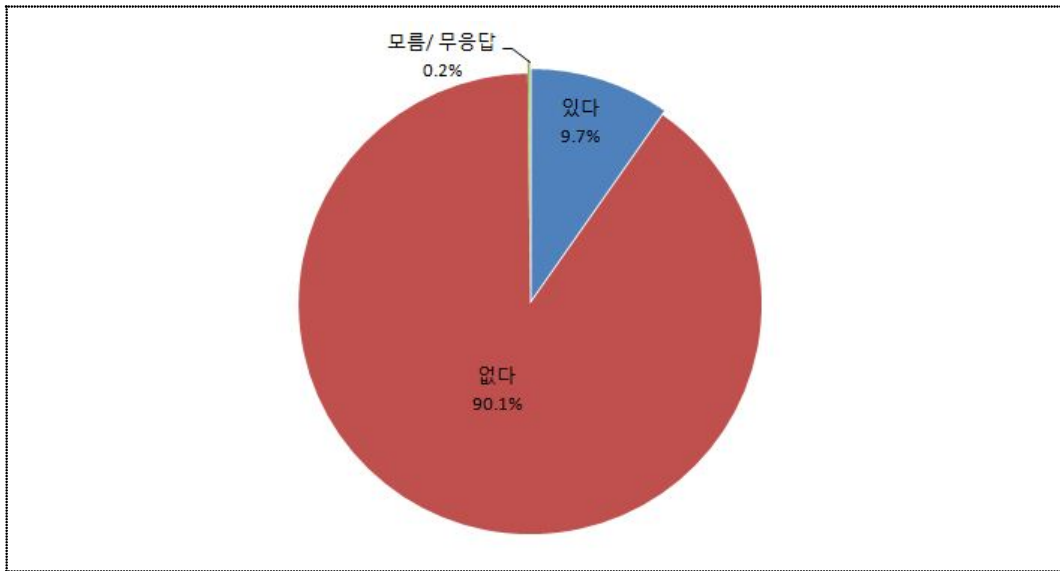


■ 근무처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업무 제3자 제공여부

- 기관 및 회사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90.1%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9.7%가 '있다'고 응답함 (그림 3-20)
- 기관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96.6%가 위탁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고, 회사 등 법인은 85.2%,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83.5%로 각각 나타남
- 규모별로 보면 5명 미만의 경우 98.2%, 5~49명의 규모에서는 90%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고, 회사 인원 규모가 커질수록 50~299명은 80.3%, 300명 이상의 규모에서는 66.7%로 각각 나타남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체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3자에게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정보제공자의 동의여부, 기술적 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여야 할 것임

[그림 3-20] 근무처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업무 제3자 제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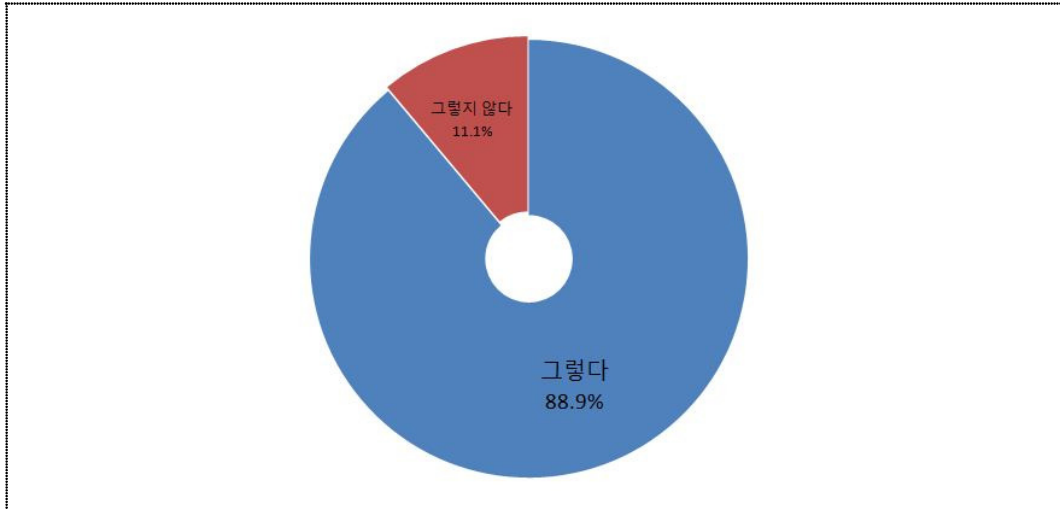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위탁처리시 위탁업무의 목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88.9%가 기관·회사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함(그림 3-21)

- 88.9%에 달하는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업무위탁시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21] 개인정보 위탁처리시 위탁업무의 목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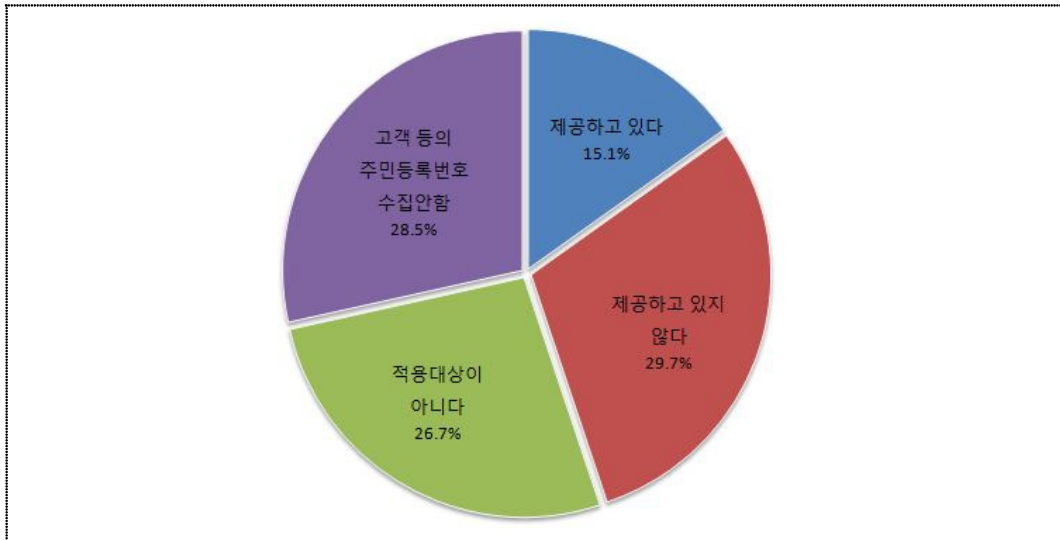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회사에서 고객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9.7%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 28.5%가 ‘고객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함’, 26.7%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15.1%가 ‘제공하고 있다’고 각각 나타남 (그림 3-22)

-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함
- 응답자의 29.7%가 이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상당수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고유식별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지원과 홍보를 통하여 속히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보험 분야에서 54.1%가 ‘제공하고 있다’로 응답하였고, 정보통신, 의료·보건, 유통·물류·도소매 분야에서는 42.5%, 46.7%, 48%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로 각각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회사 인원의 규모가 클수록 대체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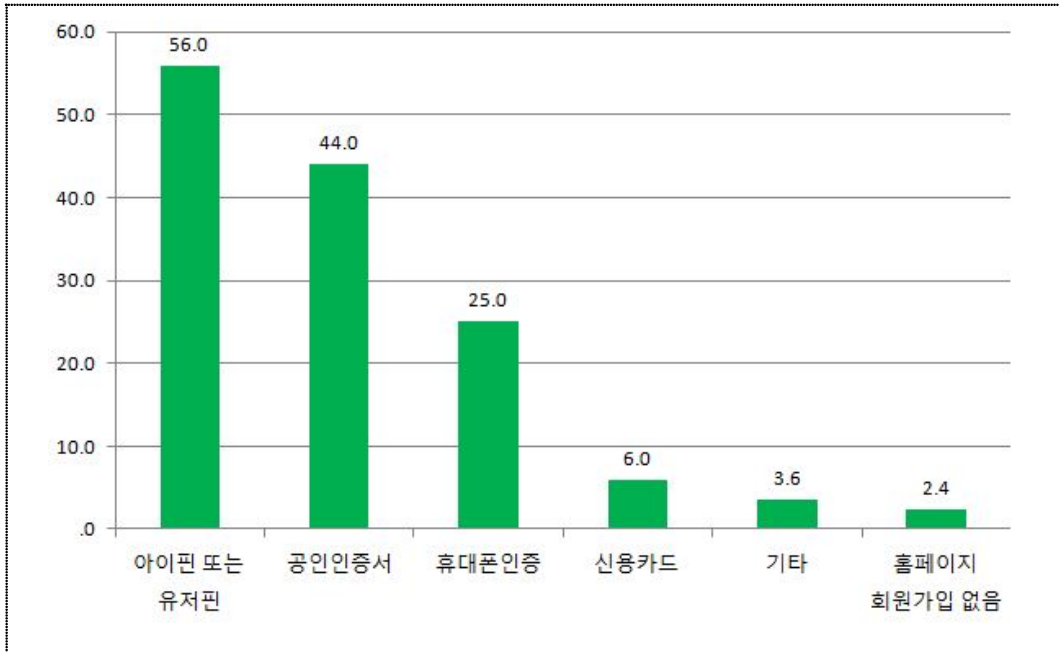
[그림 3-22] 개인정보제공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시에 제공하는 대체가입수단

-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대체 본인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아이핀 또는 유저핀’이 56%로 전체 응답의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률이 나타났고, 이어 공인인증서(44%), 휴대폰인증(25%), 신용카드(6%), 기타(3.6%)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4%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는 92.1%로 아이핀 또는 유저핀을 가장 많이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70%)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공인인증서에서 아이핀 또는 유저핀으로 대체 가입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3-23] 인터넷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시에 제공하는 대체가입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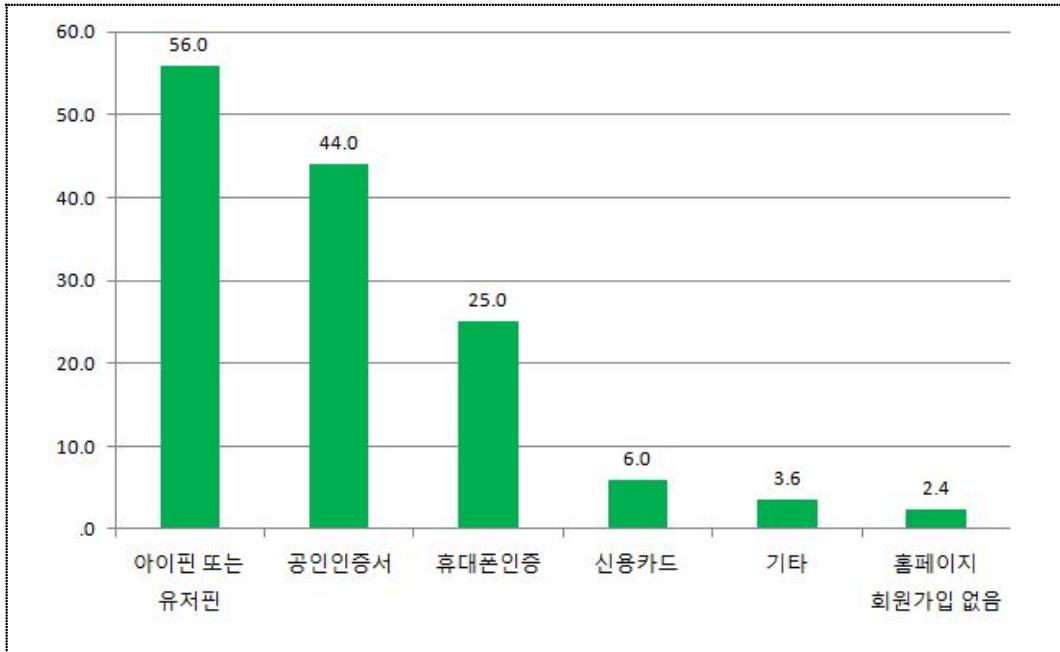


■ 대체수단 제공시 수반되는 부담사항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중 대체가입수단을 마련하는데 따른 부담사항으로 ‘조직·인력·예산 등 비용소요에 대한부담’을 꼽았고(34.5%), 33.3%가 ‘고객관리에 어려움’을 꼽았으며, 과태료 또는 처벌에 대한 부담(17.9%), 기타(13.1%)로 각각 나타남 (그림 3-24)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중 대체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큰 부담으로 비용소요에 대한 부담을 제시하고 있음
- 대체수단 운영에 있어 비용문제나 운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은 개인정보보호 기관에서 대체수단 개발 및 보급 등의 정책을 시행,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의 이행 상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4] 대체수단 제공시 수반되는 부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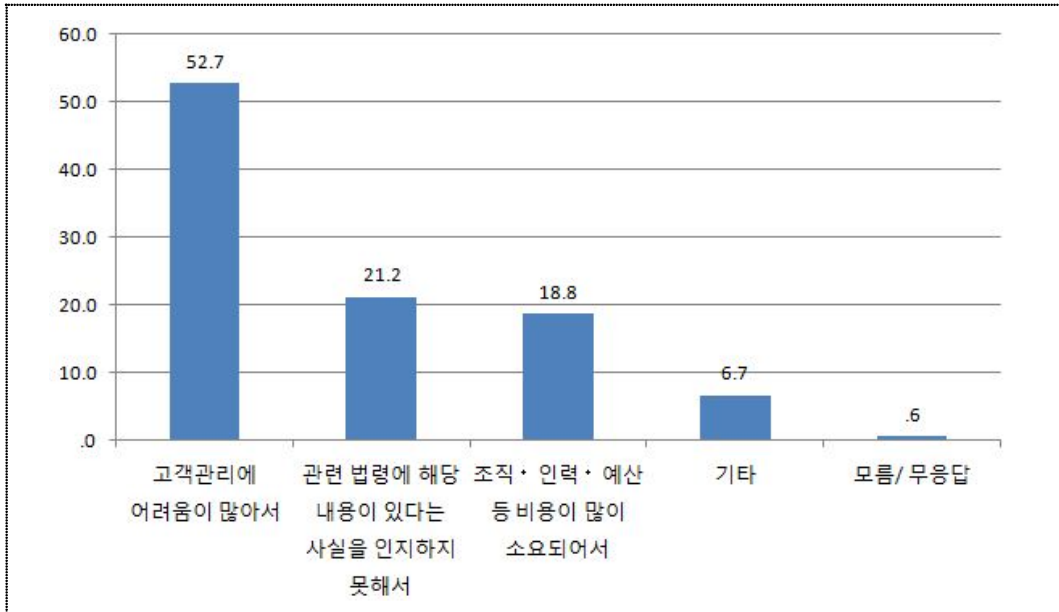
■ 근무처의 대체수단 미제공 사유

○ 개인정보처리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단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2.7%가 ‘고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가 21%, ‘조직·인력·예산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18.8%), 기타(6.7%)로 각각 나타남 (그림 3-25)

- 응답자의 절반이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고객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의 분야에서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66.7%가, 유통·물류·도소매의 경우 70%가, 자영업의 경우 73.7%가, 관광업의 경우 80%가 고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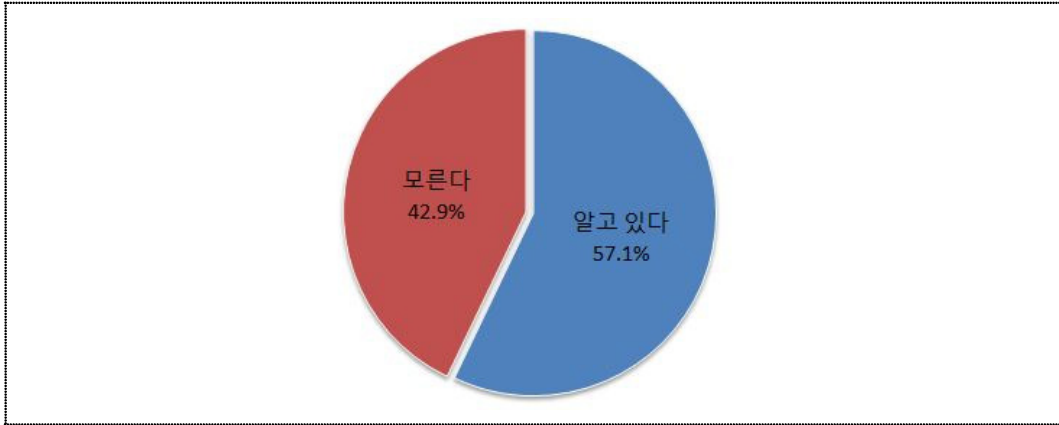
[그림 3-25]근무처의 대체수단 미제공 사유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무에 대한 인지여부

- 개인정보처리업체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무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5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3%가 ‘모른다’로 나타남 (그림 3-26)
 - 개인정보의 내용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응답자의 43%가 이러한 조치의무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개인정보처리업체가 조치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 내용의 홍보와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공공기관은 92.1%,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교육, 자영업, 숙박업의 분야에서는 ‘알고 있다’보다 ‘모른다’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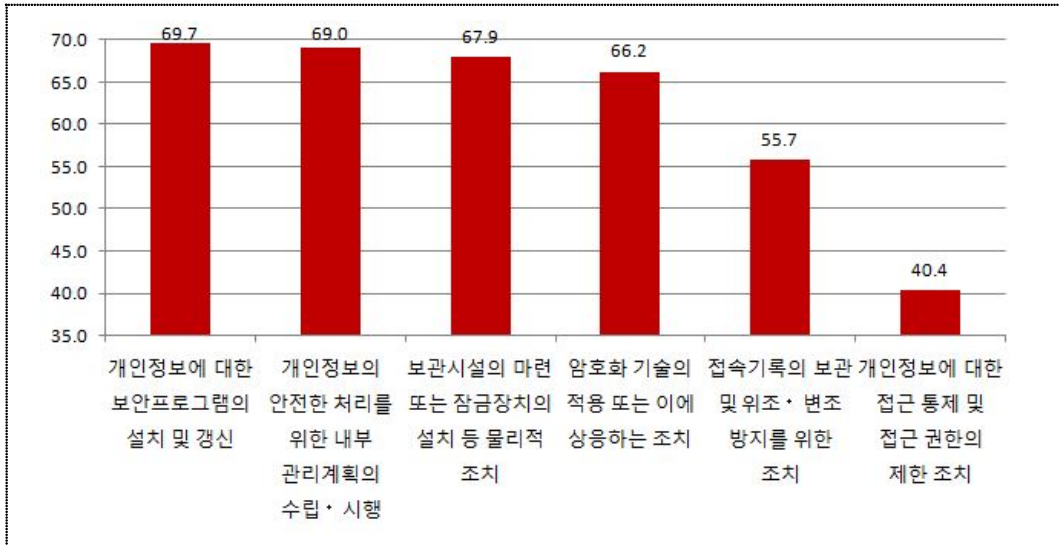
[그림 3-26]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무에 대한 인지여부



■ 근무처의 구체적 조치의무 이행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하고 있는 의무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이 69.7%,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69%,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물리적 조치’가 66.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가 55.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업체가 40.4%로 각각 나타남 (그림 3-27)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모두 비슷하게 비율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이 8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79.5%,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가 76.8%,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75.9%,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72.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가 58%로 나타나 다른 기관에 비해 엄중하게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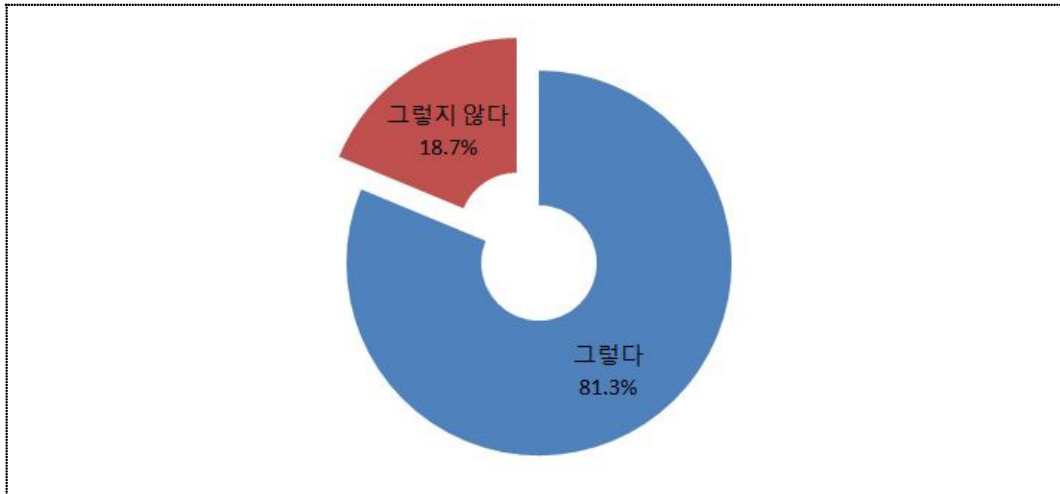
[그림 3-27] 근무처의 구체적 조치의무 이행사항



■ 개인정보 파기요건 충족 시 파기여부

-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파기요건이 갖 추어졌을 때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81.3%가 ‘파 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8.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그림 3-28)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시 비교적 많은 상당수의 개인정보처 리업체가 이를 이행함으로써 파기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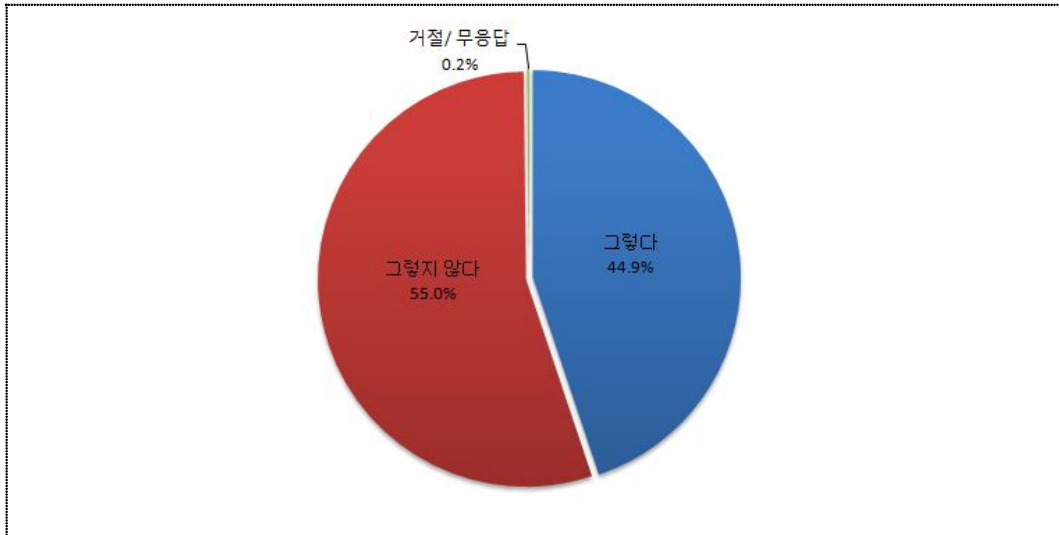
[그림 3-28] 개인정보 파기요건 충족시 파기여부



■ 정보주체 권리보장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공개 여부

-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5%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로, 4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림 3-29)
 -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자의 구체적 처리방법과 절차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하지 않은 처리자가 더 많으므로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기관형태 분야로 나누어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81.9%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사 등 법인은 51.5%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21.8%만이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나타남
- 규모별로 나누어보면 5명 미만의 회사에서는 18.6%만이, 5~49명의 회사에서는 54.3%, 50~299명의 회사에서는 71.8%가, 그리고 300명 이상의 규모에서는 87.5%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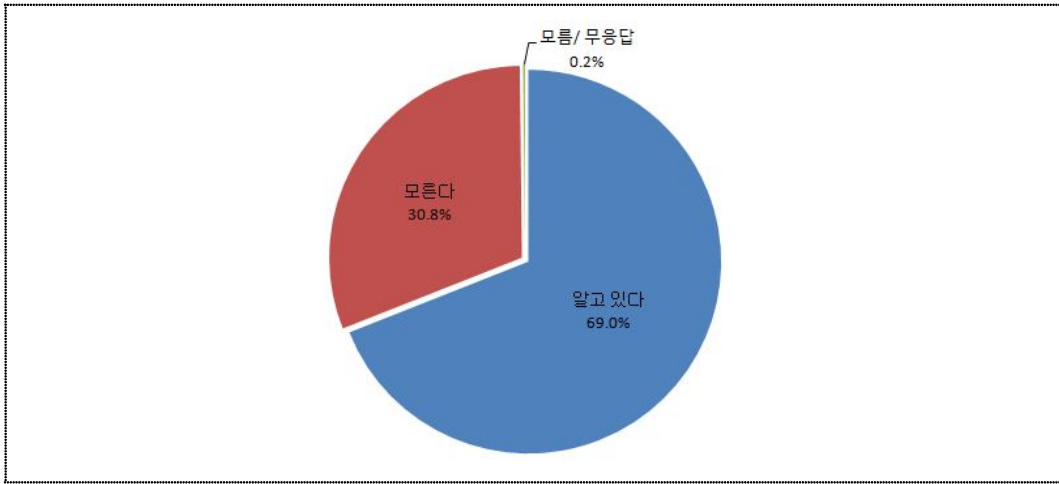
[그림 3-29] 정보주체 권리보장 위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공개 여부



■ 개인정보유출 인지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인지 여부

- 기관 및 회사에서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69%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고, 30.8%가 ‘모른다’라고 응답함 (그림 3-30)
 - 개인정보 유출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은 법적 의무이행 사항으로 30.8%가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의무내용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 기관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51.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회사 등 법인은 76.3%,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94.5%의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미만의 경우 45.1%, 5~49명의 규모는 84.3%, 50~299명의 규모에서는 88.7%, 300명 이상에서의 규모에서는 85.4%로 나타남

[그림 3-30] 개인정보유출 인지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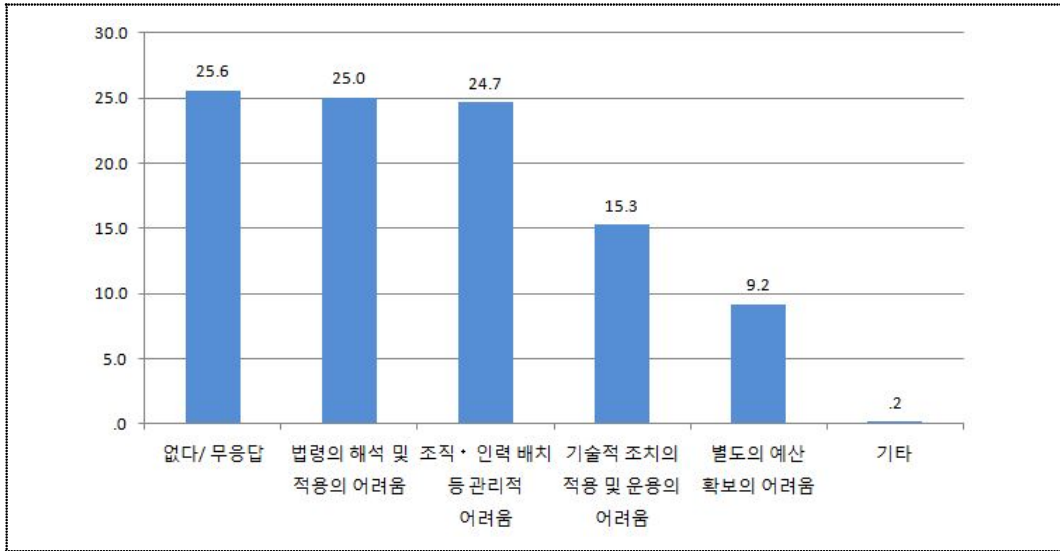


■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담사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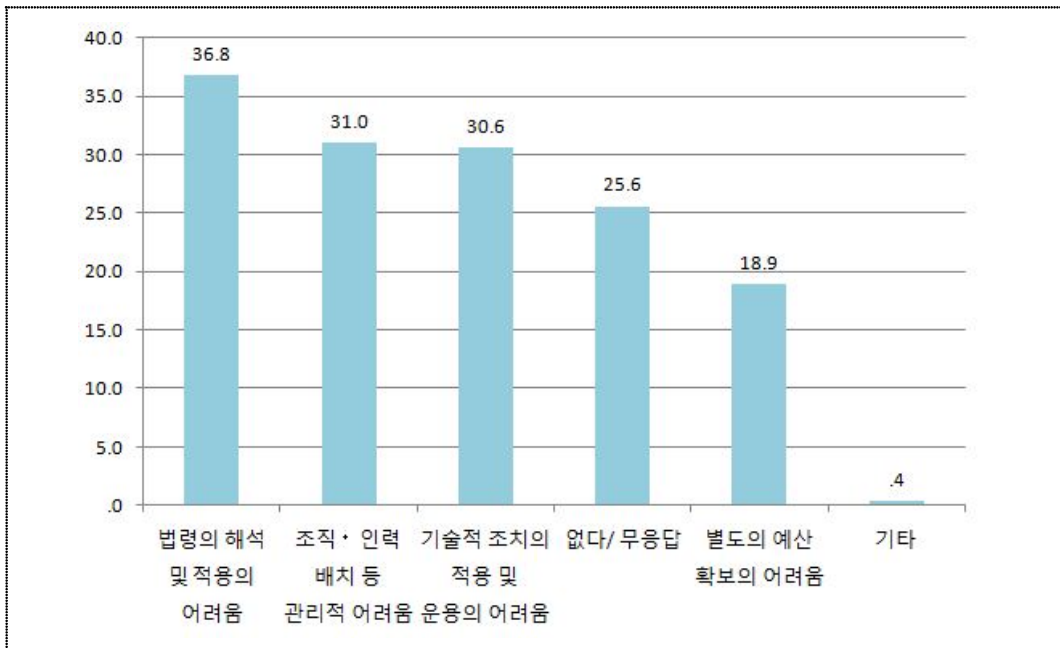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 중 1순위는 25.6%가 ‘없다/무응답’으로 나타났고,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이 25%,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이 24.7%,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의 어려움’이 15.3%, ‘별도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9.2%로 각각 나타남 (그림 3-31)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의 경우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이 각각 40.9%, 4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이 모두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무하는 기관 및 회사가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 중 1,2 순위를 같이 종합해 보면 그림 3-32와 같이 나타남
 - 순위별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이 3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이어서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31%),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의 어려움’(30.6%), ‘없다/무응답’(25.6%), ‘별도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18.9%)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의 어려움’이 48.8%로 나타남

- 금융·보험 분야와 공공기관은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이 62.2%, 50.4%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남

[그림 3-31]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담사항 비율(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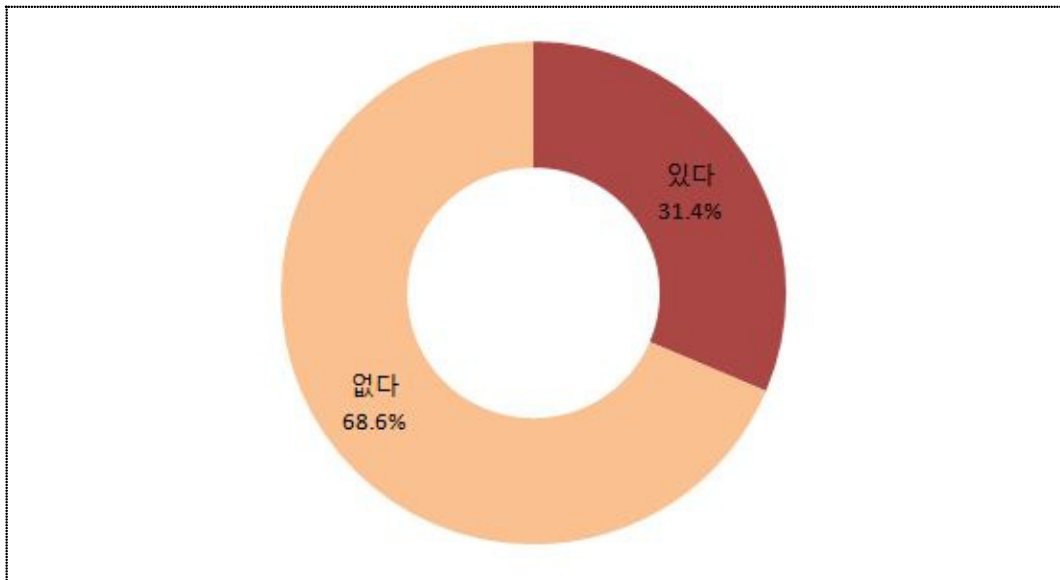
[그림 3-32] 근무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담사항 비율(1+2순위)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위한 교육 수료 경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8.6%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31.4%가 ‘있다’고 응답함 (그림 3-33)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각각 76.4%와 73%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고, 그 외 정보통신, 의료·보건, 유통·물류·도소매, 사교육, 숙박업, 관광업, 비영리 기관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인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미만에서는 93.4%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49명 이상에서는 58.6%가 ‘없다’고 응답함
 - 반대로 50~299명, 300명 이상에서의 규모에서는 각각 53.5%, 70.8%의 응답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을 위한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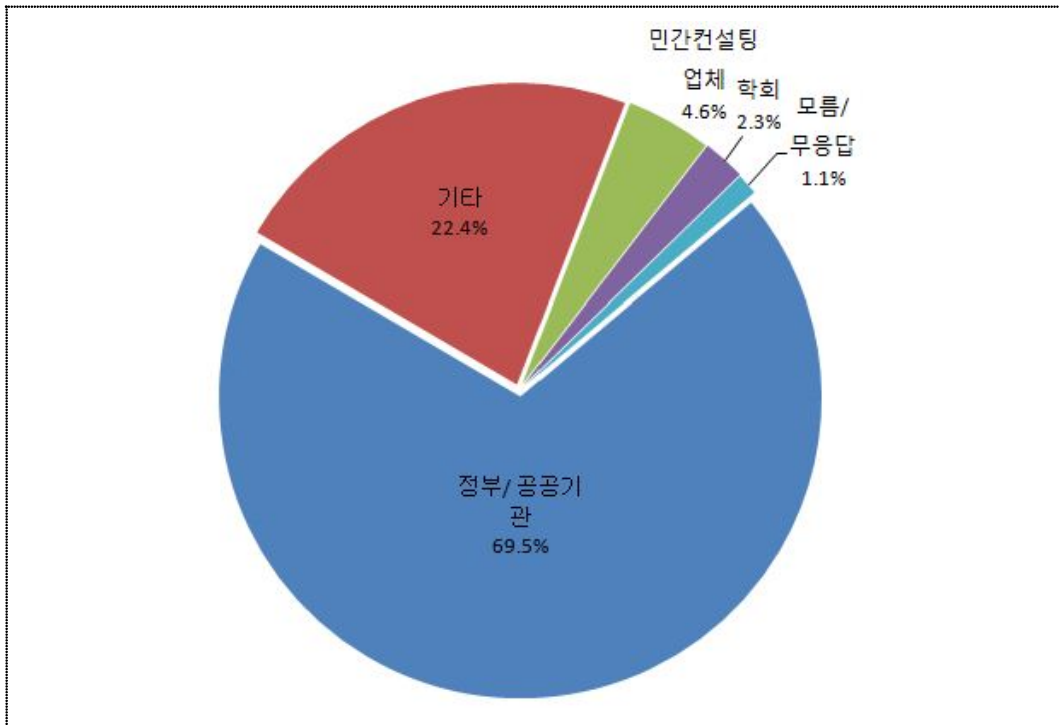
[그림 3-33]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위한 교육 수료 경험 여부



■ 당해 교육의 실시 기관 또는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을 위한 관련교육은 누가 실시한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응답하여 공공의 교육실시 비중이 민간 교육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3-34)

[그림 3-34] 당해 교육의 실시 기관 또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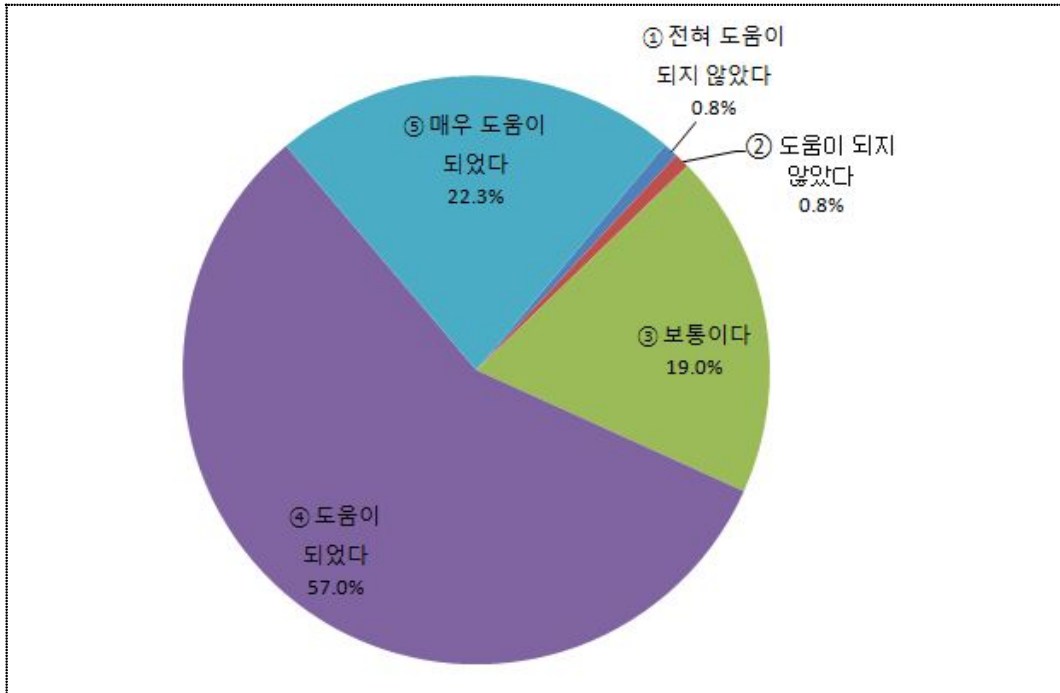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내용의 업무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내용은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5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22.3%의 응답자들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그림 3-35)
 -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치면 총 79.3%의 응답자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만큼 이러한 교육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필요성이 요청됨을 엿볼 수 있음

[그림 3-35] 당해 교육의 실시 기관 또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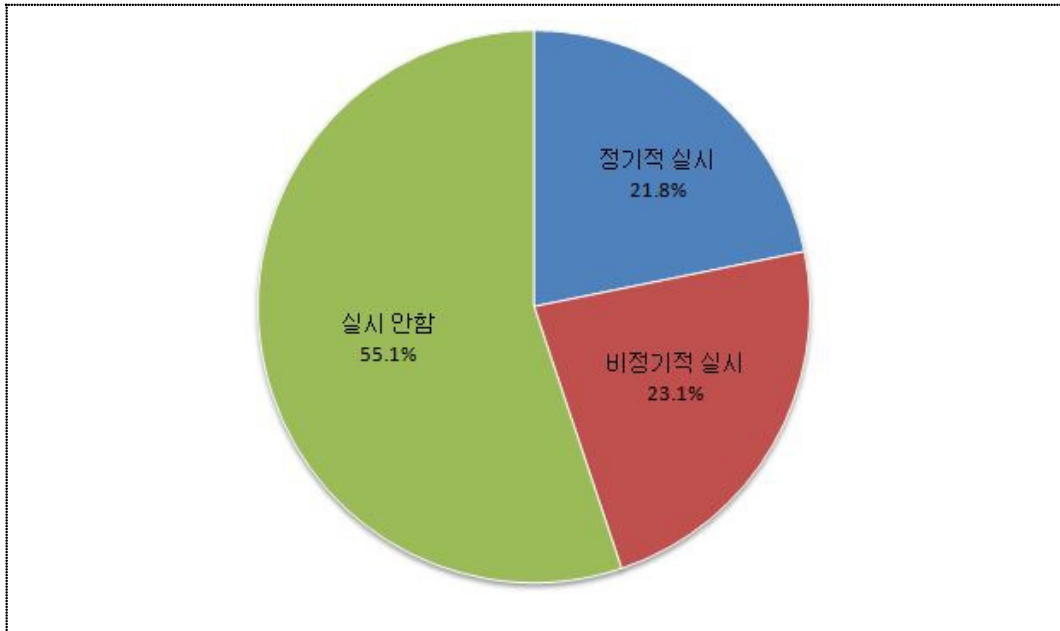


■ 근무처의 내부직원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실시 여부

- 개인정보처리업체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가에 대하여 55.1%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3.1%는 비정기적으로, 21.8%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36)
- 기관형태별로 분석해보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79.5%가 실시하지 않음으로 나타났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 52.7%가 '실시하지 않음', 29.6%가 '비정기적 실시'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5.9%가 '정기적 실시', 34.6%가 '비정기적 실시'로 나타남

-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내부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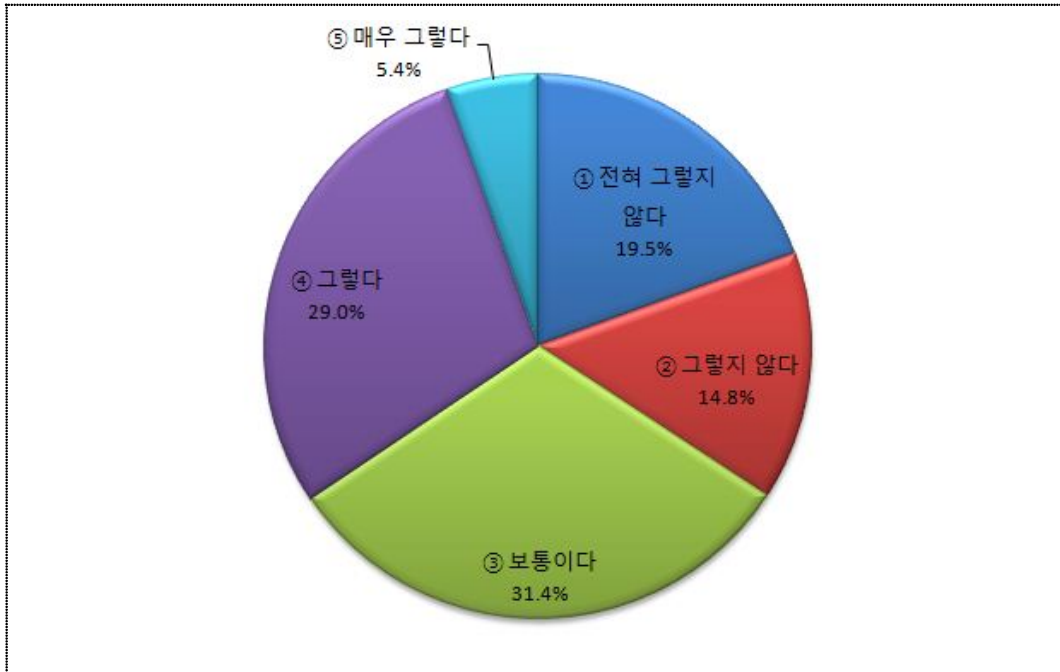
[그림 3-36] 근무처의 내부직원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실시 여부



■ 근무처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복잡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이후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31.4%가 '보통이다', 29%가 '그렇다', 19.5%가 '전혀 그렇지 않다', 14.8%가 '그렇지 않다', 5.4%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함 (그림 3-37)

[그림 3-37] 근무처의 개인정보 처리절차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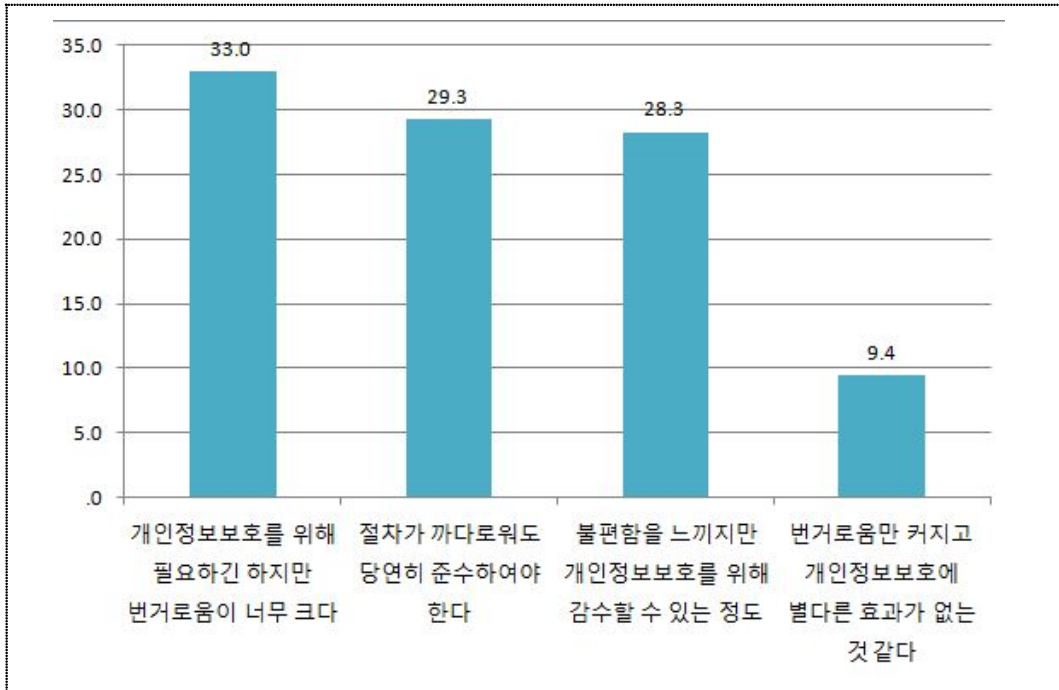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번거로움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33%를, ‘절차가 까다로워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9.3%,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견이 28.3%, ‘번거로움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9.4% 나타남 (그림 3-38)

- 대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졌음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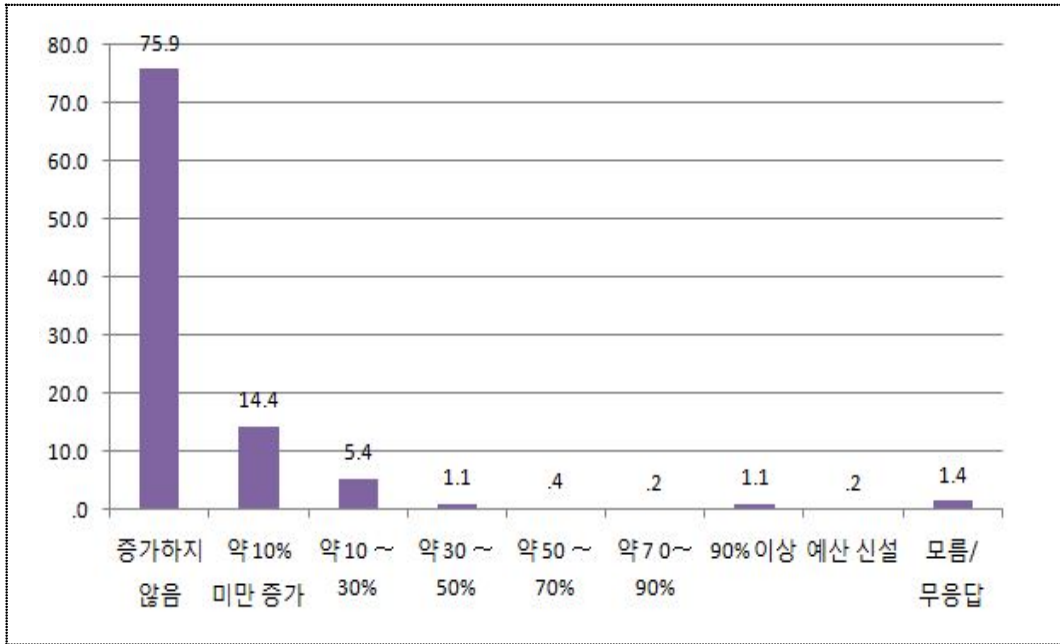
[그림 3-38]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한 인식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변화 추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예산 및 비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보다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75.9%가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약 10% 미만 증가'가 14.4%, '약 10~30% 증가'가 5.4% 나타남 (그림 3-39)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비용개선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질문의 응답자의 대부분이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극적 비용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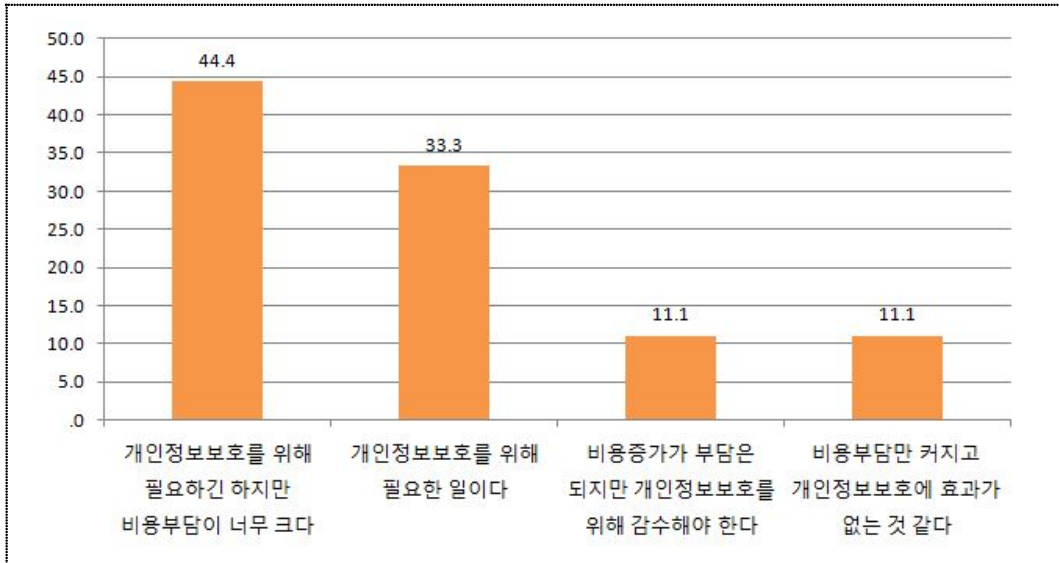
[그림 3-39]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변화 추이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비용증가에 따른 견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 및 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44.4%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응답했고, 33.3%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고 나타났으며, 이어 ‘비용증가가 부담은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와 ‘비용부담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 11.1%로 나타남 (그림 3-40)

[그림 3-40]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및 비용증가에 따른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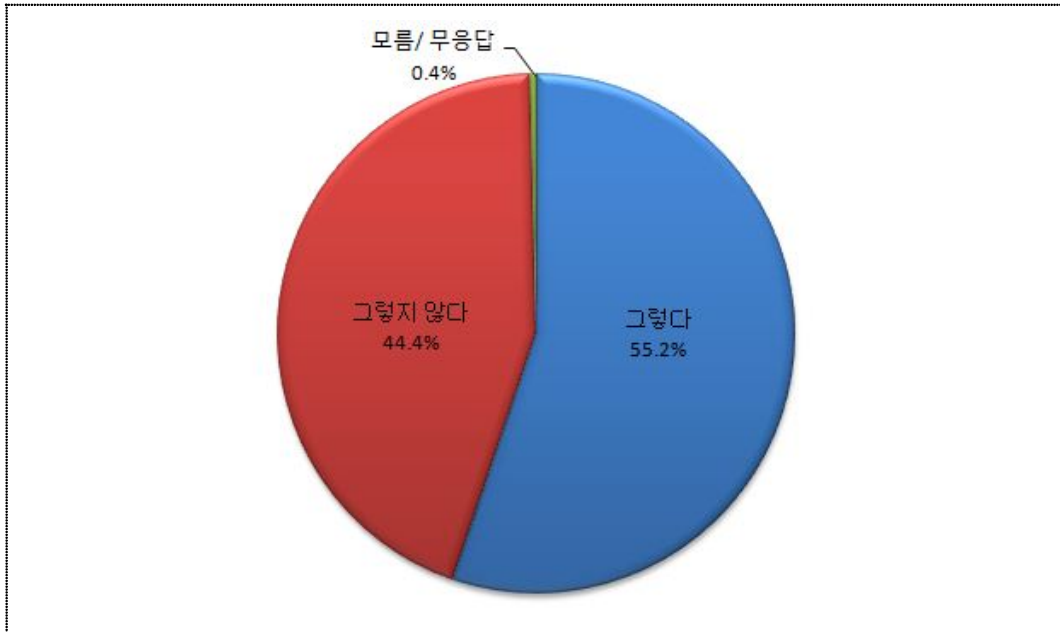


3. 향후 전망 및 정책·제도개선 방향

■ 개인정보보호법 유예기간(6개월)에 대하여 충분하다 여기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이 6개월로 충분하는가에 대해서 55.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44.4%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함 (그림3-41)
 - 55.2%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주어진 유예기간은 대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대답과 충분하지 않다는 대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예기간의 확장이 확보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됨

[그림 3-41] 개인정보보호법 유예기간(6개월)에 대하여 충분하다 여기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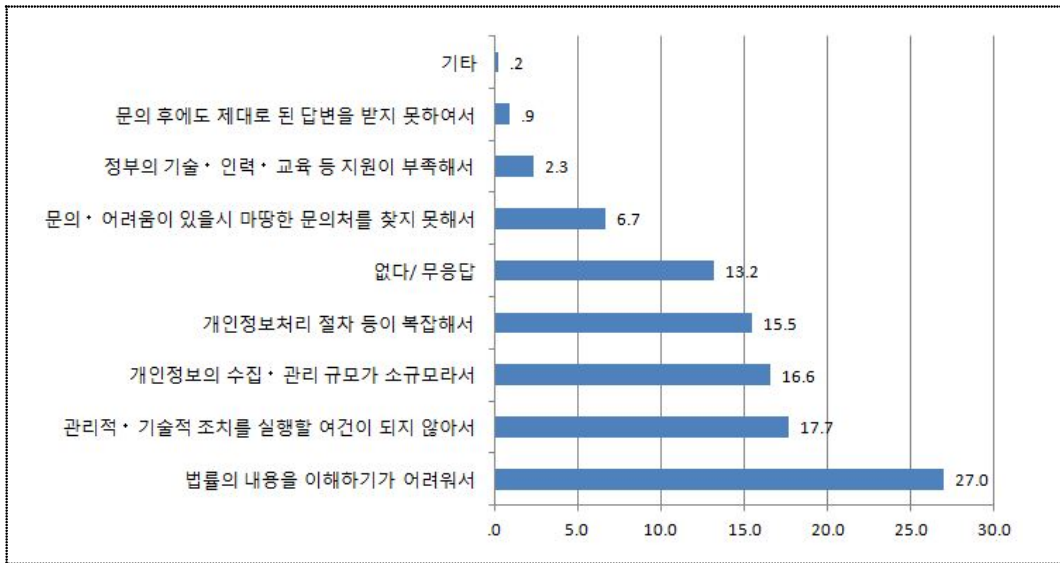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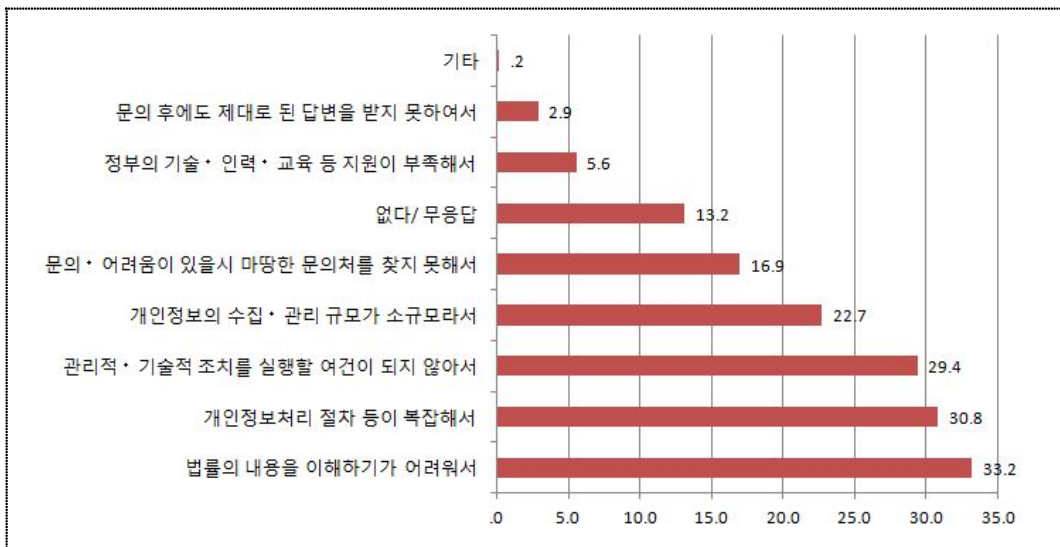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첫 번째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27%)로 나타났으며, 이어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17.7%),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16.6%),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해서’(15.5%), ‘없다/무응답’(13.2%), ‘문의·어려움이 있을시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해서’(6.7%), ‘정부의 기술·인력·교육 등 지원이 부족해서’(2.3%), ‘문의 후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여서’(0.9%)로 각각 나타남 (그림 3-42)
- 응답자의 50%가량이 법률 내용의 이해도 부족과 개인정보처리절차의 복잡함 및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한 능력이 부족함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이러한 법률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고 소규모 정보만을 처리하는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가 30%에 상회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적

극적 지원으로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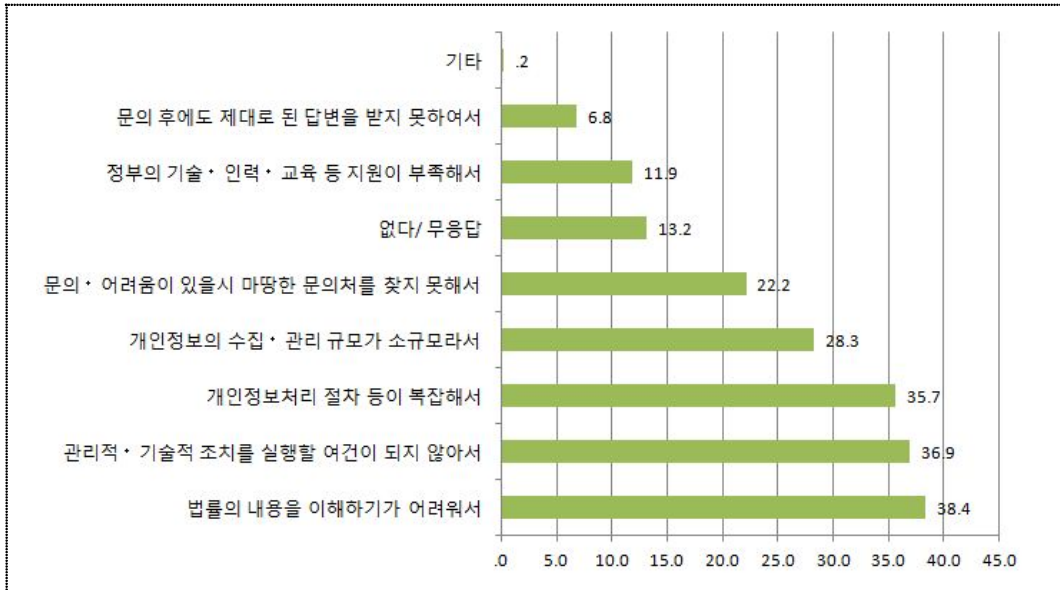
[그림 3-42]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순위)



[그림 3-43]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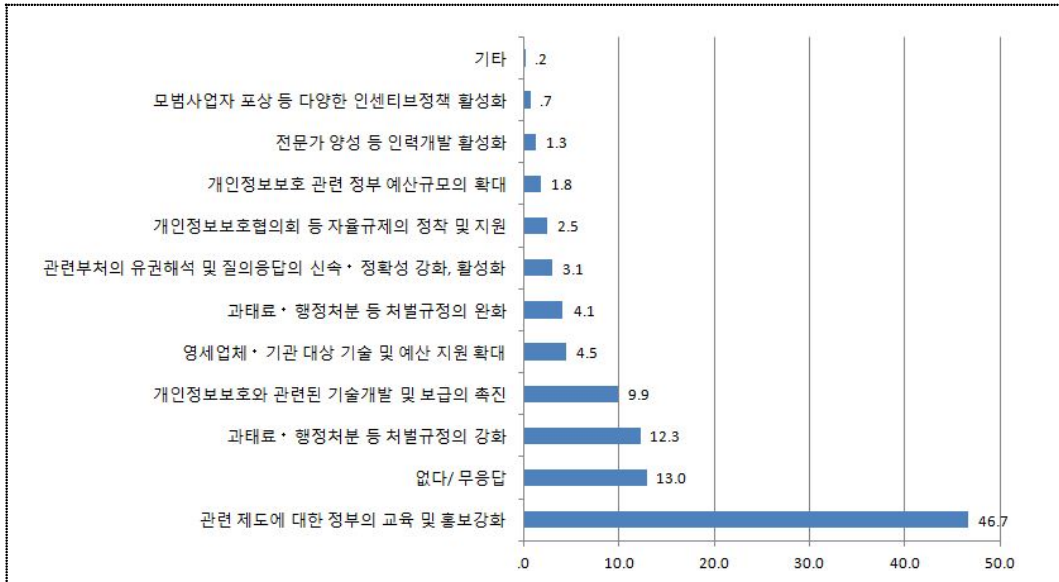
[그림 3-44]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이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1+2+3순위)



■ 효율적 개인정보보호 실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46.7%의 비율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를 꼽았으며, 12.3%가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9.9%), ‘영세업체·기관 대상 기술 및 예산 지원 확대’(4.5%),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완화’(4.1%),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의 신속·정확성 강화와 활성화’(3.1%), ‘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자율규제의 정착 및 지원’(2.5%),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예산규모의 확대’(1.8%),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활성화’가 0.7%, ‘없다/무응답’이 13%로 각각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정비작업을 통해 정부의 교육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3-45] 효율적 개인정보보호 실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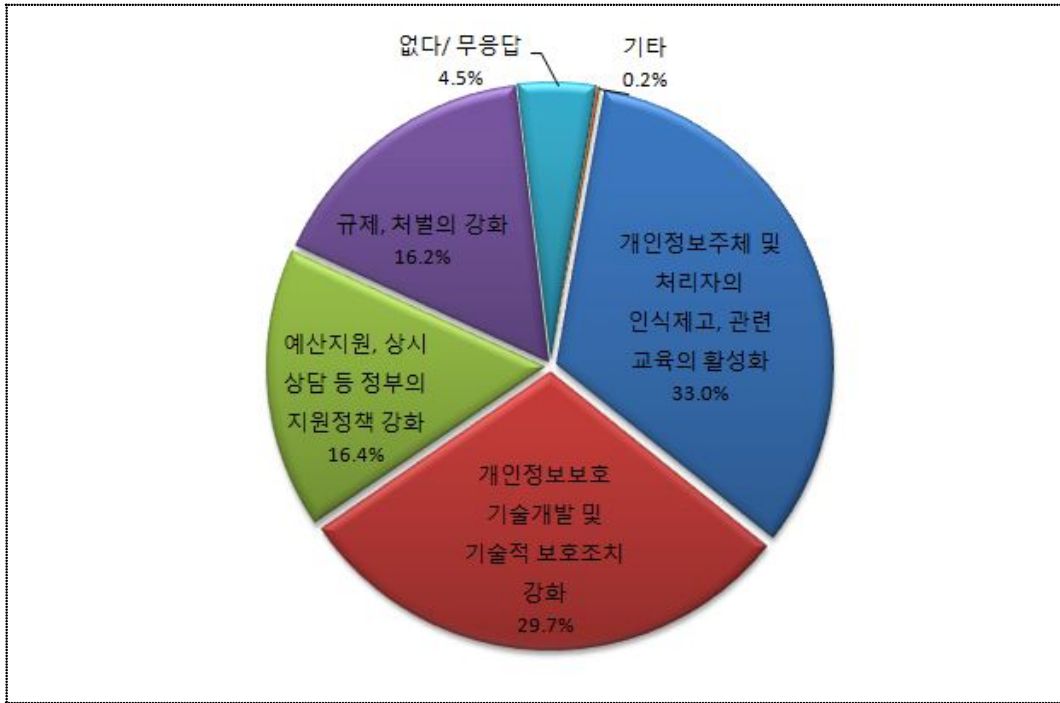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향후 중요 고려요소

○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서 향후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3%가 ‘개인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인식제고,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꼽았고, 29.7%의 응답자는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이어 ‘예산지원, 상시 상담 등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16.4%), ‘규제, 처벌의 강화’(16.2%)로 각각 나타남 (그림 3-46)

- 개인정보침해사고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과 정비작업을 통해 정부의 교육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3-46]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향후 중요 고려요소





제4장 개요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제1절 중장기 실태조사 발전방안

1. 설문 항목의 개편 필요성
2. 개인정보 처리자 표본설계
3. 설문안의 보완

제2절 제도개선요소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개인정보보호의 관점과 목표의 명확화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인식과 제도적 대응의 괴리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처리자의 부담경감방안 마련
4. 일반국민의 인식개선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 등 정책추진체계의 재정비



제4장 향후 정책방향 및 제언

제1절 | 중장기 실태조사 발전방안

1. 설문 항목의 개편 필요성

- 금번에 시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이라는 시의성에 주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던바, 향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설문항목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함

-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규모와 조사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조사기간의 정례화: 매년 3/4분기 9월~11월 중에 관련 내용을 발표를 목표로 제공사 및 처리자 대상 실제 설문조사는 약 1개월간 시행하고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는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 실태 조사가 연 1회 10월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내년 초 03월에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9월 조사를 실시하여 연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제도개선 및 정책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제공자의 경우 지역(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연령(10대~60대이상)을 안배하여 표본을 설정하고 총 5,000명조사, 처리자의 경우 공공부문 : 민간부문(1.5 : 3.5)의 수준으로 총 5,000개 기관 및 사업체를 조사 실시함

연령 지역 (인구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	1,180,987	1,582,926	1,708,494	1,581,827	1,369,903	1,397,792
부산	441,430	474,971	496,796	565,289	561,134	490,356
대구	353,772	331,906	375,895	436,609	348,538	364,670
인천	376,586	373,704	440,237	488,998	357,856	335,852
광주	234,495	217,114	240,858	246,301	178,592	193,481
대전	225,146	230,068	244,345	255,612	194,050	189,220
울산	165,217	135,320	180,468	211,022	152,411	115,136
경기도	1,612,992	1,506,682	1,998,712	1,158,792	1,382,108	1,408,470
강원도	198,098	178,485	201,561	238,654	217,037	296,060
충청북도	211,946	196,111	218,950	246,544	204,792	272,492
충청남도	274,064	263,053	296,544	307,033	254,487	406,506
전라북도	252,823	207,587	240,630	272,198	238,431	387,625
전라남도	233,054	160,399	217,307	263,332	239,747	456,837
경상북도	334,931	311,034	358,615	407,349	369,502	566,913
경상남도	435,771	365,165	494,345	541,649	430,347	533,842
제주도	80,328	59,844	80,738	89,959	65,891	91,971
계	6,611,640	6,594,369	7,794,495	8,204,781	6,564,826	7,606,903

출처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0년도 인구총조사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대 별 인구비율은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각 연령의 지역별 인구수는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 까지 연령 구분을 유지하고, 지역별 인구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에 객관성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산업분류	사업체 수	개인정보 실태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분류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농업·임업 및 어업	2,354			
광업	1,770			
제조업	326,813	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	332,215	3,658,35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99	전기, 가스, 수도업	1,499	67,39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5,402	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	332,215	3,658,353
건설업	96,833			
도매 및 소매업	876,654	유통, 물류, 도소매 분야	1,223,833	3,675,439
운수업	347,179			
숙박 및 음식점업	634,500	숙박 및 음식점업	634,500	1,840,0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375	정보통신업	26,375	480,405
금융 및 보험업	39,353	금융·보험업	39,353	718,459
부동산 및 임대업	126,08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081	450,6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6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5,9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929	중앙행정기관 기타 공공 기관(공교육 포함)	11,929	637,199
교육 서비스업	165,964	사교육	165,964	1,432,0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7,012	의료·보건	107,012	1,135,5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2,948	예술, 스포츠, 여가	102,948	334,5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6,293			
자가소비 생산 활동	조사 대상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조사 대상 제외			

출처: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0년 전국사업체수

- 2010년 현재 전국에 사업체 수가 총 335만여 개에 달하는 것을 조사되었는데, 산업분류에 따라서 사업체 개수를 살펴보았을 때 그 차이가 상당하여, 사업체 개수나 종사자 수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모로 조사대상을 나누고 선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 따라서 기타 통계조사와의 연계 및 객관화된 산업분류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르되,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소규모인 업종을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빈번한 산업 및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는 산업을 분류대상을 삼도록 함
- 다만, 총 조사 대상을 5000개 수준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개별 업종 별 규모의 계층 구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5인 미만, 5인 이상 9이하, 10인 이상 49인 이하, 50인 이상 99명 이하, 100인 이상 249인 이하, 250인 이상, 499인 이하, 500인 이상 999인 이하, 10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계층 조사를 하여 개별 규모별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분류 별 최소 약 50개 수준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50개 업체 × 8계층(규모) × 10개 분야(공공제외))
- 공공부문의 경우 총 규모에 따라 총 1000~1500개 (민간부분에서 각 계층별 업체수가 50개가 안되는 경우 공공부문 조사대상으로 수렴)를 실시하여
- 민간과 공공 합계 5000개 수준의 표본을 조사하여 전체 개인정보처리자(약350만)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결과를 통하여 정책 및 제도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실시함
- 조사방법: 물론 위원회에서 일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전문 컨설팅 및 설문업체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나, 최대한 방문을 통한 대면 면접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설문 신뢰성 및 정확도화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표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제 향후 실태조사의 객관적 지표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설문조사에 대한 후속조치

-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준수 의무 이행의 정도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 구체적 지원을 수행한 후 다음해 개선 정도를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기능 확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처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예산 인력 등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공

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투자예산 대비 개인정보보호 효과성 검토(혹은 제공자의 만족도 혹은 신뢰도 상승)

-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홍보강화, 조직 및 기능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성 담보함

2. 개인정보 처리자 표본설계

가. 산업표준분류와 연구내용의 표본 비교

- 본 연구의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본 연구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1.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공공기관)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M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2. 정보통신 분야	J 출판, 영상, 정보 등 정보서비스업
3. 금융보험 분야	K 금융, 보험
4. 의료보건분야	Q 보건 및 사회복지
5. 유통, 물류, 도소매 분야	G 도매 및 소매 H 운수업
6. 사교육 분야	P 교육서비스
7. 자영업 분야	L 부동산, 임대 I 숙박 및 음식점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8. 숙박업 분야	I 숙박 및 음식점업
9. 관광업 분야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S 협회, 수리, 개인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B 광업
-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수도
-	E 폐기물, 환경복원
-	F 건설업

- 이번 조사에서 처리자 모집단으로 설정한 산업 분류는 10개 분야임
 - 예상 개인정보 취급 정도, 분야별 근거법 유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규추가분야 및 강조분야 등을 근거로 한정된 연구 여건에서 최대한 포괄하여 시행하였음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할 때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F 건설업은 개인정보 취급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A 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규모 및 산업활동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대부분류 A, 농업 및 임업과 B, 어업을 통합하였고 야생 식용임산물채취업을 농업에서 임업으로 이동하였다.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중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를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고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과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을 통합하여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B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와 광물탐사 등의 활동을 포함한 광업 지원서비스업을 중분류로 신설하였고, 우라늄 및 토륨광업은 비철금속광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연탄제조는 대분류 간 이동으로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C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컴퓨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통합하였으며 다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은 ICT 특성 정도와 시계열 유지 문제 등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달리 현행처럼 별도의 중분류로 유지하였다. 제조업에서 타 산업으로 이동한 산업으로는 재생원료 생산업이 신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이동하였고 출판업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산업영역이 이동된 것으로 편조의복 제조가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봉제의복 제조업으로, 전기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을 전기제품 제조업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제조업부문에서는 특히 산업통계에 의한 전문화율과 포괄률 및 사업체 규모,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하위분류를 신설 또는 통합하였으며 신설된 분류로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이며 통합된 분류로는 맥아와 맥주, 석회와 플라스터, 재봉기 및 자수기와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등이다.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산업별 전문화율과 국민계정의 연계성 등을 위하여 발전업에서 원자력발전업, 수력발전업과 화력발전업을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 신설하였다.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산업에 산재해 있던 하수처리, 폐기물처

리, 재생원료 생산업을 한데 묶고 새롭게 대두된 산업인 토양정화업을 포함한 환경복원업을 신설하였다.

F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내의 소분류 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을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정별로 세분하여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되었던 유리공사업과 창호공사업을 통합하고 전문화율이 높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에서 자동차 판매와 같이 분류되었던 차량연료소매업은 소매업으로 이동하였고 정보통신관련 장비 소매와 문화, 오락 및 여가관련 소매를 각각 소분류로 신설하였다.

H 운수업

-소화물송달업을 통신업에서 운수업 영역으로 이동하고 도선업을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통합하였다.

I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분류 다과점의 하위분류인 제과점업을 기타 음식점업으로, 찻집 및 커피숍을 주점 및 비알 콜음료점업으로 각각 이동하고 다과점업은 삭제하였으며 증가하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을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과 치킨 음식점업으로 분리하였다.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신설 대분류로서 전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 산업 즉, 출판,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대분류를 구성하였다. 특히 출판업에는 기존 출판영역 이외 프로그래밍(주문형)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출판(패키지형)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화율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세분하였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세분류에서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신설하고 하위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세분하였다. 기존 출판업에서 기록매체 출판업은 제외(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에 포함)되었으며 방송업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고려하여 유선 및 위성방송업에 기타 방송을 포함하여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업으로 조정하였다. 통신업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 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과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을 유선통신업으로 통합하였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의 기준을 통화창출여부에 따라 통화금융업 및 비통화금융업으로 구별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은행과 저축기관을 하나로 묶어 은행 및 저축기관으로 하고 여신, 리스 등 저축기

관이 아닌 나머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금융업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산업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와 명확한 구별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였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업에 포함되었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권 매매 및 대여활동(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임대업으로 이동하였으며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부동산 감정업을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을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 임대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현행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나누어 2개의 대분류를 신설하였다. 국제 및 타분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의업을 보건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고 회사본부를 세분류로 신설하였으며 그 세세분류로 제조업회사본부와 기타 회사본부로 세분하였다. 또한 산업분석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과 지도제작업을 각각 신설하였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이 운수업에서, 조경수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이 농업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정부직제와 기능을 고려하여 세분한 8차 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P 교육 서비스업

-지금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포괄하여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별도의 소분류로 신설하였으며 오락 및 운동 관련 산업에서 분류되었던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활동을 교육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조사 및 분석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학교를 별도의 세분류로 신설하였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위분류 명칭 중 시설을 시설 운영업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수용복지시설을 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노인수용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운영업과 노인양로시설운영업으로 세분하였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화 및 방송 산업을 신생 대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키고 남아있는 공연산업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 포괄하였다. 스포츠시설 운영업 중 태권도, 수영 등 전문교육활동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으며 또한 지역단위 등의 문화 및 여가관련 산업을 포괄하기 위해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을 신설하였다. 산업규모 및 전문화율을 고려 낚시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별도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도박장 운영업을 gambling 및 베팅업으로, 노래방 운영업을 노래연습장 운영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산업규모 및 전문화율을 고려하여 미용업을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으로 세분하

고 개인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을 신설하였다.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활동과 서비스 생산활동을 각각 중분류로 신설하였으며 특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 생산활동은 사업체 통계조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특수목적의 통계를 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나. 설문표본의 한계

■ 과학적인 표본추출이 어려움

- 설문조사 업체가 보유한 표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산업분류에 적합한 조사 및 표본추출이 어려움
 -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샘플링을 한 후 본 연구에서 요구한 방향으로 재분류 작업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 그러나 모집단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추출 시 추정한 모집단 수를 바탕으로 층화표본추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타기관 조사 결과의 활용 및 조사 결과와의 비교가 어려움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화통계집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수행하는 정보보호 실태조사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업종분류를 재구성하여 동일한 업종 분류로 조사를 실시함
- 업종 분류가 본 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타기관 조사 결과의 활용 등이 어려움

■ 과제추진 과정에서의 물리적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이라는 시의성에 맞추어 급박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점
- 표본 분류라는 쟁점은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범위임

-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법적 성격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리가 선행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개인정보 추진체계에 위치하고 있는 개별 행정기관 및 산업계, 학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다. 개선방안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들(개인정보 취급 정도, 분야별 근거법 유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규추가분야 및 강조분야 등)을 반영
 - 본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업종들을 조사대상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하나로 분류되었던 산업 중 본 연구에서 둘 이상의 산업에 중복되어 포함되었던 산업(교육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분류 재정립하였음
 - 근거법 유무와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규추가분야 및 강조분야를 고려하여 산업분류 재구성함
- 표본추출 시 모집단의 수는 업체 수 보다는 개인정보취급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타 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는 산업분류별 업체 수 및 지역별 업체수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함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는 산업분류별 지역별 업체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급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통계 조사 시에 취급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별 표본수를 설정해야 할 것임

라. 분류체계 개선(안)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본 연구 실태 조사	연차조사 분류	비고
A 농업, 임업 및 어업			- 제조업의 경우 석유 정제산업 등 일상생활에서의 직접고객 및 제3자 위탁 사례 빈번할 것으로 예상, 폐기물과 환경복원업을 함께 분류
B 광업			
C 제조업 - α		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신설 및 표준산업분류 C,E 합병) - α	
D 전기, 가스, 수도 - β		전기, 가스, 수도업(신설 표준산업분류 D와 동일) - β	
E 폐기물, 환경복원 - α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 - γ	5. 유통, 물류, 도소매 분야	유통, 물류, 도소매 분야 (본 연구 실태조사 기준 사용, 표준산업분류 G, H 합병) - γ	
H 운수업 - γ			
I 숙박 및 음식점업 - δ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 I와 동일) - δ	
J 출판, 영상, 정보 등 정보서비스업 - ε	2.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업(표준산업분류의 J일부) - ε	
K 금융, 보험 - ζ	3. 금융보험 분야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의 K와 동일) - ζ	- 8.숙박업을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변경
L 부동산, 임대 - η		부동산업 및 임대업(표준산업분류의 L과 동일) - η	- 자영업은 산업분류의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의 규모에 관한 기준이므로 ①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 θ	1.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공교육 포함)(표준산업분류의 O와 동일) - θ	
P 교육서비스 - ι	6. 사교육 분야	사교육(표준산업분류의 P와 동일) - ι	
Q 보건 및 사회복지 - κ	4. 의료보건분야	의료·보건(표준산업분류의 Q와 동일) - κ	-자영업은 산업분류의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의 규모에 관한 기준
R 예술, 스포츠, 여가 - λ	9. 관광업 분야	예술, 스포츠, 여가(산업분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본 연구 실태 조사	연차조사 분류	비고
		류에 해당하지 않던 자 영업 분야 및 관광업 분 야를 표준산업분류 R로 변경) - λ	준이므로 예술, 스포 츠, 여가업으로 구분
S 협회, 수리, 개인	7. 자영업 분야, 10.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협회 및 동호회 등 비영 리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 기타 폐기물업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석유정제산업 및 석유유통산업과 같이 직접 대규모 대상 고객을 관리하기도 제3자 위탁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함
 -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고객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사업자의 수집·관리 현황에 대한 수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자영업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와 관련된 기준이므로 산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고, 2010년 기준 국내 산재한 5인 미만 사업체는 256만 3000개에 달하여 전체 사업체 (335만 5000개)의 76.4%를 차지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체로서 운영이 가능한 유의미한 산업분류에 따라서 구분하였음
 - 자영업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로 세분화함
- 협회·동호회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분류는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고, 종교단체와 동문회 등과 같은 친목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고 있으며, 나머지 협회나 학회 등의 조직은 개별 산업분류별 적정한 비율로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사업체수를 추출하기 어려워 분류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주되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를 통해 특정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형태(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오로지 온라인에 국한되는지 여부), 온라인 광고수익의 규모 및 비중⁴⁾⁵⁾, 가입자(회원수) 및 1일 방문자 수(개인정보보호법 시

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경우)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의 주된 서비스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를 통해 구분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준용사업자⁶⁾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3. 설문안의 보완

가. 개인정보 제공자 설문

■ 설문구성 개관

- 설문의 구조는 I 제도시행에 따른 일반 인식제고, II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의 준수 현황 실태조사, III 개인정보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으로 구분하게 됨
- I 에서 지시하는 질문의 응답은 매해 실시하는 실태조사결과 개인정보제공자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임
- II 는 구체적인 법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물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묻게 되겠지만, 제공자 측면에서의 실질적 체감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4) NHN의 경우 2011.05.30 현재 1조1천억원의 광고수익을 얻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3천455억원으로 업계 1위와 2위업체의 수준도 상당하고 여타의 사업체의 광고수익규모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2011.05.30

5) 2012년 온라인 광고 수익의 총액을 2조2555억원으로 예상하는 KT경제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른 경우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온라인 광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산업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8.29, 대통령령 제23104호)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 III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이나, 구체적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나 II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 준수실태의 변화 양상을 III파트에서 도출되는 정책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통하여 분석하게 되면 정책의 성과평가의 척도로서도 작용할 것임
- 또한 III파트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 특수한 분야에 적합한 질의나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설문을 담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음

■ 설문안 주요 내용

- I. 제도시행에 따른 일반 인식제고 파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사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제공자들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와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것임
- 제공자 조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주지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우회적으로 질의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계몽홍보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II.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의 준수현황 실태조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제공자가 일상생활 혹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실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의무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주체)제공자가 인식하는 준수수준을 파악함
- III. 개인정보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자들로 하여금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마련하게 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구현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청이나 정책개선사항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완적으로나마 확대 및 심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제공자 설문 체계	
I. 제도시행에 따른 일반 인식제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인식
	개인정보의 의미(성격)
	개인정보 유출피해구제대응 경험
II.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의 준수현황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
	이용 및 제공 제한
	수집제한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주민등록번호 대체 가입수단 제공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시행 및 제도 변경의 수용	
III. 개인정보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우수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해태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소

■ 설문안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함
 - 새로운 정책 시행의 근거로 활용함
 -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제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개선을 도모함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설정 및 추진체계 효율화와 개선 근거로 활용함

○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위상제고 및 국민의 인식제고를 통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근거로 활용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관한 인지도와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시점에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개별 조사 시기에 발생하는 핵심이슈(변수-유출사고 등)에 따라 중요성에 관한 판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의미(성격)

-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관하여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법리적 판단이 변경되거나 법제도적 보호정도가 수정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유출피해구제대응 경험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개인정보 주체가 체감하는 피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의 대형 유출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확인

- 단순히 수집·이용 동의 절차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주체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책적 접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에 관하여

- 질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교육 및 계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 내용들의 인식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의 권리를 파악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자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행사 등과 관련하여 보다 법리적으로 밀접하도록 함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한 의무사항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대체 가입수단 제공 여부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법을 조사함
- 국민들의 선호 대체가입 수단의 경우 보안관리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체가입 수단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로 활용함

○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우수 및 해태 분야

-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있다고 개인정보 주체가 체감하는 분야의 경우를 조사하여 특징을 파악함
 - 개인정보 활용이 빈번하고, 해당 분야별 특별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 등과 같은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업체)의 규모 및 개인정보 처리의 규모와의 관계성을 파악함
 - 우수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성 확인을 통하여 여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방안을 강구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에 저조한 산업분야의 확인을 통해 해당 분야에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
 - 예를 들어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체가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함
 - 개별 분야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 지원 방안을 검토함(ex 택배 및 물류 등)

나. 개인정보 처리자 설문

■ 설문안 개관

- I. 제도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파악 여부는 제공자의 인식제고와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에 있어 제도시행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징표로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식 제고의 내용은 해당 법률의 시행 및 유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처리자 스스로 어떠한 보호 의무에 귀속되고 있으며, 해당 업체 및 개인은 어느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인식에 바탕을 통해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실현될 수 있으며, 제공자의 권익보장이 현실적으로 구현 될 수 있음
- II.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의 준수현황 실태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됨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사항 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단순히 단속적 측면에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 수범자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행 실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특히 연차별 실태조사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행 해태에 대한 처벌 및 관리적 측면 보다는 이행실태와 연차별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설문 응답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보장되어야만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III. 정책 개선 방안의 경우 수범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요소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법적으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여 강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사업체 자체의 역량이 큰 경

우 기술적 안전조치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소요되는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리자가 많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준수 의무자의 범위로 포괄된 중·소 영세 사업체 및 개인이 상당한 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후퇴시키지 않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무엇보다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하며 연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각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기구 및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 실태조사를 통한 개별 분야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위원회에서 적절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 설문안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의무사항의 수범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법 시행 초기와 달리 인식수준의 정도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 제도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및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음
- 분야별, 업체규모별 개인정보처리규모를 확인함
- 개인정보처리규모를 통해 위험부담이나 개인정보처리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처리자의 부담을 파악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와 조직의 정책 및 입장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대상 조직의 정책이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실질적으로 파악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의 준수상황을 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이 무엇인지 확인함
- 법령해설 및 전문인력 교육, 예산 지원등 정부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의 확대 근거로 활용 가능함

-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 준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지 확인함
- 법시행에 있어 부담요소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도출하거나 정책이행을 위한 유인기재를 확보함

처리자 설문 체계	
I. 제도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파악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 파악
	개인정보의 필요성 인식(의무사항의 수용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변화
II.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의 준수현황 실태조사	적법한 동의 절차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의 제한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 처리
	대체 가입수단 제공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통지 절차 준수여부
III. 정책 개선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한 교육이수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예산 증액 등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에 따른 부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소

■ 설문안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함
 - 개별 개인정보처리자 집단의 인식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도모함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를 파악함
 - 분야별, 업체규모별 개인정보처리규모를 확인함
 - 개인정보처리규모를 통해 위험부담이나 개인정보처리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처리자의 부담을 파악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느끼는 부담
 -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계도할 수 있는 수단을 파악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이 무엇인지 확인함
 - 법령해설 및 전문인력 교육, 예산 지원등 정부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의 확대 근거로 활용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한 교육이수 및 시행
 - 교육 실시 빈도의 적정성과 교육수요 등을 파악함
 - 교육수요와 관련하여 교육 일정, 교육 규모, 교육 내용 등의 계획의 근거로 활용함
 - 개인정보보호법제 28조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함
 - 취급자 대상 교육이 저조한 분야 및 전문 교육이 필요한 분야 검토하여 교육 사업 실시가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함

제2절 | 개인정보 관련 해외 동향 및 비교법적 검토

1. 빅 데이터(Big Data)활용 논의

■ 빅데이터의 의의와 활용가치

- 소셜미디어 상호작용,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기기의 폭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증대로 인해 'Big Data'의 시대가 도래함

-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DB S/W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로서 현재로는 수십 테라에서 향후 페타(1015), 엑사(1018) 바이트 정도 크기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출해서, 트렌드 파악, 마케팅,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함
- 소비자 취향과 행동 등 다양한 변화 감지, 사람을 통하지 않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산업구조와 경쟁양상을 변화시킴
-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시간 처리가 어려웠으나,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
- 빅데이터 활용이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으로 판단됨
 - EU의 경우, 15~20%의 공공관리 비용 감소, 2~4천 달러의 가치창출, 향후 10년간 0.5% 생산성 증가효과를 기대함
 - 제조업 적용시 상품개발 및 조립비용을 50%이상 절감 가능하며 운전자본도 7%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의 LBS 정보는 바이트당 부가가치가 높아 2020년경에는 약 \$7,000억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빅데이터(Big data)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위협

-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기업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가능함
-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정보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 최소한 정보가 활용되기 전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를 분석하고 싶어 하며, 새로운 상품을 어떤 고객층에게 팔아야 하는지, 현재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에 수요가 높음

- 인터넷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등을 수집 활용하는 것까지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보호해야 할 개인 데이터를 어디까지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핵심임
- 유럽은 학문, 통계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등의 괴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2.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

■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

-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지만 반면 부정확한 정보나 밝히기 싫은 정보까지 영속하고 제한 없이 전파되어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음
- 정보주체 입장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의 무한 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염려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2012년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안 발의)

■ EU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

- 정보를 보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삭제에 갈음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시함
- 개인정보 공개에 책임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 조치(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조치)를 동원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복제·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함

- ① 특정분야/특정상황에서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를 위한 기준 및 요건의 제정, ②공중통신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의 링크·복제·복사·삭제를 위한 조건의 제정, ③ 개인정보의 삭제 대신 처리 제한시의 처리 제한의 기준 및 요건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음

■ ‘잊혀질 권리’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와 실효성 확보방안 문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갈등
 -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미국의 인터넷 관련 회사들에게는 동 권리의 발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유럽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민간자율에 맡기는 등 규율방식에 있어서 전통적 차이를 보임
 - 정보의 삭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 근대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축소가 우려되며, 악의적 권리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기술적 구현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회의적
 -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기술 개발 등에 관한 논의(시멘틱 웹, 암호화, 데이터 일몰제 등)가 있었으나 보안문제나 기존 기술이 가진 한계, 개인정보에 대한 시점관리, 기술적 구분, 기술적 처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ENISA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존하는 기술들은 공식적으로 접근가능한 기간 동안 권한 없이 복사되거나, 만료된 정보가 권한 없이 재 유통되는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에 있어서는 세밀한 검토 필요
 - 과거의 개인의 행적이 복합적으로 집적되어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는 사실들이 타

- 의에 의하여 공개되는 등 사실상의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에 기반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입 논의가 한창임

3.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연방정부비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 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음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공공부문에만 법을 적용하고 민간부문에는 원칙적으로 윤리적인 통제만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1966년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정부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민간부문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면 개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역별 보호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정보화시대에 부수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아이디 도용, 온라인 프라이버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 및 그 침해의 내용에 의존하면서 영역별로 신속하게 대응해옴
- 1974년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한 이래 1978년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 1986년 전기통신보호법, 1988년 컴퓨터자료의 상호비교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1994년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 1996년 통신법 및 의료기록비밀보호법을 각각 제정함
-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해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특히 신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도전들에 응답하면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유연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접근방식이 경제적·기술적 관점을 중시하고,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시하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 미국은 민간부문에서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할 뿐, 원칙적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만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음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EU의 경우 기존에 데이터 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⁷⁾으로 규율하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상위규범인 일반규정(Regulation)⁸⁾의 지위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데이터 보호지침의 개정이유는 오늘날 기술 환경이 개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게 자신의 행동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전례 없는 규모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따른 위험 증대 및 개인정보 보호 요청 때문임
 - 수백만명의 전 세계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이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와 인터넷에 기반하여 원격서버에 장보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하는 방식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위험이 증대할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나 대상이 증대하는 등 위험의 내용과 수단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 혹은 영역 모두 확장되었다는 판단아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개편을 추진함
- 이러한 배경으로 EU의 데이터 보호지침은 제정 16년 만에 개정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고, 그 개정의 방향은 새로운 기술의 영향에 적합하고, 내부시장에서의 데이터 보호의 강화와 데이터의 국제전송과 세계화에 대응하며, 데이터 보호 규칙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법을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규범간의 프레임 워크의 일관성이 개선되도록 함

7)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10.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5.1.2012.

- 주된 개선 방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형태를 취함

■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수준

-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EU의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담고 있음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시키고, 처리자의 범위를 350만 규모로 포괄하였음
- 고유식별체계 및 민감정보의 수집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율의 정도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유럽에 비해서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7년 이상의 기나긴 입법과정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발생,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맞물려 입법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형태로 마련된 것임
- 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는 보편화 되고 세계화 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의 규제는 강화되어 있는 상황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으며,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영역의 부담도 가중됨
-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준화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제3절 | 제도개선요소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개인정보보호의 관점과 목표의 명확화

-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보주체에
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결코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는
없고, 여타의 충돌하는 규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알 권리·표현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와 같은 규범
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이미 세계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의
규범적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 Data Protection Directive(EU, 1995)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내부시장
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주요한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
 - 이미 정보화의 심화를 경험하면서 개방과 공유라는 방식이 가지는 긍정적 가치를
확인하였고, 확산의 정도가 국경을 매우 간단히 초월하는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개
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할 시기에 직면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의 관점과 목표를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 내지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이
용가능성으로 설정하고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자가 균형
을 이루는 보안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규제 강화측면의 논의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와 안전한 정보이용이 함께
논의되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을 조성해
야 함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를 범주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능을 세분화·체계화함으로써 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 우선 국가 또는 민간사업자 등 개인정보관리주체에 대한 부정과 불신의 관념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결과적으로 보호할 것은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할 것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의 확립이 중요함
 - 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수의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 등 인격적 가치로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다 강화하되, 재산적 가치로서의 개인정보는 합리적 범주 안에서 처리가 원활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함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인식과 제도적 대응의 괴리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비교법적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인식에 의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음
- 실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44.4%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도는 미미함
- 이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난기간 지속되어온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시기	업체	피해규모
2006~2008년	하나로텔레콤	650만명
2008년 2월	옥션	1863만명
2008년 9월	GS칼텍스	1119만명
2010년 3월	신세계몰	330만명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175만명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
2011년 11월	넥슨	1320만명
2012년 4월	EBS	400만명
2012년 7월	KT	870만명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정보주체의 피해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처리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의조치의 수준이 높은 만큼 해당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술적으로 침해기술과 보안기술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어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 필요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관행의 개선과 서비스 이용의 처리에 따라서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한(처리제한 혹은 파기 등의 요구)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현에 있어, 사법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한데, 현실에서 정책이나 제도는 이용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지원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에 급급한 접근의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주체(제공자)의 의사가 매우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커다란 부담이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제도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정보화의 심화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이나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스팸메일이나 메시지 등의 문제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이나 불쾌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
- 더군다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phishing)시도가 빈번하고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불신 및 불안의 이유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임
- 개인정보를 불가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영업상 필요에 의해 수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과도한 상업적 활용이 결국은 개인정보 처리자 혹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제공자(업체)의 영업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고, 본래의 사업영역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가 고개의 신뢰를 획득하고 영업상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전제는 본 조사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한 업체의 서비스나 제품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시사하는 바가 큼
- 더불어 개인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만큼 개인정보 제공시 자체적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권리행사 방안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적규제의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규율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변화 시키는 것임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처리자의 부담경감방안 마련

■ 원칙적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까지 규율대상으로 함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더하여 수기로 처리되는 문서까지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분야로 확대시킴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못지않게 민간부문에 대하여 규율이 요청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겐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임
 - 공공부문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관리주체, 법적근거에서도 차별을 갖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목적 및 이용형태, 수집내용에서도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함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에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되고 활용되기 때문임

■ 기업의 부담 가중

- 공공·민간의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내용으로 규율을 강행하게 될 경우,
 -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에 대한 시장이 축소되고, 소상공인의 경우 국가기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법적용 대상의 광범위한 확대로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의 감시기능을 현실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강화가 요구됨과 더불어 처벌수위 또한 대폭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기업들은 법 시행으로 인한 대비방법, 조치수준 등에 대하여 많은 애로를 표하고 있음
 -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온 인터넷 사업자들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온 금융업자들은 비교적 부담이 경할 수 있으나,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영역 외에 있던 기업들은 대규모의 투자와 보안의 노력이 요구됨
- 개인정보처리 수준을 감안한 처벌 및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집행영역을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통하여, 제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제를 통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처리자 가운데에서도 단적으로, 금융, 신용, 납세, 건강 등과 같이 민감정보를 다루는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단순히 고객 관리나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을 차별화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도 금융·건강이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보다 강한 보호수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도 동일한 규범의 시행에 있어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제공자의 인식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실질적인 제도 이행정도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집 동의 절차 등)로 인하여 오히려 개인정보주체(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 혹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은 없으면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예를 들어 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처방 이력이나 치료내역 등은 의료기관 등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는 신속하게 공유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바,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은 간소화하되, 필요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안전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사례는 개별 분야의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형태를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관라감독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실적 피해자 구제방안 확보

- 개인정보 침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조치가 저조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⁹⁾
 - 현실적으로 법령에 보장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처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에 따라서 업체의 존망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유출피해가 발생한 것이 특징임
 - 또한, 법원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피해발생시 인정되는 법정손해배상제도¹⁰⁾의 도입 논의가 있음¹¹⁾
 -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피해규모에 합당하게 배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배상을 통하여 구제받았다는 측면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피해구제를 통한 공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

- 개인정보보호에 정보보호에 취약한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조성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존재하는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취약성 점검 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 원격 점검 서비스, 해킹사고 분석 서비스 등 기술적 지원책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례교육 및 해설프로그램 마련, 지방 등에 대한 순회교육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하여야 함

9) 애플의 경우 단말기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도록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10)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배상규모를 정하는 것
11)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이뤄지게 법 개정해야”. 연합뉴스, 2012.09.05.

- 새롭게 개인정보처리자로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준수 의무를 적절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일일이 직접 적용대상자임을 확인시키는 일은 비효율적이고 정책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으나, 관련 협회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대상자인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상태에 놓이게 되는 수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 체계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전담관리를 위한 인력은 물론, 각종 보안 솔루션 구입이 요구됨
 - 적용대상이 약 350만으로 확대되었으나, 이 가운데 대기업의 비중이 고작 1% 수준에 달해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법 시행이 부담스러운 상황임
 -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보안 솔루션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의 의무화를 보안관련 산업(서버보안, PC 및 네트워크 보안, DB보안 등) 활성화 관련하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초기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확대
- 개인정보보호법제 등 온라인 학습장 마련, 개인정보처리 실무자 교육 등 교육서비스 콘텐츠 확충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자 확대가 필요함
 - 실무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접적·간접적 정책의 마련,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각종 안내서 및 지침 배포, 질의응답 활성화 등 맞춤형 정책대응으로 자율적 제도수범 유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야별, 규모별, 업종별 각종 안내서, 지침 등을 다양하게 배포

-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적인 수범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상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 활성화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시행이나 효과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인식제고가 요청됨
 - 이는 제도 생성 이후 자연스럽게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나, 제도의 특성상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별로 준수 의무를 명확히하여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비된 사항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완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무엇인지, 보호조치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서비스 자체의 이용실적을 높이는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공공과 민간의 규율체계 분리

- 독일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의 구체적 법적 기준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따로 나누어 별도의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근거와 규율원리가 공공부문은 공법적 규율이고 민간부문은 사법적 규율이라는 체계상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고 입법체계를 운용하고자 한 것임
 - 국가가 법률로써 집행기관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과 개인이 사적영역에서 사적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달리 보아 규율 내지 규제정책을 정해야 할 것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시켜 규율하되, 두 분야가 동시에 규율되어야 하는 점은 기본원칙과 기본내용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영역별, 차별적 내용을 구체화 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일반국민의 인식개선

■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전반에 걸친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실천이 용이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UCC, SNS 등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을 겨냥할 수 있는 콘텐츠는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홍보, 관련 예산의 강화가 필요함
 - 상대적으로 노년 계층을 겨냥할 수 있는 콘텐츠는 기존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 관련 예산의 강화가 필요함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용이화 도모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나,
 - 정보주체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비용도 수반되므로 온라인 사업자나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자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개인정보의 처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 과잉 요구가 아닌 한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함
 -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가 사회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권리자의 권리실현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주체가 가지는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안을 보다 손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행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열람), 제36조(정정·삭제), 제37조(처리정지등의 요구)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

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권리행사 대행 창구를 마련하여 보다 개인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간편하면서도 처리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도록 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할 수 있음

■ 새로운 기술의 등장·발전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위탁, 양도, 보관파기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같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 및 사생활 공개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제시가 필요함
- 인터넷 환경의 도래로 개인정보의 고지·동의 원칙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함
 -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음
 - 고지·동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 EU Privacy Regulation안과 FTC 소비자 권리보호 권고 등이 도입하고 있는 privacy by design 원칙과 privacy by default 원칙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면서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지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결과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식도 제공자, 처리자 모두 비교적 저조한 상황임
 -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익명 거래와 익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인 처리를 금지하는 방향 모색이 필요함
 - 특히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거래’ 및 ‘제공’은 개인정보의 인격권적 보호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를 금지하여야 할 것임

■ 기타

○ 자율규제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부기관이 관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공공, 학계, 업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업종별 유관협회, 교육자치기구 등 자율적인 규제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자율기구 활성화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주체, 처리자의 자성능력을 갖추고 홍보 및 교육효과의 극대화 도모함
- 사실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회와, 분야별 단체 들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서도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이라고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과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일정 예산을 관련 단체에 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전문 컨설팅 및 자체 홍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해당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규모 및 대상 확정에 활용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혹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보안솔루션의 구매나 보안체계구축의 경우 단체 및 개별 처리자 들이 출연하는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공동출자(matching fund)하여 부담을 줄이고 예산 활용의 공정성은 관련 단체 등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정부예산 활용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함
- 또한, 개인정보 관련하여 관련 분야별 세밀하고 차별화된 자율 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 및 관리기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분야로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참여할 필요가 있음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 등 정책추진체계의 재정비

-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이 현장에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산재된 추진체계로 인하여 제도의 공백과 비효율이 발생함
 - 개별 처분, 부처간 이견조율, 제도개선, 분쟁조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그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수적인 요건
 - 민간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에 독립적일 수 있는 구조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역시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임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을 동시에 규율하는 이른바 다중 규율체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업무 분야나 영역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 및 제재조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함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 법령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법령에 포섭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차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함
-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교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만을 수행할 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집행, 총괄 기능은 행정안전부에게 부여하는 형태임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지만, 행정안전부가 초안을 잡은 기본계획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법제도 정비나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국제기구 회원자격 확충이나 총회 유치, 자격증 제도 운영 및 인증마크 제 도입과 같은 부수적이고 과시적인 지표 제시에 치중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한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 현행처럼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청으로서의 위상은 가지되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 및 처분권한은 소관 법률과 분야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이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침해사건에 대한 구제시스템, 분쟁조정, 법령해석, 행정심판기능, 직접 처분 가능성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과제로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심의·의결, 법령제정 및 해석, 단속 및 제재,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기대효과



제5장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의 현장의 실질적 효과와 이행실태,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음
 - 개인정보제공자인 일반국민,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실제로 느끼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강도,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이나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과 개인정보보호 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활용가능
 - 조사결과 제도개선의 구체적·객관적 근거자료로서 개인정보제공자와 처리자의 인식차이나, 그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법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부담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장에서의 적용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표준조사방안의 기틀 마련
 - 초기 단계 조사연구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변화 추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식조사 및 수준진단의 기초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고충 확인 및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부록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개인정보 제공자용
- 개인정보 처리자용

ID		-			
----	--	---	--	--	--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개인정보 제공자용)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2012.9.30)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의 변화를 탐색하고, 관련 제도·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제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성심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권현영 교수(광운대) E-mail : privacyresearch2012@gmail.com

I.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1. 귀하께서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2011.9.30.)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1-1번 응답)
 - ② 모른다(☞1-2번 응답)
- 1-1. (1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지상파·케이블·일간지 등 신문·방송매체를 통해서
 - ② 포털·인터넷뉴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 ③ 각종 공청회·토론회·강연회 등을 통해서
 - ④ 정부기관의 홍보 캠페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 ⑤ 기타 (직접기입 :)
- 1-2. (1번 문항에서 ②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 ②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 ③ 개인정보를 제공할 일이 없기 때문에
 - ④ 기타 (직접기입 :)
2.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과 함께 출범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3. 귀하께서는 평소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3-1번으로)
 - ⑤ 매우 중요하다 (☞3-1번으로)

3-1. (3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하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력 및 사생활 등 나의 명예나 인격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 ②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 ③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 ④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 ⑤ 기타 (직접기입 :)

4. 귀하께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몇 회 있습니까?

- ① 없다 (㉠4-2-1번 ㉠4-2-2번)
- ② 1회 (㉠4-1번 4-2번 ㉠4-2-1번 ㉠4-2-3번 응답)
- ③ 2회 (㉠4-1번 4-2번 ㉠4-2-4번 응답)
- ④ 3회 이상 (㉠4-1번 4-2번 ㉠4-2-1번 응답)
- ⑤ 모르겠다 (㉠4-2-1번 ㉠4-2-5번 응답)

4-1. (4번 문항에서 ②,③,④로 응답하셨다면 -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2회 이상 유출 경험이 있으신 경우 중복 응답해주시시오.)

- ① 해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유출
- ② 처리자의 고의적인 유출
- ③ 처리자의 실수에 의한 유출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직접기입 :)

4-2. (4번 문항에서 ②,③,④로 응답하셨다면 -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2회 이상 유출 경험이 있으신 경우 중복 응답해주시시오.)

-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
- ② 정부기관에 신고·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 을 신청하였다.
- ③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모임 등을 구성, 공동소송위임도 포함)
- ④ 유출기업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항의를 하였다.
- 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⑥ 기타 (직접기입 :)

4-2-1. (4-2번 문항에서 ③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송제기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 ② 승소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 ③ 승소하더라도 보상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 ④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 ⑤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 ⑥ 번거롭고 귀찮았기 때문에
- ⑦ 기타 (직접기입 :)

4-2-2. (4-2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셨다면)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때문에
- ②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③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 ⑤ 기타 (직접기입 :)

4-2-3. (4-2번 문항에서 ②로 응답하셨다면)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기관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때문에
- ②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③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 ⑤ 기타 (직접기입 :)

4-2-4. (4-2번 문항에서 ③으로 응답하셨다면)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때문에
- ②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③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 ⑤ 기타 (직접기입 :)

- 4-2-5. (4-2번 문항에서 ⑤를 선택한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지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
 - ②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
 - ③ 구제를 받더라도 보상으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 ④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 ⑤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 ⑥ 번거롭고 귀찮았기 때문에
 - ⑦ 기타 (직접기입 :)
5.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있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5-1번으로)
 - ② 없다
- 5-1. (5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처리자로부터 자발적인 피해보상 등 구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재발방지 등 사과문을 받았다.
 - ②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 ③ 금전 이외에 대체적 보상을 받았다.
 - ④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 ⑤ 기타 (직접기입 :)
6. 귀하께서는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시겠습니까?
-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다
 - ②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③ 소송을 제기한다.(피해자모임 등을 구성, 공동소송위임도 포함)
 - ④ 유출기업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항의를 한다.
 - ⑤ 기타 (직접기입 :)
7.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귀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118 콜센터
 - ③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④ 기타 (직접기입 :)
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 ② 비교적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
 - ④ 비교적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8-1번으로)
 - ⑤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8-1번으로)
- 8-1. (8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의 이력 및 사생활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 ② 내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 ③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 ④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 ⑤ 기타 (직접기입 :)
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2011년 9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회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 ② 비교적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
 - ④ 비교적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9-1번으로)
 - ⑤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9-1번으로)

9-1. (9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과태료·처벌규정 도입 등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 ②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우려되기 때문에
- ③ 점차 개인정보를 기관·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 ④ 개인정보유출은 기관·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 ⑤ 기타 (직접기입 :)

II.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10.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절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까다로워진 것 같다. (☞10-1번으로)
- ② 약간 까다로워진 것 같다. (☞10-1번으로)
-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
- ④ 약간 완화된 것 같다.
- ⑤ 매우 완화된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0-1. (10번 문항에서 ①또는 ②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도 불편하지 않다.
- ②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다
- ④ 불편함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 ⑤ 기타 (직접기입 :)

11.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2011년 9월) 정부·기업·개인 등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아진 것 같다	조금 낮아진 것 같다	변화가 없다	조금 높아진 것 같다	매우 높아진 것 같다
1)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 분야	①	②	③	④	⑤
3)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①	②	③	④	⑤
4) 병원 등 의료보건의 분야	①	②	③	④	⑤
5)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①	②	③	④	⑤
6) 학원 등 사교육 분야	①	②	③	④	⑤
7) 음식점, 부동산 등 자영업 분야	①	②	③	④	⑤
8) 호텔 등 숙박업 분야	①	②	③	④	⑤
9) 여행관광업 분야	①	②	③	④	⑤
10) 협회·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①	②	③	④	⑤

1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등) 및 민감정보(사상, 신념, 건강 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12-1번으로)
- ② 모른다

12-1. (12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셨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들이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가입수단(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제대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아래의 대체가입수단 중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 ① 공인인증서
- ② 휴대폰인증
- ③ 아이핀 또는 유저핀
- ④ 신용카드
- ⑤ 기타 (직접기입 :)

부록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14. 귀하는 평소 '인터넷'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한다.
- ② 대체로 잘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한다.
- ③ 대체로 거의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
- ④ 전혀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

15. 귀하는 평소 '오프라인'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한다.
- ② 대체로 잘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한다.
- ③ 대체로 거의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
- ④ 전혀 확인하지 않고 동의한다.

16. 귀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아래 주요내용 중 귀하께서 알고 있는 사항에 체크해주세요.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1)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2)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3)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4) 개인정보 처리자가 상품 등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①	②
5)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①	②
6)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	①	②

18.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안내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9.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제한 등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9-1번으로)

19-1. (19번 문항에서 ②로 응답하셨다면)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몰라서
- ② 알고 있으나 귀찮아서
- ③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 ④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행할 것 같지 않아서
- ⑤ 기타 (직접기입 :)

20. 귀하께서는 향후 요청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제한 등을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아래 업종 분류를 보고 질문에 대해 주세요 (21번, 22번).

- 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②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 분야
- ③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 ④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 ⑤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 ⑥ 학원 등 사교육 분야
- ⑦ 요식업, 부동산 등 자영업 분야
- ⑧ 호텔 등 숙박업 분야
- ⑨ 여행 등 관광업 분야
- ⑩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21.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22.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23.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아무 상관없다

III.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관련

24. 귀하께서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현재 우리나라 전반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크지 않다. ② 비교적 크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크다.
⑤ 매우 크다.

25. 귀하께서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전반의 피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커질 것이다. (☞25-2번으로)
② 비교적 커질 것이다. (☞25-2번으로)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다소 완화될 것이다. (☞25-1번으로)
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5-1번으로)

25-1. (25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②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강화로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③ 개인정보 보호기술 수준이 침해기술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⑤ 기타 (직접기입 :)

25-2. (25번 문항에서 ①또는 ②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②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③ 개인정보 침해기술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기술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이 미흡하기 때문에
⑤ 기타 (직접기입 :)

26. 향후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정보 유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⑤ 기타 (직접기입 :)

27. 아래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중 어떤 것이 유출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골라주세요

- ① 주민번호
② 주소
③ 이메일
④ 이동통신 번호
⑤ 계좌번호·카드번호
⑥ 가족관계
⑦ 학력
⑧ 소득
⑨ 건강관련 내역
⑩ 정치적 성향, 성적취향 등 본인의 신념
⑪ 범죄사실 등 전과내역
⑫ 기타 (직접기입 :)

28.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만 골라주세요)

- ①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 ②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완화
- ③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 ⑤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자율규제의 정착 및 지원
- ⑥ 관련부처의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의 신속정확성 강화, 활성화
-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예산규모의 확대
- ⑧ 영세업체기관 대상 기술 및 예산 지원 확대
- ⑨ 모범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정책 활성화
- ⑩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활성화
- ⑪ 기타 (직접기입 :)

29.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최소화를 위해서 향후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규제, 처벌의 강화
- ②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③ 개인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인식제고, 관련 교육의 활성화
- ④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 ⑤ 기타 (직접기입 :)

3. 최종학력 :

- ① 중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학 재학
- ④ 대졸
- ⑤ 대학원(석사)재학
- ⑥ 대학원(석사)졸업 이상

4.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5. 거주지 :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기타 광역시
- ④ 기타 시도

6. 직업 :

- ① 무직
- ② 학생
- ③ 전업주부
- ④ 자영업
- ⑤ 회사원
- ⑥ 기타 (직접기입 :)

IV. 응답자 통계

1. 성 별 :

- ① 남 ② 여

2. 연 령 :

- ① 20대 이하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2. 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회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양적 수준)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자사근로자 및 고객, 위탁정보 포함)

2-1. 보유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

- ① 100명 미만 ② 100~1,000명
- ③ 1,000~10,000명 ④ 10,000~50,000명
- ⑤ 50,000~100,000명
- ⑥ 100,000~500,000명
- ⑦ 500,000명 이상

2-2. 개인정보 취급 항목규모(수)

※ 개인정보 취급항목(예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계좌, 전화번호, 직장, 소득, 학력, 경력 등

- ① 1~2개 ② 3~5개 ③ 6~10개
- ④ 10~20개 ⑤ 20개 이상

3. 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대해서 귀 기관·회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처리 규모(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1.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양)에 대한 인식

- ① 매우 적은 수준. ② 비교적 적은 수준
- ③ 적절한 수준. ④ 비교적 많은 수준
- ⑤ 매우 많은 수준.

3-2.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대한 향후 정책

- ① 대폭 늘려나갈 계획
- ② 다소 늘려나갈 계획
- ③ 향후 변동 계획 없음
- ④ 다소 줄여나갈 계획
- ⑤ 대폭 줄여나갈 계획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보긴 했다
- ③ 모른다

5.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6번으로)

- ② 비교적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6번으로)
-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6번으로)
- ④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 ⑤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5-1. (5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 응답자)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태료·처벌규정 도입 등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 ②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우려되기 때문에
- ③ 점차 개인정보를 기관·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 ④ 개인정보유출은 기관·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 ⑤ 기타(직접기입 _____)

6. 귀 기관·회사의 고객 등 개인정보 제공자(정보주체)가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년 9월)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7번으로)
- ② 비교적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7번으로)
-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 (☞7번으로)
- ④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 ⑤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6-1. (6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 응답자) 귀 기관·회사의 고객 등 개인정보 제공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의 이력 및 사생활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 ③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 ④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 ⑤ 법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 ⑥ 기타(직접기입 : _____)

II.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7.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업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8번으로)

7-1. (7번 문항에서 ① 응답자) 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회사에서 개선보완한 사례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담조직 신설 또는 확대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전담인력(책임자 등) 지정	<input type="checkbox"/>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의 증액	<input type="checkbox"/>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폐기 등 처리(동의, 고지, 안내 등)절차의 개선 또는 강화	<input type="checkbox"/>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암호기술의 도입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의 강화	<input type="checkbox"/>
6) 개인정보영향평가, 수준진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외부 컨설팅의 실시	<input type="checkbox"/>
7) 직원 대상 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8) 그 외에 법 시행 이후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기입)	<input type="checkbox"/>

8. 타 법률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항목·이용기간·거부권리를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9. 타 법률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일반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수집·처리 안함

10. 타 법률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제공·이용 안함

11. 타 법률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동의받을 필요성을 못느껴서
 ② 동의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③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④ 법령에 처리 근거 없는 개인정보 처리 없음
 ⑤ 기타 ()

12. 상품 등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홍보·판매 등에 이용하지 않음
 ④ 해당없음

13. 귀 기관·회사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15번으로)

14. 귀 기관·회사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5. 귀하의 기관·회사에서는 고객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외에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제공하고 있다.(☞15-1번, 15-2번 응답)
 ② 제공하고 있지 않다.(☞15-3번 응답)
 ③ 적용대상이 아니다.(☞16번으로)
 ④ 고객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안함(☞16번으로)

부록 1.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15-1. (15번 문항 ① 응답자)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할 경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대체가입수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공인인증서 ② 휴대폰인증
③ 아이핀 또는 유저핀 ④ 신용카드
⑤ 기타(직접가입)
⑥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음

15-2. (15번 문항 ① 응답자)귀하의 기관·회사에서 이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과태료 또는 처벌에 대한 부담
② 조직·인력·예산 등 비용소요에 대한 부담
③ 고객관리에 어려움(대체수단의 실효성이 없어서)
④ 기타(직접가입)

15-3. (15번 문항 ② 응답자) 귀하의 기관·회사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② 조직·인력·예산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③ 고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대체수단의 실효성이 없어서)
④ 기타(직접가입)

16.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16-1번으로)
② 모른다. (☞17번으로)

16-1. (16번 문항 ① 응답자)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조치 의무 내용	이행중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input type="checkbox"/>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input type="checkbox"/>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input type="checkbox"/>

17.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파기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8.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9.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회사가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순서대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
②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의 어려움
③ 별도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
④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
⑤ 기타(직접가입)

21. 귀하께서는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21-1번으로) ② 없다(☞22번으로)

21-1. (21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셨다면) 당해 교육은 누가 실시한 것입니까?

- ① 정부/공공기관 ② 민간컨설팅 업체
③ 학회 ④ 기타(직접가입)

21-2. (21-1번 문항 ① 응답자) 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내용은 법률이행 등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 귀 기관·회사는 내부 직원(개인정보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정기적 실시
- ② 비정기적 실시
- ③ 실시 안함

2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절차(수집, 이용 등)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24번)
- ② 그렇지 않다(☞24번)
- ③ 보통이다(☞24번)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3-1. (23번 문항 ④또는 ⑤ 응답자)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절차가 까다로워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번거로움이 너무 크다
- ④ 번거로움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4.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비용이 기존보다 어느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 ① 증가하지 않음(☞25번)
- ② 약10% 미만 증가
- ③ 약10~30%
- ④ 약30~50%
- ⑤ 약50~70%
- ⑥ 약70~90%
- ⑦ 90% 이상
- ⑧ 예산 신설

24-1. (24번 문항 ⑤, ⑥, ⑦ 응답자)귀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 및 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 ② 비용증가가 부담은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 ④ 비용부담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III.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관련

25.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공포 후 6개월 동안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이행(기술적 보호조치 등 기타 물리적인 준비 등)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이 6개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26번으로)
- ② 그렇지 않다

25-1. (25번 문항 ② 응답자) 귀하께서는 얼마 동안의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개월 미만
- ② 6개월 미만
- ③ 1년 미만
- ④ 2년 미만
- ⑤ 2년 이상

26.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②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해서
- ③ 예산·인력·기술적용 등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의·어려움이 있을시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해서
- ⑤ 문의 후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여서
- ⑥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
- ⑦ 정부의 기술·인력·교육 등 지원이 부족해서
- ⑧ 기타(직접기입 :)

27.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정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 ②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완화
- ③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 ⑤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자율규제의 정착 및 지원
- ⑥ 관련부처의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및 질의 응답의 신속정확성 강화, 활성화
-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예산규모의 확대
- ⑧ 영세업체기관 대상 기술 및 예산 지원 확대
- ⑨ 모범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정책 활성화
- ⑩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활성화
- ⑪ 기타(직접기입 : _____)

28.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최소화를 위해서 향후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규제, 처벌의 강화
- ②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③ 개인정보주체 및 처리자의 인식제고, 관련 교육의 활성화
- ④ 기술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 상시 상담 등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 ⑤ 기타(직접기입 : _____)

IV. 응답자 통계

회사(기관)명	
---------	--

1. 기관 형태

- ① 개인사업체
- ② 회사 등 법인
-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④ 기타

2. 기관 분류(업종) :

- 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기타 공공기관)
- ②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 분야
- ③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 ④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 ⑤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분야
- ⑥ 학원 등 사교육 분야
- ⑦ 요식업, 부동산 등 자영업 분야
- ⑧ 호텔 등 숙박업 분야
- ⑨ 여행 등 관광업 분야
- ⑩ 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

3. 기관 규모(인원)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 ① 5명 미만
- ② 5명-9명
- ③ 10명-49명
- ④ 50명-99명
- ⑤ 100명-299명
- ⑥ 300명-499명
- ⑦ 500명-999명
- ⑧ 1000명 이상

4. 기관·회사 규모

- 사기업(연매출액): (_____ 백만원)

5. 본사 소재지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아래 응답자 사항은 필요 시 통계처리 관련 문의 등 조사 결과 신뢰도 검증 등의 연락을 위한 것이며, 조사 완료 후 소각되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연락이 가능한 분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김과장' 식으로 써주셔도 되며, 전화번호나 이메일 중 연락이 편한 것으로 기재해주시어도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부록 2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개선(안)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개인정보 제공자용
- 개인정보 처리자용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인정보 제공자용〉

I.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1.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귀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3.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1. (3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하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력 및 사생활 등 나의 명예나 인격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②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③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④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⑤ 기타(직접기입 : _____)

4.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몇 회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⑤ 모르겠다.

4-1. (4번 문항에서 ②,③,④로 응답하셨다면 -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있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① 유출 항목, 유출시점과 경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하여 통지 받았다.
- ② ①항의 내용과 함께 재발방지 등 사과문을 받았다.
- ③ ①항의 내용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 ④ ①항의 내용과 함께 금전 이외에 대체적 보상을 받았다.
- ⑤ ①항의 내용은 물론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 ⑥ 기타(직접기입 : _____)

4-2. (4번 문항에서 ②,③,④로 응답하셨다면 -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2회 이상 유출 경험이 있으신 경우 중복 응답해주시시오.)

-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
- ② 정부기관에 신고·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③ 소송을 제기하였다.(피해자모임 등을 구성, 공동소송위임도 포함)
- ④ 유출기업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항의를 하였다.
- 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 ⑥ 기타(직접기입 : _____)

4-2-1. (4-2번 문항에서 ⑤를 선택한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지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
- ②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
- ③ 구제를 받더라도 보상으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 ④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 ⑤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 ⑥ 번거롭고 귀찮았기 때문에
- ⑦ 기타(직접기입 : _____)

5.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알고 계신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118 콜센터
- ③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④ 기타(직접기입 _____)

6. 귀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회사 등)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게 인식한다.
 - ② 중요하지 않게 인식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게 인식한다.
 - ⑤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
7. 귀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회사 등)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제한 이나 파기요청 등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정확히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지 않다.
- 7-1. (7번 문항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7번 문항의 권리행사를 대행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II.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8.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절차가 작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까다로워진 것 같다.
 - ② 약간 까다로워진 것 같다.
 - ③ 변화가 없는 것 같다.
 - ④ 약간 완화된 것 같다.
 - ⑤ 매우 완화된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8-1. (8번 문항에서 ①또는 ②로 응답하셨다면) 귀하는 작년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도 불편하지 않다.
- ②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다
- ④ 불편함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 ⑤ 기타(직접기입 : _____)

9.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아래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회사 등)가 해당 처리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인지여부		준수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잘 지키지 않는다	보통이다	잘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의 민감정보(사상, 신념, 건강 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등)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처리자가 상품 등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항목, 경위, 구제절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아래의 대체가입수단 중 어떤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공인인증서
- ② 휴대폰인증
- ③ 아이핀 또는 유저핀
- ④ 신용카드
- ⑤ 기타(직접기입 _____)

11. 귀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아래 업종 분류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12번, 13번).

- 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②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 분야
- ③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 ④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 ⑤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 ⑥ 학원 등 사교육 분야
-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예술, 스포츠, 여가
- ⑩ 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
- ⑪ 전기, 가스, 수도업

12. 귀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3. 귀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세요)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4.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Ⅲ.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관련

15. 귀하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현재 우리사회 전반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15-1. (15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 ②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③ 개인정보 침해기술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기술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 ⑤ 기타(직접기입 : _____)

16.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만 골라주세요)

- ①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 ②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완화
- ③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 ⑤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자율규제의 정착 및 지원
- ⑥ 관련부처의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의 신속정확성 강화, 활성화
-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예산규모의 확대
- ⑧ 영세업체기관 대상 기술 및 예산 지원 확대
- ⑨ 모범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정책 활성화
- ⑩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활성화
- ⑪ 기타(직접기입 : _____)

17.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로 인하여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1. (17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어떤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할 시 불편을 느끼셨는지 답해주십시오.

- 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 ②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 분야
- ③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 ④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 ⑤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 ⑥ 학원 등 사교육 분야
-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예술, 스포츠, 여가
- ⑩ 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
- ⑪ 전기, 가스, 수도업

18.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의 이용 현황(서비스 종류 및 개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 ① 정확히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지 않다.

18-1. (17번 문항에서 ②로 응답하셨다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명이나 본인 확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빈번하기 때문에
-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 ③ 기타(직접기입 : _____)

19.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1. (16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작성해 주십시오.

주관식 답변 : (_____)

개인정보보호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인정보 처리자용〉

I.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정책에 대한 일반인식

1.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2.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양적 수준)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보유·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취급항목 규모
① 100명 미만	① 3개 미만
②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② 3개 이상 6개 미만
③ 1,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③ 6개 이상 10개 미만
④ 10,000명 이상 50,000명 미만	④ 10개 이상 20개 미만
⑤ 50,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	⑤ 20개 이상
⑥ 100,000명 이상 500,000명 미만	
⑦ 500,000명 이상	

※ 개인정보 취급항목에 대한 설명(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계좌, 전화번호, 직장, 소득, 학력, 경력 등

3. 귀 기관·회사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중에는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4.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대해서 귀 기관·회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처리 규모(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대한 향후 정책
① 매우 적은 수준이다.	①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②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② 다소 늘려나갈 계획이다.
③ 적당한 수준이다.	③ 향후 정책의 변동이 없다.
④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④ 다소 줄여나갈 계획이다.
⑤ 매우 많은 수준이다.	⑤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5. 귀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6.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 6-1. (6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태료·처벌규정 도입 등 법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②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우려되기 때문에
 ③ 점차 개인정보를 기관·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④ 개인정보유출은 기관·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⑤ 기타(직접기입 _____)

7. 귀 기관·회사의 고객 등 개인정보 제공자(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7-1. (7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 기관·회사의 고객 등 개인정보 제공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의 이력 및 사생활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 ③ 피싱, 사기,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 ④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 ⑤ 법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 ⑥ 기타(직접기입 : _____)

8. 귀하는 작년에 비하여 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아졌다 ② 다소 낮아졌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높아졌다 ⑤ 매우 높아졌다

8-1. (8번 문항에서 ④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 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진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태료, 행정처분, 처벌 등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 ②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 ③ 개인정보보호 침해 구제체계 및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 ④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 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 ⑥ 기타(직접기입 : _____)

II.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관련

9. 법령에 처리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항목·이용기간·거부권리를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법령에 처리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일반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수집·처리하지 않음

11. 법령에 처리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제3자에게 제공·이용하지 않음
12. 상품 등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홍보·판매 등에 이용하지 않음
13. 귀 기관·회사에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1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회원가입 수단(‘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귀하의 기관·회사에서는 어떤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적용대상이 아님
 - ② 공인인증서
 - ③ 휴대폰인증
 - ④ 아이핀 또는 유저핀
 - ⑤ 신용카드
 - ⑥ 기타(직접기입)
15. 귀하의 기관·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16.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는 어떠한 조치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조치의무 내용	이행하고 있다.	이행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①	②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①	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②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①	②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①	②

17.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18. 처리중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없다.
- ②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마련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 ③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다.

18.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항목, 경위, 구체절차 등)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9.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또는 문의 기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국가정보원 ② 검찰
- ③ 경찰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⑦ 행정안전부 ⑧ 방송통신위원회
- ⑨ 기타 (직접입력 : _____)

2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회사가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조직·인력 배치 등 관리적 어려움
- ②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의 어려움
- ③ 별도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
- ④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
- ⑤ 과태료 또는 처벌에 대한 부담
- ⑥ 비용소요에 대한 부담
- ⑦ 고객관리에 어려움(대체수단의 실효성이 없어서)
- ⑧ 기타(직접기입 _____)

21. 귀하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해 교육은 누가 실시한 것입니까?

- ①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②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③ 민간컨설팅 업체
- ④ 학회
- ⑤ 기타(직접기입 _____)

21-1. (20번 문항에서 ①로 응답하셨다면) 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내용은 법률이행 등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 귀 기관·회사는 내부 직원(개인정보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을 지난 1년간 몇 회 실시했습니까?(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세요) 회

2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절차(수집, 이용 등)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1. (22번 문항에서 ④ 또는 ⑤로 응답하셨다면)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절차가 까다로워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번거로움이 너무 크다
- ④ 번거로움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 ② 비용증가가 부담은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
-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 ④ 비용부담만 커지고 개인정보보호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 ⑤ 우리 기관·회사는 비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5. 현재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에서 수행중인 개인정보보호 평가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내부 직원에 의한 보안 검사
- ②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보안 평가
- ③ 자동화(온라인 등) 진단 기구
- ④ 평가수단 없음
- ⑤ 기타 (직접기입 _____)

26. 귀하는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개인정보영향평가),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가 및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 ② 인증취득 및 영향평가 결과 일정 수준의 점수 취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③ 인증취득 및 영향평가 결과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임을 홍보
- ④ 기타 (직접기입 _____)

27.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III.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관련

28.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② 개인정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해서
- ③ 예산·인력·기술적용 등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의·어려움이 있을시 마땅한 문의처를 찾지 못해서
- ⑤ 문의 후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여서
- ⑥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
- ⑦ 정부의 기술·인력·교육 등 지원이 부족해서
- ⑧ 기타(직접기입 : _____)

29. 귀하가 소속된 기관·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강화
- ② 과태료·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완화
- ③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강화
- ④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
- ⑤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자율규제의 정착 및 지원
- ⑥ 관련부처의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의 신속정확성 강화, 활성화
-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예산규모의 확대
- ⑧ 영세업체기관 대상 기술 및 예산 지원 확대
- ⑨ 모범사업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정책 활성화
- ⑩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 활성화
- ⑪ 기타(직접기입 : _____)

IV. 응답자 통계

1. 기관 형태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 등 법인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④ 기타

2. 기관 분류(업종) :

- 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②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 분야
 ③ 은행 등 금융·보험 분야
 ④ 병원 등 의료·보건 분야
 ⑤ 택배·대형마트 등 유통·물류·도소매
 ⑥ 학원 등 사교육 분야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⑨ 예술, 스포츠, 여가
 ⑩ 제조업, 폐기물, 환경복원
 ⑪ 전기, 가스, 수도업

3. 기관 규모(인원)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 ① 5명 미만 ② 5명 - 9명 ③ 10명 - 49명 ④ 50명 - 99명 ⑤ 100명 - 249명
 ⑥ 250명 - 499명 ⑦ 500명 - 999명 ⑧ 1000명 이상

4. 기관·회사 규모

- 사기업(연매출액):

5. 본사 소재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